



2022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Examination Progress and Highlights of the 2022 Tax Act Revision



2022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2022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총 괄 | 이 정 은 추계세제분석실장

기획·조정 | 심 혜 정 조세분석심의관
백 경 엽 세제분석2과장
박 연 서 세제분석1과장

작 성 | 최 천 규, 박 정 환, 이 정 훈, 고 은 비, 어 수 진,
강 민 지, 김 효 경, 박 지 원, 문 석 휘, 박 성 은,
태 정 립

지원·편집 | 강 속 자

「2022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간되었습니다.

문 의 :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2과 | 02) 6788-4834 | tpad@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2022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2023. 1.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3. 1. 5.)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2022년 세법개정안이 지난 연말에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특히 2022년 세법개정안 심의는 국회 본회의 처리까지 쉽지 않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안 등 쟁점 법안을 두고 국회의 정기회 심사기한이 경과할 때까지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다가 국회의장이 1차에 이은 2차 중재안까지 제안한 후에야 2022년 12월 22일 극적으로 여·야 합의안이 도출되는 진통을 겪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2022년 세법 개정안 심의 과정과 심의 결과를 정리하여 2023년부터 시행될 세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항목별로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중점 논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세법개정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우리나라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에서 가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23년 1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조 의 섭

일러두기

1. '소득세'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 분야 개정 항목임
 2. '법인세'는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분야 개정 항목임
 3. '자산세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자산세 분야 개정 항목임
 4. '소비세제'는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비세 분야 개정 항목임
 5. '기타'는 국제조세 분야 등 개정 항목임
 6.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은 '정부안', 의원이 발의한 세법개정안은 '의원안'으로, 개별 안건은 '대표발의자명+의원안'으로 표기
 7. 본 보고서의 세수효과는 기준연도(2022년도) 대비 증감한 누적세수를 합산한 방식인 누적법을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금액임
 8. 본 보고서의 '현행'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세법을 의미하며, '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세법을 의미함
-

차 례

I. 개 관 / 1

II. 심의 경과 / 7

1. 심의대상 세법 개정안	9
2. 위원회 심사	12
가. 소관위원회 심사: 기획재정위원회	12
나. 체계자구심사: 법제사법위원회	14
3.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15
4. 본회의 심의·의결	17

III. 주요 심의 결과 / 21

1. 개정세법 주요 내용 및 쟁점	23
가. 개정세법 주요 내용	23
나. 주요 심의 쟁점	28
2. 의원발의 법률안 심의 결과	40
가. 「국세기본법」	40
나. 「국세징수법」	41
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41
라. 「관세법」	41
마. 「조세특례제한법」	41
바. 「농어촌특별세법」	43
3. 정부제출 법률안 심의 결과	46
가. 「국세기본법」	46
나. 「소득세법」	46
다. 「법인세법」	47

차 례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48
마. 「종합부동산세법」	48
바. 「주세법」	49
사. 「교육세법」	49
아. 「조세특례제한법」	49
4.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	55
5. 부대의견	58
가. 「소득세법」 부대의견: 1건	58
나. 「부가가치세법」 부대의견: 2건	58
다. 「종합부동산세법」 부대의견: 1건	59
라. 「관세법」 부대의견: 1건	59
마. 「국세징수법」 부대의견: 1건	59
바. 「조세특례제한법」 부대의견: 소득세 분야 2건, 부가가치세 분야 3건	59

IV. 법률별 심의 경과 및 결과 / 63

1. 국세기본법	65
2. 소득세(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 분야)	72
3. 법인세(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분야)	98
4. 자산세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자산세 분야)	123
5. 소비세제(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비세 분야 등)	134
6. 기타 세제(국제조세, 국세징수법 등)	149

부 록 - 확정된 2023년 총수입 예산 및 변동 내용 / 155

표·그림 차례

〈표 차례〉

[표 1] 2022년 정기회 심의대상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9
[표 2] 기획재정위원회 국세법안 심사 결과	13
[표 3] 법제사법위원회 국세법안 심사 결과	14
[표 4]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신청 법률안 및 지정결과	16
[표 5] 2022년 세법개정안 본회의 심의 결과	18
[표 6]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정 내용	23
[표 7] 법인세율 개정 내용	24
[표 8]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개정 내용	24
[표 9] 통합투자세액공제 개정 내용	25
[표 10] 통합고용세액공제 개정 내용	25
[표 1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과세표준·세율 개정 내용	26
[표 12] 주요 심사 쟁점 법안 합의 결과	28
[표 13]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안	29
[표 14] 법인세율 인하 주요 심사 의견	30
[표 15]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안	31
[표 16]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관련 주요 심사 의견	32
[표 17]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안	33
[표 18]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 관련 주요 심사 의견	33
[표 19] 월세세액공제 확대 조정안	34
[표 20] 월세 세액공제 확대 관련 주요 심사 의견	35
[표 21] 가업승계세제 확대안	35
[표 22] 가업승계세제 확대 관련 주요 심사 의견	37

표·그림 차례

[표 2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과세표준·세율 개정안	37
[표 24]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세율 조정 관련 주요 심사 의견	39
[표 25] 의원발의 세법개정안 중 개정세법에 반영된 안건의 심의 결과	43
[표 26] 2022년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 중 국회 수정 결과	51
[표 27]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계): 2023~2027년	55
[표 28] 주요 항목별 세수효과	56
[표 29] 2022년 세법개정안 대비 국회수정사항의 세수효과 변동내역	57
[표 30] 부대의견 채택안건	61
[표 31] 가상자산의 상속·증여 부과제척기간 특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	66
[표 32] 부과제척기간 특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67
[표 33]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68
[표 34]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68
[표 35]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상향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	69
[표 36] 국세기본법 개정 내용	70
[표 37]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74
[표 38]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변화추이: 2008~2022년	75
[표 39]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76
[표 40]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78
[표 41]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체계	79
[표 42]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지급액 인상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	81
[표 43] 연금계좌세액공제 확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83
[표 44] 연금계좌세액공제 개정현황	84

표·그림 차례

[표 45] 내국인 및 외국인 우수인력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	85
[표 46] 소득세 개정 내용	87
[표 47]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99
[표 48] 법인세율 개정 연혁	101
[표 49]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102
[표 50]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104
[표 51]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105
[표 52]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108
[표 53] 수도권 밖 공장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	110
[표 54] 수도권 밖 본사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	111
[표 55] 일반법인 등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	112
[표 56] 법인세 개정 내용	114
[표 57] 가업승계세제 확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124
[표 58] 가업승계세제 개정 연혁	125
[표 59] 일감몰아주기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126
[표 60]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127
[표 6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세율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	128
[표 62] 증권거래세율 인하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130
[표 63] 증권거래세율 변화 추이	130
[표 64] 자산세제 개정 내용	131
[표 65]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	135
[표 66] 간이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 세액공제 신설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136

표·그림 차례

[표 67] 다자녀가구 구입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137
[표 68] 맥주 등의 주세 세율 계산식에 대한 가격변동지수 반영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138
[표 69] 관세 부과 시 과세환율 변경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139
[표 70]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업자의 과세표준 정비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141
[표 71] 소비과세 분야 개정 내용	142
[표 72] 기타 국세 개정 내용	150
[표 73] 확정된 2023년 총수입 예산	157
[표 74] 2023년 총수입 변동 내용	158
[표 75] 2023년 국세수입 변동 내용	159
[표 76] 2023년 세외수입 변동 내용	160
[표 77] 2023년 기금수입 변동 내용	160

〈그림 차례〉

[그림 1] 2022년 세법개정안 심의 경과	4
--------------------------------	---

2022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개 관

1 개 관

- 「2022년 세법개정안」이 2022년 12월 국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과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은 12월 23일과 28일 2회에 걸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 12월 23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된 15개의 조세 법률안 중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2개 법률안은 수정 가결, 「개별소비세법」 등 3건은 원안 가결
 - 12월 28일: 「농어촌특별세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등 2건의 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 의결된 법률안은 2022년 12월 31일 공포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¹⁾

-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인 심의²⁾ 대상이 된 세법개정안은 17건³⁾
 - 본회의 심의 대상인 국세 관련 법률안은 정부안 15건(「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조세범 처벌절차법」) 1건, 의원안 1건(「농어촌특별세법」(류성걸 의원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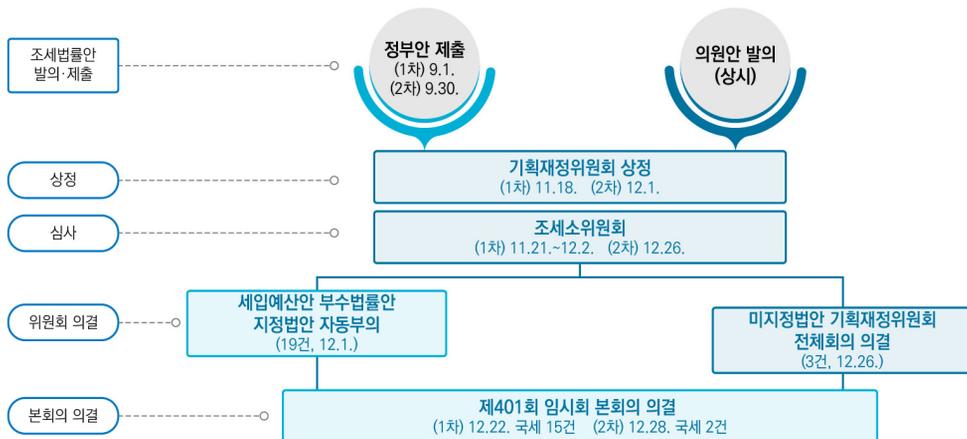
□ 심의 경과

- 심의대상 법률안은 9월 1일과 9월 30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과 제21대 국회(2020년 5월 30일 이후)에 발의된⁴⁾ 의원발의 세법개정안
- 제400회 정기회 및 제401회 임시회 기간 동안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세 관련 세법개정안 심사
 - 기획재정위원회는 2차례에 걸쳐(제7차 전체회의 11월 18일, 제9차 전체회의 12월 1일) 국세 관련 법률안 260건 상정하여 조세소위원회 회부
 - 조세소위원회는 회부된 260건과 계류 중이던 법률안 74건을 합한 334건의 안건을 심사(1차: 11월 21일 ~ 12월 2일, 2차: 12월 26일)

- 1) 다만, 「조세범 처벌절차법」은 1월 중 공포 및 시행 예정
- 2) 심의(審議)의 사전적 의미는 '심사(審査)하고 토의(討議)함'으로, 국회법은 본회의 안건과 관련하여서는 '심의'(제93조)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서는 '심사'(제58조)라는 용어를 사용함(임중훈·이정은, 『한국입법과정론』, 박영사, 2021.)
- 3)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대상 국세 관련 법률은 19개이나 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계류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심사 결과 계류)과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결과 계류)을 제외하고 본회의 심의 대상 국세 관련 법률은 17개임
- 4) 2020년 5월 30일 이후 발의되어 계류 중이던 법률안과 2022년 중 발의된 법률안으로 구성

- 정기회 심사기간 동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유예 등 주요 쟁점 안건에 대한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며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함
- 국회의장은 19건의 세법안을 포함하여 25건의 법률안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11월 30일) 및 자동 부의(12월 1일)
 - 11월 30일 국회의장은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 15건과 의원 발의 세법개정안 4건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5)
 - 심사기간 도과에 따라 12월 1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된 세법개정안 19건과 기타 법률 6건 본회의 자동 부의
- 12월 7일부터 22일까지 여·야는 예산안과 더불어 세법개정안 합의를 위해 협의
- 12월 8일과 15일 국회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안 도출을 위해 두 차례 중재안 제시
 - (1차: 12.8.)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 관련 정부안으로 의결하되 시행시기 2년 유예안 제안
 - (2차: 12.15.)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안 제안
- 12월 22일 국회의장 중재안을 바탕으로 차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한 여·야 일괄 합의안 도출
 -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1%p 세율 인하 등 주요 쟁점 법안 합의
- 12월 23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개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 12월 28일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세 관련 2개 법률안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그림 1] 2022년 세법개정안 심의 경과



5)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II. 심의경과 3.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지정'에서 자세히 기술함

□ 주요 심의쟁점 및 의결

- 법인세 세율 인하
 - 법인세 인하에 따른 투자 및 고용 증가의 효과성 유·무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 등과 관련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대립
 - 여·야 합의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현행 대비 1%p 인하
-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유예
 - 금융시장 불안 최소화를 위해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견해와 자본소득과세 합리화를 위해 과세할 필요성이 높다는 견해가 대립
 - 여·야 합의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
-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완화
 -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증가한 세부담 완화 필요성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증과세 유지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상충
 - 여·야 합의로 2주택 이하 기본 세율 적용,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3주택자 이상 보유자 증과세율 적용
- 기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
 - 기업승계세제 확대가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함으로써 투자·고용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견해와 부의 무상이전에 따른 조세회피에 악용 가능성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대립
 - 여·야 합의로 기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한도액을 최고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상향

□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

-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에 따라 2023~2027년 동안 64조 4,081억원(연평균 12조 8,816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주요 항목의 세수효과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으로 13.3조원 감소, 법인세 세율 인하로 15.7조원 감소, 증권거래세율 인하로 10.9조원 감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등으로 5.6조원 감소 추정

2022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

심의 경과

1 심의대상 세법 개정안⁶⁾

- 2022년 제400회 정기회 및 제401회 임시회에서 심의된 국세 관련 세법은 총 19개, 심의대상 법률안은 총 334건
 - 심의대상 세법(19개)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인지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징수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관세사법」
 - 심의대상 안건(334건)
 - 정부안 19건, 의원안 315건⁷⁾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6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48건,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6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1건 등

[표 1] 2022년 정기회 심의대상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법률명	주요 내용
「국세기본법」 (5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 등) 정부안 (조세심판관 제척·회피 기준 완화) 정부안 (역외거래 장부 보존기간 연장) 김주영 의원안, 정부안 (임대인 변경 후 공매·경매 시 국세징수 규정 신설 등) 박대출 의원안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관 확대) 홍성국 의원안
「소득세법」 (48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양경숙·태영호·서일준·강대식·고용진·노웅래·김두관·이인영 의원안, 정부안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인상) 태영호 의원안, 정부안 (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 확대 등) 김상훈·배준영 의원안, 정부안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추경호·김영진·조수진·류성걸 의원안, 정부안 (연금계좌세액공제 납입한도 확대) 고용진 의원안, 정부안 (기부금 특별세액공제율 상향) 송언석·정희용·김승수 의원안, 정부안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 관련) 김정호 의원안, 정부안

6) 세법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지방세 관련 4개의 세법은 현재 심사 중이며, 정기회 및 임시회 기간에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본 보고서에서 제외

7) 이하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은 “정부안”, 의원이 발의한 세법개정안 전체는 “의원안”, 개별 안건은 “대표발의자명+의원안”으로 표기

법률명	주요 내용
	(가상자산소득 과세시기 2년 유예) 유경준·정희용 의원안, 정부안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류성걸·추경호 의원안, 정부안 (출산·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 상향) 이수진·김승원·김희재·송언석·서영교 의원안 (자녀세액공제 공제액 확대) 강훈식·박광운·고용진·서영교 의원안
「법인세법」 (26건)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변경 및 최고세율 인하) 송언석·류성걸·구자근·추경호·윤영석·권명호·이종배·배준영·정우택 의원안, 정부안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조정) 박홍근 의원안, 정부안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익금불산입 범위 조정 등) 정부안 (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배준영 의원안, 정부안 (50% 한도 기부금 대상 추가) 김성주·김영배·이용우·정태호·도종환·구자근·양경숙·이광재 의원안, 정부안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확대) 김경만 의원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가상사업장에 대한 납세지 지정 권한 근거 신설) 유경준 의원안
「부가가치세법」 (9건)	(실내 도서열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정부안 (판매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제도개선) 홍성국 의원안 (여성용 월경 처리 위생용품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등) 장혜영 의원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8건)	(기업상속공제 대상 및 공제한도 확대 등) 홍석준 의원안, 정부안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 등) 김주영·김수흥·정운천 의원안, 정부안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의 과세방법 합리화 등) 정부안 (일감몰아주기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윤후덕·추경호 의원안, 정부안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적용대상 축소) 김용판 의원안, 정부안
「종합부동산세법」 (11건)	(기본공제금액 조정) 김영진·박성준·서영교·김성환 의원안, 정부안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김성환 의원안, 정부안 (세부담 상한 조정) 홍익표 의원안, 정부안 (대체취득·상속주택 등에 대한 비과세) 김미애·류성걸·서영교 의원안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신설) 류성걸 의원안 (납부유예제도 신설) 박성준·서영교 의원안
「개별소비세법」 (4건)	(다자녀가구 구입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 정부안 (아동·청소년 및 노인 등에 대한 골프장 입장 개별소비세 면제) 조해진 의원안 (승용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 윤영석·서병수 의원안
「증권거래세법」 (3건)	(증권거래세 폐지) 유동수·유경준·고용진 의원안
「관세법」(7건)	(공시송달 대상 및 방법 구체화 등) 정부안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 횟수 조정) 고용진 의원안, 정부안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명의대여 및 명의대여 알선 관련 처벌규정 신설) 김주영 의원안 (납세의무자 동의 기반 과세정보 제공범위 확대) 김상훈 의원안, 정부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건)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 등) 정부안 (국외투과단체 귀속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류성걸 의원안

법률명	주요 내용
<p>「조세특례제한법」 (196건)</p>	<p>- 소득세 분야 (벤처기업 등 직접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 등) 김경만·정태호 의원안, 정부안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간 확대 등) 양향자·배준영 의원안, 정부안 (내국인 복귀 우수인력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한 확대 등) 김용판 의원안, 정부안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등) 고용진·서일준·김영진·김태년·조수진·류성걸·전용기 의원안, 정부안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 완화 등) 정일영·배준영 의원안, 정부안 (대중교통 이용요금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류성걸·전용기 의원안, 정부안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한도 단순화 등) 배현진·류성걸 의원안, 정부안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김승남·윤재갑·주철현·이원택·윤재갑·김수흥·장동혁 의원안, 정부안</p> <p>- 법인세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요건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등) 김주영·김용판·배준영·정태호·전재수 의원안, 정부안 (중고자산 교육기관 기증 시 세액공제) 양향자 의원안, 정부안 (국가전략사업화시설 및 온실가스 감축시설 세액공제 신설) 한병도·추경호 의원안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범위 확대 및 공제율 상향 조정 등) 이상헌·배현진·추경호·김상훈·홍익표·이용호 의원안, 정부안 (재생에너지 관련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시설 세액공제액 대한 최저한세 적용 배제) 김진표 의원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정태호·배준영 의원안, 정부안 (지방이전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 축소 등) 김두관 의원안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기한 연장 등) 정태호·신동근·김주영 의원안</p> <p>- 소비세 분야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또는 폐지) 김상훈·고용진·윤영석·안호영 의원안, 정부안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또는 폐지) 김상훈·김기현·임오경·안규백·안호영 의원안, 정부안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정태호·조정식 의원안, 정부안</p> <p>- 자산세 분야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및 창업 인정 범위 확대 등) 정부안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등) 홍석준·권성동 의원안, 정부안</p>
<p>기타 세법 (15건)</p>	<p>「주세법」(1건), 「인자세법」(1건), 「교육세법」(2건), 「농어촌특별세법」(4건), 기타 절차법 등 7건(「국세징수법」(3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법률」(1건), 「관세사법」(1건), 「조세법 처벌절차법」(2건))</p>

2 위원회 심사

가. 소관위원회 심사: 기획재정위원회

- (법률안 상정) 국세 관련 법률안 총 260건 상정
 - 제400회 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2022.11.18.) 253건 상정
 - 제400회 정기회 제9차 기획재정위원회(2022.12.1.) 7건 상정
- (소위원회 심사) 계류 법률안 74건 및 신규 소위원회부 법률안 260건 등 총 334건을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사
 - 조세소위원회 총 7회 개최
 - 제400회 정기회: 11.21.(월), 11.22.(화), 11.23.(수), 11.24.(목), 12.1.(목), 12.2.(금)
 - 제401회 임시회: 12.26.(월)
- (본회의 자동 부의) 국회의장의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지정(11.30.) 이후 심사기간 도과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본회의 자동 부의⁸⁾
 - 법인세율 인하 등 주요 쟁점 안건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심사기간(11.30.) 도과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된 세법개정 법률안 19건 본회의 자동 부의(2022.12.1.)
 - 정부안 15건, 의원안 4건
- (법률안 의결) 제40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22.12.26.)에서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지 않은 국세 관련 법률안(3건) 의결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의결, 「조세법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의결,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의결

8)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부의 등)

[표 2] 기획재정위원회 국세법안 심사 결과

연번	법안명	심사대상 안건	본회의 상정 세입부수 법률안	처리 현황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	정부안	계류 (의원안 4건)
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45	정부안	계류 (의원안 44건)
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정부안	계류 (의원안 25건)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8	정부안	계류 (의원안 7건)
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정부안	계류 (의원안 10건)
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9	정부안	계류 (의원안 8건)
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4	정부안	계류 (의원안 3건)
8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	정부안	계류 (의원안 2건)
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7	정부안	계류 (의원안 5건+정부안)
10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	정부안	-
11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	정부안	계류 (의원안 1건)
1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3	정부안	계류 (의원안 2건)
1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정부안	-
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6	정부안	계류 (의원안 194건+정부안)
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정부안	계류 (의원안 1건)
16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4	-	원안가결(의원안) /계류(의원안 3건)
17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2	-	대안가결 (의원안 1+정부안)
18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	-	수정가결 (정부안)
19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	3	-	계류 (의원안 3건)

나. 체계자구심사: 법제사법위원회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된 세법개정 법률안 19건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음
-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타 국세 관련 법률안(3건)은 제 401회 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2022.12.27.)에서 심사(의결 2건, 계류 1건)
 - 심사대상: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안),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
 - 심사결과: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안) 과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원안가결되었으나,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은 계류

[표 3] 법제사법위원회 국세법안 심사 결과

연번	법안명	심사대상 안건	심사 결과
1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 (기재위: 의원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2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1 (기재위: 대안의결)	원안가결
3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 (기재위: 정부안 수정가결)	계류

3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경과
 -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신청 법률안은 총 26건으로 이 중 국세 관련 법률안은 20건
 - 국세 관련 법률안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 15건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의원발의 세법 개정안 5건
 - 그 외 유아교육특별회계의 적용기한 연장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의원발의 개정안도 6건 지정신청 됨
 - (2022.11.30.) 지정신청된 법률안 26건 중 25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 15건과 유아교육특별회계의 적용기한 연장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의원발의안 10건(세법안 4건)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됨
 - (2022.12.1.) 국회법에서 정한 심사기간을 도과함에 따라 본회의 자동부의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법개정안 및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5건(세법안 19건) 본회의 자동부의
 - (2022.12.23.~24.) 여·야 합의안을 반영한 수정안을 2022.12.23.(국세 관련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 및 12.24.(국세외수입 관련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본회의 의결
 - 자동부의 법률안 25건 중 20건(세법안 15건)에 대해 본회의 의결

[표 4]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신청 법률안 및 지정결과

연번	법안명	의안번호	발의자	소관위	지정 여부
1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6392	김병욱의원 등 10인	교육위	○
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6441	노웅래의원 등 10인	기재위	○
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143	오기형의원 등 10인	기재위	×
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7151	정 부	기재위	○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152	정 부	기재위	○
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153	정 부	기재위	○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157	정 부	기재위	○
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158	정 부	기재위	○
9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159	정 부	기재위	○
1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160	정 부	기재위	○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7161	정 부	기재위	○
1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17162	정 부	기재위	○
13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163	정 부	기재위	○
1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164	정 부	기재위	○
1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165	정 부	기재위	○
16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166	정 부	기재위	○
17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167	정 부	기재위	○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169	정 부	기재위	○
1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7191	이태규의원 등 14인	교육위	○
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7193	이태규의원 등 14인	기재위	○
21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17196	이태규의원 등 14인	교육위	○
22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370	유기홍의원 등 10인	교육위	○
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7375	김병욱의원 등 10인	기재위	○
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7807	한병도의원 등 10인	기재위	○
25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282	조해준의원 등 10인	기재위	○
2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283	조해준의원 등 10인	기재위	○

4 본회의 심의·의결

- 2022년 국세 관련 세법개정안은 여·야간 쟁점 법률안 합의 후(2022.12.22.) 2차례에 걸쳐 본회의 심의·의결
 - 주요 합의내용: 법인세율 인하(구간별 1%p),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상향 및 세율 조정, 기업상속공제 확대,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 제4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2.12.23.)에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5건 본회의 심의·의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은 본회의 수정안대로 가결
 -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된 법률안은 정부안을 바탕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심사결과 및 여·야 합의 내용 반영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은 원안가결
- 제40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22.12.28.)에서 그 밖에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 법률안 본회의 심의·의결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대로 가결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원안가결(2022.12.27.)

[표 5] 2022년 세법개정안 본회의 심의 결과

연번	법안명	본회의 의결일자	본회의 상정법안	심의 결과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2.23.	세입부수 법안 (정부안)	수정가결
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2.23.	세입부수 법안 (정부안)	수정가결
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2.23.	세입부수 법안 (정부안)	수정가결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2.23.	세입부수 법안 (정부안)	수정가결
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2.23.	세입부수 법안 (정부안)	수정가결
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2.23.	세입부수 법안 (정부안)	수정가결
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2.23.	세입부수 법안 (정부안)	원안가결
8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2.23.	세입부수 법안 (정부안)	수정가결
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2.23.	세입부수 법안 (정부안)	수정가결
10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2.23.	세입부수 법안 (정부안)	원안가결
11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2.23.	세입부수 법안 (정부안)	수정가결
1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12.23.	세입부수 법안 (정부안)	수정가결
1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23.	세입부수 법안 (정부안)	원안가결
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2.23.	세입부수 법안 (정부안)	수정가결
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23.	세입부수 법안 (정부안)	수정가결
16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2.28.	의원발의 원안	원안가결
17	「조세범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12.28.	기재위 대안	원안가결

BOX.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세법개정안 심의 경과 및 주요 내용

□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개요

- 목적: 당면한 민생경제위기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부분 비과세 확대, 안전운임제 지속, 대중교통비 환급 등 시급한 경제 현안 논의 및 관련 법률안 심사·처리
- 구성: 제398회(임시회) 국회, 2022.7.20. (활동기한: 2022.10.31.)
- 위원: 위원장(류성걸) 포함 13인(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

□ 심의대상 세법개정안

-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관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4건)
- 유류세 인하폭 확대 관련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3건)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5건)

□ 심의 경과

- (2022.7.29.) 제2차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률안 12건 상정·심사 및 위원회안(대안) 3건 의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상향하여 법률에 규정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한도를 2024.12.31.까지 30%에서 50%로 확대
- (2022.8.1.)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수정가결
- (2022.8.2.) 제8차 본회의 심의·의결

2022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III

주요 심의 결과

1 개정세법 주요 내용 및 쟁점

가.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등
 - 8,800만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 상향
 -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 상향: 1,200만원 → 1,400만원, 4,600만원 → 5,000만원
 -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에 따라 총급여 1.2억원 초과 구간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1인당 50 → 20만원)

[표 6]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과세표준	세율 (%)	과세표준	세율 (%)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1,400~5,0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5,000~8,800만원	24
8,800만원~1.5억원	35	8,800만원~1.5억원	35
1.5~3억원	38	1.5~3억원	38
3~5억원	40	3~5억원	40
5~10억원	42	5~10억원	42
10억원 초과	45	10억원 초과	45

-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
 -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⁹⁾
 -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과세 시행시기 또한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
- 법인세 세율 인하
 -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1%p 인하

9)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와 함께 논의되었던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요건 변경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종목당 10억원(또는 상장된 주식시장별로 지분 1~4% 보유) 기준을 유지하고, 증권거래세 탄력세율은 2023~2025년 기간 동안 매년 0.02~0.03%p 인하하여 2025년부터 코스피 0%, 코스닥 0.15%를 적용하도록 변경

[표 7] 법인세율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2%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5%	3,000억원 초과	24%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조정

- 기업형태 및 지분율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지분율 기준으로 단순화하고, 지분율 구간별 익금불산입률을 상향

[표 8]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일반법인)		(모든 법인)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상장법인</th> </tr> <tr> <th>지분율</th> <th>익금불산입률</th> </tr> </thead> <tbody> <tr> <td>100%</td> <td>100%</td> </tr> <tr> <td>30% 이상 100% 미만</td> <td>50%</td> </tr> <tr> <td>30% 미만</td> <td>30%</td> </tr> </tbody> </table>		상장법인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100%	100%	30% 이상 100% 미만	50%	30% 미만	30%	<table border="1"> <thead> <tr> <th>지분율</th> <th>익금불산입률</th> </tr> </thead> <tbody> <tr> <td>50% 이상</td> <td>100%</td> </tr> <tr> <td>20% 이상 50% 미만</td> <td>80%</td> </tr> <tr> <td>20% 미만</td> <td>30%</td> </tr> </tbody> </table>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50% 이상	100%	20% 이상 50% 미만	80%	20% 미만	30%
상장법인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100%	100%																				
30% 이상 100% 미만	50%																				
30% 미만	30%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50% 이상	100%																				
20% 이상 50% 미만	80%																				
20% 미만	30%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비상장법인</th> </tr> <tr> <th>지분율</th> <th>익금불산입률</th> </tr> </thead> <tbody> <tr> <td>100%</td> <td>100%</td> </tr> <tr> <td>50% 이상 100% 미만</td> <td>50%</td> </tr> <tr> <td>50% 미만</td> <td>30%</td> </tr> </tbody> </table>		비상장법인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100%	100%	50% 이상 100% 미만	50%	50% 미만	30%										
비상장법인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100%	100%																				
50% 이상 100% 미만	50%																				
50% 미만	30%																				
(지주회사)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상장법인</th> </tr> <tr> <th>지분율</th> <th>익금불산입률</th> </tr> </thead> <tbody> <tr> <td>40% 이상</td> <td>100%</td> </tr> <tr> <td>30% 이상 40% 미만</td> <td>90%</td> </tr> <tr> <td>30% 미만</td> <td>80%</td> </tr> </tbody> </table>		상장법인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40% 이상	100%	30% 이상 40% 미만	90%	30% 미만	80%										
상장법인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40% 이상	100%																				
30% 이상 40% 미만	90%																				
30% 미만	80%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비상장법인</th> </tr> <tr> <th>지분율</th> <th>익금불산입률</th> </tr> </thead> <tbody> <tr> <td>80% 이상</td> <td>100%</td> </tr> <tr> <td>50% 이상 80% 미만</td> <td>90%</td> </tr> <tr> <td>50% 미만</td> <td>80%</td> </tr> </tbody> </table>		비상장법인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80% 이상	100%	50% 이상 80% 미만	90%	50% 미만	80%										
비상장법인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80% 이상	100%																				
50% 이상 80% 미만	90%																				
50% 미만	80%																				

□ 통합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상향

-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1~2%p 상향

[표 9] 통합투자세액공제 개정 내용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 (조특법 제24조)	현행				개정				
	(통합투자세액공제율) (단위: %)				(통합투자세액공제율) (단위: %)				
	구분	당기분			증가분	구분	당기분		
	대	중견	중소			대	중견	중소	
일반	1	3	10	3	일반	1	5	10	3
신성장	3	5	12		신성장	3	6	12	
국가 전략기술	6	8	16	4	국가 전략기술	8	8	16	4

□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 고용관련 4개 세액공제 조항을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일원화
 - (기본) 고용증가 인원 × 1인당 공제액(근로자 유형·기업규모·지역별 차등)
 - (추가) 정규직 전환·육아휴직 복귀자 × 1인당 공제액(중소 1,300 / 중견 900만원)

[표 10] 통합고용세액공제 개정 내용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조특법 제29조의8 신설)	현행		개정																				
	(고용 관련 개별세액공제) - 고용증대 세액공제 - 경력단절여성·육아휴직복귀자 세액공제 - 정규직전환 세액공제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 기본: 고용증가인원×1인당공제액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4">공제액 (단위:만원)</th> </tr> <tr> <th>중소(3년) 수도권</th> <th>중견 지방</th> <th>대기업 (3년)</th> <th>대기업 (2년)</th> </tr> </thead> <tbody> <tr> <td>상시 근로자</td> <td>850</td> <td>950</td> <td>450</td> <td>-</td> </tr> <tr> <td>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여성 등</td> <td>1,450</td> <td>1,550</td> <td>800</td> <td>400</td> </tr> </tbody> </table>		구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3년) 수도권	중견 지방	대기업 (3년)	대기업 (2년)	상시 근로자	850	950	450	-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여성 등	1,450	1,550	800	400
	구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3년) 수도권		중견 지방	대기업 (3년)	대기업 (2년)																			
상시 근로자	850	950	450	-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여성 등	1,450	1,550	800	400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공제액 (단위:만원)</th> </tr> <tr> <th>중소</th> <th>중견</th> </tr> </thead> <tbody> <tr> <td>정규직 전환자(1년)</td> <td rowspan="2">1,300</td> <td rowspan="2">900</td> </tr> <tr> <td>육아휴직 복귀자(1년)</td> </tr> </tbody> </table>		구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자(1년)	1,300	900	육아휴직 복귀자(1년)											
구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자(1년)	1,300	900																					
육아휴직 복귀자(1년)																							

- 추가: 정규직전환·육아휴직 복귀자

(적용기한)
- 2025.12.31.
- 단, 정규직전환은 2023.12.31.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및 과세표준, 세율 조정
 -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개인) 일반 6억원 → 9억원,
 - 1세대 1주택자 11억원 → 12억원
 - (세율) 개인: 2주택 이하¹⁾ 0.6~3.0 → 0.5~2.7%, 3주택 이상 1.2~6.0 → 0.5~5.0%,
 - 법인: 2주택 이하 3.0 → 2.7%, 3주택 이상 6.0 → 5.0%

[표 1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과세표준·세율 개정 내용

	현행	개정																																																												
기본공제금액	(일반) 6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원 (법인) 미적용	(일반)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 (법인) 미적용																																																												
과세표준 및 세율	(개인, 2주택 이하 ¹⁾)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과세표준</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td>3억원 이하</td><td>0.6%</td></tr> <tr><td>6억원 이하</td><td>0.8%</td></tr> <tr><td>12억원 이하</td><td>1.2%</td></tr> <tr><td>50억원 이하</td><td>1.6%</td></tr> <tr><td>94억원 이하</td><td>2.2%</td></tr> <tr><td>94억원 초과</td><td>3.0%</td></tr> </tbody> </table> (개인, 3주택 이상 ¹⁾)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과세표준</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td>3억원 이하</td><td>1.2%</td></tr> <tr><td>6억원 이하</td><td>1.6%</td></tr> <tr><td>12억원 이하</td><td>2.2%</td></tr> <tr><td>50억원 이하</td><td>3.6%</td></tr> <tr><td>94억원 이하</td><td>5.0%</td></tr> <tr><td>94억원 초과</td><td>6.0%</td></tr> </tbody> </table> (법인, 2주택 이하 ¹⁾) 3.0% (법인, 3주택 이상 ¹⁾) 6.0%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0.6%	6억원 이하	0.8%	12억원 이하	1.2%	50억원 이하	1.6%	94억원 이하	2.2%	94억원 초과	3.0%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2%	6억원 이하	1.6%	12억원 이하	2.2%	50억원 이하	3.6%	94억원 이하	5.0%	94억원 초과	6.0%	(개인, 2주택 이하 ²⁾)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과세표준</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td>3억원 이하</td><td>0.5%</td></tr> <tr><td>6억원 이하</td><td>0.7%</td></tr> <tr><td>12억원 이하</td><td>1.0%</td></tr> <tr><td>25억원 이하</td><td>1.3%</td></tr> <tr><td>50억원 이하</td><td>1.5%</td></tr> <tr><td>94억원 이하</td><td>2.0%</td></tr> <tr><td>94억원 초과</td><td>2.7%</td></tr> </tbody> </table> (개인, 3주택 이상 ²⁾)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과세표준</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td>3억원 이하</td><td>0.5%</td></tr> <tr><td>6억원 이하</td><td>0.7%</td></tr> <tr><td>12억원 이하</td><td>1.0%</td></tr> <tr><td>25억원 이하</td><td>2.0%</td></tr> <tr><td>50억원 이하</td><td>3.0%</td></tr> <tr><td>94억원 이하</td><td>4.0%</td></tr> <tr><td>94억원 초과</td><td>5.0%</td></tr> </tbody> </table> (법인, 2주택 이하 ²⁾) 2.7% (법인, 3주택 이상 ²⁾) 5.0%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0.5%	6억원 이하	0.7%	12억원 이하	1.0%	25억원 이하	1.3%	50억원 이하	1.5%	94억원 이하	2.0%	94억원 초과	2.7%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0.5%	6억원 이하	0.7%	12억원 이하	1.0%	25억원 이하	2.0%	50억원 이하	3.0%	94억원 이하	4.0%	94억원 초과	5.0%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0.6%																																																													
6억원 이하	0.8%																																																													
12억원 이하	1.2%																																																													
50억원 이하	1.6%																																																													
94억원 이하	2.2%																																																													
94억원 초과	3.0%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2%																																																													
6억원 이하	1.6%																																																													
12억원 이하	2.2%																																																													
50억원 이하	3.6%																																																													
94억원 이하	5.0%																																																													
94억원 초과	6.0%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0.5%																																																													
6억원 이하	0.7%																																																													
12억원 이하	1.0%																																																													
25억원 이하	1.3%																																																													
50억원 이하	1.5%																																																													
94억원 이하	2.0%																																																													
94억원 초과	2.7%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0.5%																																																													
6억원 이하	0.7%																																																													
12억원 이하	1.0%																																																													
25억원 이하	2.0%																																																													
50억원 이하	3.0%																																																													
94억원 이하	4.0%																																																													
94억원 초과	5.0%																																																													

주: 1) 현행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는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
 2) 개정세법에서 보유주택수의 산정은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여부와 무관하게 변경

10) 현행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동일한 세율(1.2~6.0%)을 적용받으나, 개정세법의 보유주택수 산정이 조정대상지역 소재 여부와 무관하게 변경됨에 따라, 2023년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주택 이하 보유자(0.5~5.0%)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됨

□ 가업상속공제 확대

-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을 중견기업 매출액 4천억원 미만에서 5천억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공제액을 가업영위 기간별로 200~500억원에서 300~600억원으로 상향
- 사후관리 기간은 7년에서 5년, 가업자산유지 요건은 80%에서 60%로 완화

□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 매출액이 7.5억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그룹에 소속된 구성기업의 국가별 실효세율을 산출하여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금액을 모기업 등이 추가세액으로 납부

나. 주요 심의 쟁점

(1) 개요

-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2022년 정기회 심사대상 안건에는 금융투자 소득세 과세 2년 유예,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세율 인하, 기업승계 세제 확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액 및 공제금액 조정 등 정부와 여·야 간 견해차가 있는 쟁점 안건 포함
 - 법인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 등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으로 정기회 심사기간 동안 기획재정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채 정기회 심사기간이 도과되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된 세법개정안 19건 본회의 자동부의
 - 이후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원내대표간의 협의 절차가 진행(12.7.~12.22.)되는 과정에서 여·야간 접점을 찾지 못하였으나, 국회의장의 두 차례 중재안까지 나오면서 12월 22일 최종 합의안 마련

[표 12] 주요 심사 쟁점 법안 합의 결과

구분	정부·여당안	야당 입장	합의 결과(의결)
법인세	- 최고세율 3%p 인하	- 수용 불가	-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1%p 인하
금융투자 소득세 등	- 금투세 과세 2년 유예 -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100억원	- 정부안 수용 - 수용 불가	- 금투세 과세 2년 유예 -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10억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 일반 9억원 - 1주택자 12억원 (세율) 0.5~2.7% - 다주택자 종과 폐지	(기본공제금액) - 기본공제 인상 일부 수용 - 1주택자 11억원 (세율) - 다주택자 종과 폐지 이견	(기본공제금액) - 일반 9억원 - 1주택자 12억원 (세율) - 2주택 이하 0.5~2.7% - 3주택 이상 0.5~5.0%
기업상속공제	(중견기업 적용대상) - 매출 1조원 미만 중견 기업 (공제한도액) - 400~1,000억원	- 수용 불가	(중견기업 적용대상) - 매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 (공제한도액) - 300~600억원

(2) 주요 안건별 심사 쟁점

□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변경

○ 관련 안건

- 과세표준 구간 축소 및 세율 인하(류성걸·송언석·추경호·구자근·배준영·정우택 의원안, 정부안)
- 법인지방소득세 인상과 연계한 세율 인하(권명호·이종배 의원안)
- 비수도권에 본점이 소재한 법인의 세율 인하(윤영석 의원안)

[표 13]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안

현행		류성걸 의원안		송언석 의원안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9%	10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8%	10억원 초과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추경호 의원안		구자근 의원안		배준영 의원안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8%	2억원 이하	10%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8%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0%	200억원 초과	22%
정우택 의원안		권명호 의원안		이종배 의원안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5억원 이하	10%	2억원 이하	8%	2억원 이하	9%
5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6%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8%
3,000억원 초과	22%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17.6%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19.8%
		3,000억원 초과	20%	3,000억원 초과	22.5%

윤영석 의원안		정부안		심의 결과	
(수도권)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10% (중소·중견)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2%	200억원 초과	22%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5%			3,000억원 초과	24%
(수도권 외)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5%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12%				
3,000억원 초과	15%				

○ 주요 심사 의견

- 법인세 인하기로 인한 투자 및 고용 증가의 효과성 유·무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에 대한 찬·반 의견이 대립

[표 14] 법인세율 인하 주요 심사 의견

구 분	심사 의견
찬성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법인세 명목세율은 OECD 회원국 평균 대비 높은 수준으로 국제경쟁력 측면에서 세율 인하가 필요 - 법인세율 인하는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줌
반대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지출 등을 감안할 경우 우리나라 기업의 실질적 세부담이 주요국에 비해 높지 않으며, 세율인하가 투자 및 고용으로 연계된다는 실증분석 결과도 유의하지 않음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기로 인한 세수 감소는 재정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

○ 결론

-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4단계로 유지하고, 각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1%p씩 인하하는 여·야 합의에 따라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관련 안건

- 하위 과세표준 구간의 기준금액 상향 조정(강대식·고용진·김두관·이인영·노웅래 의원안, 정부안)
- 과세표준 구간의 물가연동제 적용(노웅래 의원안)
- 세율 조정(고용진·김두관 의원안)

[표 15]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안

구분	현행		강대식 의원안		고용진 의원안	
	과세표준	세율 (%)	과세표준	세율 (%)	과세표준	세율 (%)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6	1,500만원 이하	5
	1,200~4,600만원	15	1,400~5,400만원	15	1,500~5,000만원	13
	4,600~8,800만원	24	5,400만원~1억원	24	5,000~9,500만원	23
	8,800만원~1.5억원	35	1억원~1.5억원	35	9,500만원~1.5억원	35
	1.5~3억원	38	1.5~3억원	38	1.5~3억원	38
	3~5억원	40	3~5억원	40	3~5억원	40
	5~10억원	42	5~10억원	42	5~10억원	42
	10억원 초과	45	10억원 초과	45	10억원 초과	45
구분	김두관 의원안		이인영 의원안		노웅래 의원안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	과세표준	세율 (%)	과세표준	세율 (%)	과세표준	세율 (%)
	2,500만원 이하	6	2,400만원 이하	6	1,500만원 이하	6
	2,500~6,000만원	15	2,400~6,000만원	15	1,500~6,000만원	15
	6,000만원~1억원	24	6,000~8,800만원	24	6,000만원~1억원	24
	1억원~1.5억원	35	8,800만원~1.5억원	35	1억원~1.5억원	35
	1.5~3억원	38	1.5~3억원	38	1.5~3억원	38
	3~5억원	40	3~5억원	40	3~5억원	40
	5~10억원	42	5~10억원	42	5~10억원	42
	10~30억원	45	10억원 초과	45	10억원 초과	45
	30억원 초과	50				

* 물가연동제 도입

구분	정부안		심의 결과	
	과세표준	세율 (%)	과세표준	세율 (%)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6
	1,400~5,000만원	15	1,400~5,000만원	15
	5,000~8,800만원	24	5,000~8,800만원	24
	8,800만원~1.5억원	35	8,800만원~1.5억원	35
	1.5~3억원	38	1.5~3억원	38
	3~5억원	40	3~5억원	40
	5~10억원	42	5~10억원	42
	10억원 초과	45	10억원 초과	45

○ 주요 심사 의견

-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개인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세표준 구간 상향의 필요성은 인정, 다만, 향후 재정소요 등을 감안할 때 감세에 대한 대안이 부재한 것에 대한 우려 제기

[표 16]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관련 주요 심사 의견

구분	심사 의견
찬성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은 2008년 이후 15년 동안 고정됨에 따라, 최근의 물가상승 등을 감안할 때 개편 필요 - 물가상승에 따라 증가하는 개인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세표준 구간의 상향 필요
반대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재정소요 등을 감안할 때 감세에 대한 대안이 부재한 것에 대한 우려 제기 - 선진국 대비 낮은 소득세 부담, 높은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등을 감안할 경우 과표구간 상향으로 인한 소득세 감세는 신중할 필요

○ 결론

-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소득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과세표준 구간 상승의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동의함에 따라, 정부안으로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

- 관련 안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일을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유예(정부안)

[표 17]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안

현행	정부안	심의 결과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 주요 심사 의견

-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최소화를 위한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견해와 금융투자소득세는 자본소득 과세 합리화를 위한 조치로서 예정대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

[표 18]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 관련 주요 심사 의견

구분	심사 의견
찬성 의견	- 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최근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투자심리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 2023년 예정된 과세를 유예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할 필요
반대 의견	- 금융과세 합리화를 목적으로 제도의 도입을 결정하였던 과거 정책과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

○ 결론

- 최근의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정부안으로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 월세 세액공제 확대

○ 관련 안건

-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고용진·김영진·서일준·김태년·류성걸·전용기·조수진 의원안, 정부안)
- 월세 세액공제 한도 상향(고용진·김영진·서일준·김태년·류성걸 의원안)
-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상향(고용진·김영진·김태년 의원안)
- 공제대상의 소득요건 변경(김태년·류성걸 의원안)

[표 19] 월세세액공제 확대 조정안

구분	현행	고용진 의원안	김영진 의원안	서일준 의원안
대상	-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 금액 6천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 금액 6천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 금액 6천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 금액 6천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주택가격 ¹⁾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공제율 ²⁾	- 월세액의 10%(12%)	- 월세액의 15%(17%)	- 월세액의 15%(17%)	- 월세액의 12%(15%)
공제한도	- 연 750만원	- 연 850만원	- 연 850만원	- 연 850만원
구분	김태년 의원안	류성걸 의원안	전용기 의원안	
대상	-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미성년자녀 1인당 1천만원 추가)이하 무주택자	- 총급여 8,300만원(종합소득금액 7,300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주택가격 ¹⁾	- 기준시가 5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공제율 ²⁾	- 월세액의 15%(17%)	- 월세액의 12%(15%)	- 월세액의 12%(20%)	
공제한도	- 연 850만원	- 연 840만원	- 연 750만원	
구분	조수진 의원안	정부안	심의 결과	
대상	-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주택가격 ¹⁾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공제율 ²⁾	- 월세액의 12%(15%)	- 월세액의 12%(15%) * 2022년부터 적용	- 월세액의 15%(17%)	
공제한도	- 연 750만원	- 연 750만원	- 연 750만원	

주: 1) 시행령 규정 사항

2) ()안은 총급여액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의 경우에 적용
단, 류성걸 의원안은 총급여액 6,1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5,100만원 이하의 경우에 적용

○ 주요 심사 의견

-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 등을 감안할 때,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월세 세액공제 확대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이루어졌으나, 확대 방식에 대해서는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범위 확대,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가격의 인상, 공제율 상향, 공제한도 상향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

[표 20] 월세 세액공제 확대 관련 주요 심사 의견

구분	심사 의견
찬성 의견	- 최근 주택가격 상승 등을 감안할 때,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월세 세액공제 확대 필요
반대 의견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대해 현재 기준은 대부분 지역의 중위가격을 포괄하는 수준이므로 상향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 제기

○ 결론

-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월세 세액공제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12/15*(현행 10/12*)로 확대하려는 정부안보다 공제율을 상향한(15/17*)한 합의에 따라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 총급여액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가업승계세제 확대

○ 관련 안건

-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요건 완화, 공제액의 가업영위기간 축소 및 사후관리 기간 등 완화(홍석준 의원안)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 및 증여세 과세가액 인상 등(권성동 의원안)
-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등의 적용대상·공제한도 확대 및 사후관리 요건 완화, 가업승계시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유예(정부안)

[표 21] 가업승계세제 확대안

가업상속공제				
구분	현행	홍석준 의원안	정부안	심의 결과
적용 대상	- 피상속인: · 10년 이상 계속경영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매출액 4천억원 미만	- 피상속인: · 5년 이상 계속경영	- 피상속인: · 10년 이상 계속경영 - 중견기업 매출액 1조원 미만	- 피상속인: · 10년 이상 계속경영 - 중견기업 매출액 5천억원 미만
공제 한도	- 가업영위기간별 · 10~20년: 200억원 · 20~30년: 300억원 · 30년 이상: 500억원	- 가업영위기간별 · 5~20년: 200억원 · 20~30년: 300억원 · 30년 이상: 500억원	- 가업영위기간별 · 10~20년: 400억원 · 20~30년: 600억원 · 30년 이상: 1,000억원	- 가업영위기간별 · 10~20년: 300억원 · 20~30년: 400억원 · 30년 이상: 600억원

기업상속공제				
구분	현 행	홍석준 의원안	정부안	심의 결과
사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 기간 7년 - 고용유지요건 · 매년 정규직 근로자 수 및 총급여액 80% 이상 · 7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 및 총급여액 100% 이상 - 자산유지: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 기간 5년 - 고용유지요건 · 매년 유지요건 삭제 · 5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 및 총급여액 80% 이상 - 자산유지: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 기간 5년 - 고용유지요건 · 매년 유지요건 삭제 · 5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 및 총급여액 90% 이상 - 자산유지: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 기간 5년 - 고용유지요건 · 매년 유지요건 삭제 · 5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 및 총급여액 90% 이상 - 자산유지: 60%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현 행	홍석준 의원안	권성동 의원안	정부안	심의 결과
적용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여자: 60세 이상 부모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매출액 4천억원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여자: 60세 이상 부모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매출액 4천억원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여자: 60세 이상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여자: 60세 이상 부모 - 중견기업 매출액 1조원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여자: 60세 이상 부모 - 중견기업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증여 재산	- 주식·출자지분	- 주식·출자지분	- 주식·출자지분 - 토지, 건축물	- 주식·출자지분	- 주식·출자지분
과세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여세 과세 가액 10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10~20% 세율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여세 과세 가액 50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10% 세율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여세 과세 가액 50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10% 세율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1천억원 한도로 10억원 공제 후 10~20% 세율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 한도로 10억원 공제 후 10~20% 세율 적용
사후 관리	- 사후관리 7년	- 사후관리 7년	- 사후관리 7년	- 사후관리 5년	- 사후관리 5년

기업승계시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유예			
	현 행	정부안	심의 결과
상속	(신설)	- 기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이 기업용 자산을 양도·상속·증여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유예	(정부안)
증여	(신설)	- 기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이 기업주식을 양도·상속·증여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유예	(정부안)

○ 주요 심사 의견

- 기업승계세제 확대가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함으로써 투자·고용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으나 부의 무상이전에 따른 조세회피의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

[표 22] 기업승계세제 확대 관련 주요 심사 의견

구분	심사 의견
찬성 의견	- 원활한 기업승계를 통해 경제 활성화 - 투자·고용 유인 효과
반대 의견	- 기업승계세제의 가파른 확대는 명문장수기업 지원을 위한 예외적 우대조치라는 본래의 도입 취지에 반함 - 부의 무상이전에 따른 조세회피에 악용 우려

○ 결론

- 기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 매출액은 4천억원 미만에서 5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한도액을 최대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상향하며, 사후관리 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여·야 합의에 따라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및 과세표준, 세율 조정

○ 관련 안건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김영진·서영교·김성환·박성준 의원안, 정부안)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조정 및 세율 인하(김성환 의원안, 정부안)
- 다주택자 증과세율 폐지(정부안)

[표 2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과세표준·세율 개정안

	현행	김영진 의원안	서영교 의원안
납세 의무자 요건 추가	(신설)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 요건) - 일반: 11억원 - 1세대 1주택자: 11억원 - 공동명의 1주택자: 6억원 - 법인: 3억원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 요건) - 일반: 11억원 - 1세대 1주택자: 11억원 - 공동명의 1주택자: 5.5억원 - 법인: 3억원
기본 공제금액	(일반) 6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원 (법인) 없음	(일반) 6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원 (법인) 없음	(일반) 6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원 (법인) 없음

	김성환 의원안	박성준 의원안	정부안	심의 결과
납세 의무자 요건 추가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 요건) - 일반: 11억원 - 1세대 1주택자: 11억원 - 공동명의 1주택자: 6억원 - 법인: 없음	-	-	- 납세의무자 요건 현행 유지
기본 공제금액	(일반) 6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원 (법인) 없음	(일반) 6억원 (1세대 1주택자) 15억원 (법인) 없음	(일반)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 (법인) 없음	(일반)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 (법인) 없음
	현행	김성환 의원안	정부안	심의 결과
과세표준 및 세율	(개인, 2주택 이하)	(개인, 2주택 이하)	(개인)	(개인, 2주택 이하)
	과세표준	과세표준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세율	세율	세율
	3억원 이하	3억원 이하	3억원 이하	3억원 이하
	0.6%	0.6%	0.5%	0.5%
	6억원 이하	6억원 이하	6억원 이하	6억원 이하
	0.8%	0.8%	0.7%	0.7%
	12억원 이하	12억원 이하	12억원 이하	12억원 이하
	1.2%	1.2%	1.0%	1.0%
	5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25억원 이하	25억원 이하
1.6%	1.6%	1.3%	1.3%	
94억원 이하	94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2.2%	2.2%	1.5%	1.5%	
94억원 초과	9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94억원 이하	
3.0%	3.0%	2.0%	2.0%	
		94억원 초과	94억원 초과	
		2.7%	2.7%	
(개인, 3주택 이상*)	(개인, 3주택 이상*)	* 다주택자 증과세율 폐지	(개인, 3주택 이상)	
과세표준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세율		세율	
3억원 이하	3억원 이하		3억원 이하	
1.2%	0.6%		0.5%	
6억원 이하	6억원 이하		6억원 이하	
1.6%	0.8%		0.7%	
12억원 이하	12억원 이하		12억원 이하	
2.2%	2.2%		1.0%	
5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25억원 이하	
3.6%	3.6%		2.0%	
94억원 이하	94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5.0%	5.0%		3.0%	
94억원 초과	9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6.0%	6.0%		4.0%	
			94억원 초과	
			5.0%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포함 (법인, 2주택 이하) 3.0%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포함 (법인, 2주택 이하) 3.0%	(법인) 2.7%	(법인, 2주택 이하) 2.7%	
(법인, 3주택 이상*) 6.0%	(법인, 3주택 이상*) 6.0%	* 다주택자 증과세율 폐지	(법인, 3주택 이상) 5.0%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포함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포함			

○ 주요 심사 의견

-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부담 완화 필요성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증과세 유지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상충

[표 24]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세율 조정 관련 주요 심사 의견

구 분	심사 의견
찬성 의견	- 종합부동산세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고자 도입, 그러나 현재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고액 부동산 보유자가 아닌 과세대상자까지 지나치게 확대되어 세부담 완화가 필요
반대 의견	-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중 상당부분을 다주택자 및 법인이 부담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등은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을 과도하게 완화

○ 결론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1세대 1주택자 11억원에서 12억원)하는 정부안으로 하되, 세율 조정은 2주택 이하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3주택자에게만 중과세율 적용하는 여·야 합의에 따라 본회의 의결

2 의원발의 법률안 심의 결과

-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은 315건이 논의되어 1건 원안가결, 313건 계류, 1건 대안반영 폐기
 - 다만, 12월 23일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된 15개 법률안에 313건 계류 법률안의 일부 내용이 포함¹¹⁾
 - 법인세율 인하 등 쟁점 안건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심사기간이 초과하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하고 본회의 자동부의
 - 12월 22일 합의된 쟁점 안건의 내용과 조세소위원회 심사기간 동안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안건의 내용을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반영한 수정안¹²⁾으로 2022.12.23.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 본회의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 중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의원안의 내용이 반영된 개정사항은 16건
 - 「조세특례제한법」 9건, 「관세법」 2건, 「국세징수법」 2건, 「국세기본법」 1건, 「농어촌특별세법」 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건
- 의원안 중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 반영된 안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가. 「국세기본법」

-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당해세 우선 적용예외 신설(박대출 의원안)
 - 임대인 변경 후 공매·경매시 국세징수 규정을 신설하고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당해세 우선 적용예외를 신설

11)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을 제외한 상기 의원발의 법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개정세법에 반영하는 것으로 잠정합의. 그러나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된 상기 법안이 심사기간인 11월 30일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고 그 다음날인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됨에 따라 상임위 심사단계에서 해당 사항이 의결되지 않았으나,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본회의 수정안에 반영된 사항임

12)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거나 제안한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수정을 하려면 30인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수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 제95조제1항)

나. 「국세징수법」

-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박대출 의원안)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경우 열람 허용
- 금융투자소득 관련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사용 근거 규정 마련(김주영 의원안)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의 정보를 「국세기본법」상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강제징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신설(류성걸 의원안)
 - 해외단체(특수목적회사 등)를 통해 투자하고 있는 내국법인 등이 해외단체를 도관 기업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과세특례¹³⁾ 신설

라. 「관세법」

- 한국원산지정보원 설립·출연의 법적 근거 마련(박대출 의원안)
 - 현행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간접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원산지정보원을 직접지원방식의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설립·출연의 법적 근거 신설
- 관세무역데이터 분석센터 설치 근거 마련(김주영 의원안)
 - 「관세법」에 관세무역데이터 분석센터 및 관세무역데이터의 제공 관련 규정 신설

마. 「조세특례제한법」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상향(홍성국 의원안)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70%(청년 90%)에서 90%로 상향하고, 감면한도를 현행 1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13) 외국의 역혼성실체 방지규정에 따른 법인세 과세 방지 목적

심의과정에서 감면한도만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수정

-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류성걸 의원안)
 -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
 - 총급여액 7,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연 840만원 납입한도 내에서 2025.12.31.까지 가입한 적금계좌(1명당 1개)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 단, 정부기여금은 개인총급여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에 대해 지급할 예정이며, 상품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에서 추후 발표 예정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박홍근·김주영 의원안)
 - 상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한 소규모 사업자 및 이를 대리하여 제출한 세무회계법인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심의과정에서 소득자 수 등을 고려하여 세액공제하도록 수정
 - 공제한도: 연 300만원(세무회계법인 연 600만원)
 - 적용기한: 2024.1.1. ~ 2025.12.31.
-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신설(배준영 의원안)
 - 2023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절약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조정을 통해 가속상각 허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대한체육회 등을 추가(고용진 의원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을 추가하는 의원안이 제출되었으며, 심의과정에서 법률에는 ‘체육 분야’를 명시하되 구체적인 대상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수정
-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 배분 시 수동적 동업자 예외 추가(홍성국·김병욱·추경호 의원안)
 - ‘기관전용 사모집단투자기구’를 수동적 동업자의 예외 대상에 추가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기한 연장 등(정태호·김주영·신동근 의원안)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의원안이 발의되어 논의한 결과, 대상기업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축소하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

-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신설(안호영·이원택 의원안)
 -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 등에게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의원안이 발의되어 논의한 결과, 2025년까지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세액감면 신설
-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난방용 또는 농·임업용으로 공급하는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이양수·안호영 의원안)
 - 동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의원안을 심의한 결과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바. 「농어촌특별세법」

-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 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류성걸 의원안)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감면액을 추가

[표 25] 의원발의 세법개정안 중 개정세법에 반영된 안건의 심의 결과

안 건	제안내용(개정안)	심의 결과
「국세기본법」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당해세 우선 적용예외 신설(박대출 의원안)	- 경매·공매시 해당 주택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의 경우 당해세 우선의 적용에서 예외	(원안반영)
「국세징수법」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박대출 의원안)	- 임차보증금이 일정규모 이상인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없이 미납국세 등 열람 가능	(원안반영)
금융투자소득 관련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사용 근거 규정 마련(김주영 의원안)	- 채납자의 재산조회 등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 금융투자소득 관련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사용	(원안반영)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외투자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신설(류성걸 의원안)	- 해외단체를 통해 투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외단체를 도관기업으로 볼 수 있음	(원안반영)

안 건	제안내용(개정안)	심의 결과
「관세법」		
한국원산지정보원 설립·출연의 법적 근거 마련(박대출 의원안)	(신설)	- 한국원산지정보원 설립·출연의 법적 근거 신설
관세무역데이터 분석센터 설치 근거 마련(김주영 의원안)	(신설)	- 관세무역데이터 분석센터 및 관세무역 데이터의 제공 관련 규정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 및 감면한도 상향(홍성국 의원안)	(소득세 감면율 및 감면한도 상향) - 소득세 감면율 상향: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 70%→90% - 감면한도 상향: 150→500만원	(수정반영) - 감면율 유지 - 감면한도 상향: 150→200만원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류성걸 의원안)	(비과세 신설) - (대상) 총급여액 7,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청년 - (요건)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적금계좌(1명당 1개) - (납입한도) 연 840만원 이하	(원안반영)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박홍근·김주영의원안)	(박홍근 의원안) - 공제한도: 연 200만원 (세무·회계법인 연 500만원), - 적용기한: 2021.7.1.~2024.12.31. (김주영 의원안) - 공제한도: 연 300만원 (세무·회계법인 연 750만원), - 적용기한: 2022.1.1.~2023.12.31.	(수정반영) - 소득자 수 등을 고려하여 세액공제하도록 수정 반영 - 공제한도 연 300만원 (세무·회계법인 연 600만원) - 적용기한 2024.1.1.~2025.12.3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대한체육회 등 추가(고용진 의원안)	(법률에 단체명 명시) -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종목별 경기단체	(수정반영) - 법률에 '체육 분야'를 명시하고, 구체적인 대상은 대통령령 위임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 배분시 수동적동업자 예외 추가(홍성국·김병욱·추경호 의원안)	- 해당 의원안 모두 '기관전용 사모집단투자기구'를 수동적 동업자의 예외로 규정	(원안반영)

안 건	제안내용(개정안)	심의 결과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신설(배준영 의원안)	-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허용 - 적용기한: 2023.12.31.	(원안반영)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기한 연장 등 (정태호·김주영·신동근 의원안)	(정태호 의원안) - 적용기한: 2023.12.31. (김주영 의원안) - 적용기한: 2024.12.31. (신동근의원안) - 상호출자기업집단 내 미환류소득 상계 허용 - 적용기한: 2025.12.31.	(수정반영)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대상기업 범위를 축소 - 적용기한: 2025.12.31.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신설 (안호영·이원택 의원안)	(안호영 의원안) - 입주기업: 3년 100%, 2년 50% - 사업시행자: 3년 50%, 2년 25% - 적용기한: 2030.12.31. (이원택 의원안) - 입주기업: 5년 100%, 3년 75%, 2년 50% - 적용기한: 2030.12.31.	(수정반영) - 감면율: 3년 100%, 2년 50% - 적용기한: 2025.12.31.
난방용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이양수·안호영 의원안)	(이양수 의원안) - 적용기한 2025.12.31. (안호영 의원안) - 적용기한 2032.12.31.	(수정반영) - 적용기한 2025.12.31.
「농어촌특별세법」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류성걸 의원안)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감면액 추가	(원안반영)

3 정부제출 법률안 심의 결과

-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19건 가운데 원안가결 3건, 수정가결 12건, 대안가결 1건, 계류 3건(기재위 2건, 법사위 1건)
- 본회의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 중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을 수정한 주요 개정사항은 24건
 - 「국세기본법」 2건, 「소득세법」 3건, 「법인세법」 4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3건, 「종합부동산세법」 1건, 「주세법」 1건, 「교육세법」 1건, 「조세특례제한법」 9건
- 정부 원안 중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 반영된 안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가. 「국세기본법」

- 전자송달 신청의 자동철회 간주 규정 상향입법
 - 2회 연속 전자송달된 서류를 열람하지 않은 경우 신청철회로 간주하는 시행령 규정을 본법으로 상향하는 정부안에 대해 기획재정위원회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별도의 항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조정
-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상향
 -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거짓 진술을 하거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2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정부안에 대해 5천만원 이하로 조정

나. 「소득세법」

-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주의 범위를 현행 '대주주'로 유지
 -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주의 범위를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대주주'에서 지분율을 삭제하고 시가총액 기준 100억원 이상으로 하는 '고액주주'로 변경하려던 정부안에 대해 현행 '대주주(종목당 10억원 이상)'를 유지하기로 조정

- 대주주 판정 시 친족 등 기타주주 합산을 폐지하되, 최대주주의 경우에는 친족의 범위를 축소·조정하여 반영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미제출 가산세 특례기간 확대
 - 상용근로소득 간이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하는 기간을 6개월(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1년)로 신설하려던 정부안의 한시적 특례기한을 1년(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2년)으로 확대 조정
- 접대비 명칭 변경
 - 접대비 명칭을 ‘업무추진비’로 변경하는 정부안에 대해 접대비를 ‘기업업무추진비’로 수정

다. 「법인세법」

- 법인세 세율 변경
 - 과세표준 구간을 2단계(중소·중견 3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정부안에 대해, 현행 과세표준 구간을 유지하되 각 구간의 세율을 1%p씩 인하하는 것으로 수정
- 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 모회사와 자회사 형태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단순화하는 정부안이 반영되었으나, 익금불산입률이 크게 감소하는 기업을 고려하여 지분율 구간을 조정
 - 당초 정부안은 지분율 30~50% 구간에 익금불산입률 80%, 지분율 30% 미만 구간에 익금불산입률 30%를 적용하는 안이었으나, 해당 구간을 각각 20~50%, 20% 미만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 종전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조치는 2026년에서 2023년으로 단축
- IFRS17도입 보험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 시행일(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정부안에 대해, 2022년 사업연도에 미리 적용하는 기업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부칙을 마련

□ 접대비 명칭 변경

- 접대비 명칭을 ‘업무추진비’로 변경하는 정부안에 대해 접대비를 ‘기업업무추진비’로 수정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완화 및 가업상속공제액 확대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증견기업 기준을 연매출액 1조원 미만에서 5천억원 미만으로 조정하고, 가업상속공제 금액의 최대 한도액을 1천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조정

□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적용대상 축소

-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적용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의 최대주주 주식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최대주주 주식으로 축소하려는 정부안에 대해, 대기업의 최대주주 주식까지 할증평가 하도록 조정

□ 국가지정문화재 등 보유자의 납세담보 면제 허용

- 상속세 과세방식이 비과세에서 징수유예로 전환된 국가지정문화재 등 보유자의 납세담보 제공 의무에 대한 정부안에 납세담보 면제를 허용하고 납세의무 면제자의 신고의무 부여 및 위반 시 가산세 부과

마. 「종합부동산세법」

□ 종합부동산세 세율 변경

-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도록 하는 정부안에 대해, 과세표준이 12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유지하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
 -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을 종전 3.6~6.0%에서 1.3~2.7%로 하향하는 정부안을 2.0~5.0%로 상향 조정

바. 「주세법」

- 맥주 등의 주세 세율 계산식에 반영하는 가격변동지수 조정
 - 매년 세율 계산식에 반영하는 가격변동지수 산정 시 직전연도 말 기준 소비자물가상승률의 $\pm 50\%$ (50~1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시행령에 위임할 수 있는 세율 조정 범위의 합리적 수준 등을 감안하여 $\pm 30\%$ (70~130%)로 범위 수정

사. 「교육세법」

- IFRS17 조기도입 보험회사에 대한 새로운 과세표준 적용
 -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국내 의무적용되는 2023년부터 새로운 과세표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정부안에 대해, 의무적용 이전에 임의적용한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개정 제도의 시행 이후 교육세를 신고하는 과세기간부터 새로운 과세표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 규정

아. 「조세특례제한법」

-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확대
 -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단일세율 적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간(현행 5년)을 영구화하는 정부안에 대해 특례 적용기간을 20년으로 수정
-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0%/12%*에서 12%/15%*로 상향하는 정부안에 대하여 15%/17%*로 상향조정
 -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2022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 2022년 한시로 전년 대비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분 105% 초과 사용분에 대하여 각각 10%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이에 대해 100만원의 추가공제한도를 부여하는 정부안에 대하여 추가 소득공제율을 20%로 상향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 소득 명확화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4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정부안에 추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되는 소득을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소득”에서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양도소득”으로 의미 명확화
-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방안 보완
 -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현행 2022년 말에서 2024년 말로 2년 연장하는 정부안에 추가하여 사후관리 방안 보완
- 농어촌주택 소재지 요건 완화
 - 농어촌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기한을 2022년말에서 2025년말로 연장하고, 농어촌주택에 대한 가액요건을 취득당시 주택·토지가액 합계액 3억원(현행 2억원)이하로 확대하는 정부안에 인구 및 부동산 가격 동향을 고려하여 도시지역도 농어촌주택의 소재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수정
- 유류세 환급 대상 확대 및 시행령 위임규정 명확화
 - 유류세 환급 대상 요건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되, 그 대상에 이륜자동차가 포함되도록 확대하고 시행령에 규정될 사항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위임 범위를 구체화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중고자산 매입비율 축소
 - 창업자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창업으로 인정되는 중고자산 매입비율을 50% 이하로 확대하려는 정부안을 50% 미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축소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공제금액 조정
 - 가업승계 증여세 공제한도액을 가업 영위 기간별로 400~1,000억원으로 조정하려는 정부안을 300~600억원으로 조정

[표 26] 2022년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 중 국회 수정 결과

안 건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	심의 결과															
「국세기본법」																	
전자송달 신청의 자동철회 간주 규정 상향입법(국기법 제10조 제9항)	- 시행령 규정을 상향입법	- 시행령 규정을 상향입법 하되 별도의 항으로 구분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상향(국기법 제88조 제1항)	- 2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소득세법」																	
접대비 명칭 변경 (소득세법 제35조)	- 업무추진비	- 기업업무추진비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미제출 가산세 특례기간 2배 확대 (소득세법 제81조의11)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 제출 가산세 한시적 특례 신설) - 적용내용: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시 미제출 가 산세 면제 - 적용대상: 2024.1.1. ~ 2024.6.30. 지급분(소규모사업자는 2024.1.1. ~ 2024.12.31.지급분)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한시적 특례 신설의 적용대상 기한 연장) - 적용대상: 2024.1.1. ~ 2024.12.31. 지급분(소규모사업자는 2024.1.1. ~ 2025.12.31.지급분)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주의 범위를 현행 대주주로 유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 호, 제104조제1항제11호, 제 115조, 제118조의9)	-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주주의 범위를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대주주에서 지분율을 삭제하고 시가총액 기준 100억원 이상으 로 하는 고액주주로 변경	- 현행 대주주 요건 유지															
「법인세법」																	
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법인세법 제18조의2)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table border="1"> <thead> <tr> <th>지분율</th> <th>익금불산입률</th> </tr> </thead> <tbody> <tr> <td>50% 이상</td> <td>100%</td> </tr> <tr> <td>30% ~ 50% 미만</td> <td>80%</td> </tr> <tr> <td>30% 미만</td> <td>30%</td> </tr> </tbody> </table>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50% 이상	100%	30% ~ 50% 미만	80%	30% 미만	30%	<table border="1"> <thead> <tr> <th>지분율</th> <th>익금불산입률</th> </tr> </thead> <tbody> <tr> <td>50% 이상</td> <td>100%</td> </tr> <tr> <td>20% ~ 50% 미만</td> <td>80%</td> </tr> <tr> <td>20% 미만</td> <td>30%</td> </tr> </tbody> </table>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50% 이상	100%	20% ~ 50% 미만	80%	20% 미만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50% 이상	100%																
30% ~ 50% 미만	80%																
30% 미만	30%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50% 이상	100%																
20% ~ 50% 미만	80%																
20% 미만	30%																
	* 2026년 배당분까지 종전 방식 선택 가능	* 2023년 배당분까지 종전 방식 선택 가능															

안 건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	심의 결과																		
접대비 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법인세법 제25조)	- 업무추진비	- 기업업무추진비																		
IFRS17도입 보험회사에 대한 과세특례(법인세법 제32조 및 제42조의3 등)	(IFRS17 적용 보험회사 최초 택1) - 회계기준 전환이익 과세특례 : 4년 거치 3년 균등 익금산입 -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산입 : 준비금 적립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적용시기) - '23년 사업연도 적용분부터	(IFRS17 적용 보험회사 최초 택1) - 회계기준 전환이익 과세특례 : 4년 거치 3년 균등 익금산입 -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산입 : 준비금 적립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적용시기) - '22년 사업연도 적용분부터																		
법인세 세율 변경(법인세법 제55조)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 <td>5억원 이하</td> <td>10% (중소·중견)</td> </tr> <tr> <td>5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td> <td>20%</td> </tr> <tr> <td>200억원 초과</td> <td>22%</td> </tr> </tbody> </table>	과세표준	세율	5억원 이하	10% (중소·중견)	5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 <td>2억원 이하</td> <td>9%</td> </tr> <tr> <td>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td> <td>19%</td> </tr> <tr> <td>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td> <td>21%</td> </tr> <tr> <td>3,000억원 초과</td> <td>24%</td> </tr> </tbody> </table>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
과세표준	세율																			
5억원 이하	10% (중소·중견)																			
5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공제한도액 조정(상증법 제18조)	(적용대상) 중견기업 매출액 1조원 미만 (공제한도액: 가업영위 기간별) - 10~20년: 400억원 - 20~30년: 600억원 - 30년 이상: 1,000억원	(적용대상) 중견기업 매출액 5천억원 미만 (공제한도액: 가업영위 기간별) - 10~20년: 300억원 - 20~30년: 400억원 - 30년 이상: 600억원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적용대상 축소(상증법 제63조)	(주식할증 평가 제외대상)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	(주식할증 평가 제외대상) -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발행한 주식																		
국가지정문화재 등 보유자의 납세담보 면제(상증법 제74조 및 제78조)	- 국가지정문화재 등 보유자의 납세유예시 납세담보 제공 의무	- 국가지정문화재 등 보유자의 납세유예시 납세담보 면제 허용 - 납세의무 면제자의 신고 의무 부여 및 위반 시 가산세 부과																		

안 건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	심의 결과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중부세법 제8조 및 제9조)	(개인)	(개인, 3주택 이상)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 <td>3억원 이하</td> <td>0.5%</td> </tr> <tr> <td>6억원 이하</td> <td>0.7%</td> </tr> <tr> <td>12억원 이하</td> <td>1.0%</td> </tr> <tr> <td>25억원 이하</td> <td>1.3%</td> </tr> <tr> <td>50억원 이하</td> <td>1.5%</td> </tr> <tr> <td>94억원 이하</td> <td>2.0%</td> </tr> <tr> <td>94억원 초과</td> <td>2.7%</td> </tr> </tbody> </table> <p>*다주택자 종과세율 폐지 (법인) 2.7% *다주택자 종과세율 폐지</p>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0.5%	6억원 이하	0.7%	12억원 이하	1.0%	25억원 이하	1.3%	50억원 이하	1.5%	94억원 이하	2.0%	94억원 초과	2.7%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 <td>3억원 이하</td> <td>0.5%</td> </tr> <tr> <td>6억원 이하</td> <td>0.7%</td> </tr> <tr> <td>12억원 이하</td> <td>1.0%</td> </tr> <tr> <td>25억원 이하</td> <td>2.0%</td> </tr> <tr> <td>50억원 이하</td> <td>3.0%</td> </tr> <tr> <td>94억원 이하</td> <td>4.0%</td> </tr> <tr> <td>94억원 초과</td> <td>5.0%</td> </tr> </tbody> </table> <p>(법인) 5.0%</p>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0.5%	6억원 이하	0.7%	12억원 이하	1.0%	25억원 이하	2.0%	50억원 이하	3.0%	94억원 이하	4.0%	94억원 초과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0.5%																																
6억원 이하	0.7%																																
12억원 이하	1.0%																																
25억원 이하	1.3%																																
50억원 이하	1.5%																																
94억원 이하	2.0%																																
94억원 초과	2.7%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0.5%																																
6억원 이하	0.7%																																
12억원 이하	1.0%																																
25억원 이하	2.0%																																
50억원 이하	3.0%																																
94억원 이하	4.0%																																
94억원 초과	5.0%																																
「조세특례제한법」																																	
외국인근로자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확대 (조특법 제18조의2)	(특례 적용기간) - 항구화	(특례 적용기간) - 20년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폭 확대 (조특법 제95조의2)	(공제율) - 월세액의 10%(12%*) → 12%(15%*) * 총급여액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공제율) - 월세액의 15%(17%*) * 총급여액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 소득 명확화 등 (조특법 제97조의3)	(적용기한 연장) - 2022.12.31.→2024.12.31	(적용기한 연장) - 2022.12.31.→2024.12.31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대상 소득) -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소득’ →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양도소득’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방안 보완(조특법 제97조의9)	(적용기한 연장) - 2022.12.31.→2024.12.31. (사후관리 방안) -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해야 하는 기한: 토지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	(적용기한 연장) - 2022.12.31.→2024.12.31. (사후관리 방안 추가) -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해야 하는 기한: 토지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 * 단, 인허가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창업인정 중고자산 매입비율 축소(조특법 제30조의5)	(창업인정 중고자산 매입비율) - 50%를 초과하는 경우	(창업인정 중고자산 매입비율) - 50% 미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																															

안 건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	심의 결과
농어촌주택 등 요건 중 도시지역에서 기업도시 개발구역 제외(조특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적용기한 연장) - 2022.12.31.→2025.12.31. (농어촌주택 가액요건 확대) - 취득당시 주택·토지가액 합계액 2억원 → 3억원	(농어촌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적용기한 연장) - 2022.12.31.→2025.12.31. (농어촌주택 가액요건 확대) - 취득당시 주택·토지가액 합계액 2억원 → 3억원 (소재지 요건 완화) - 인구 및 부동산 가격 동향을 고려하여 도시지역도 농어촌 소재지에 포함되도록 허용
2022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조특법 제126조의2)	(대상) - 2022년 한시 전년 대비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액 105% 초과 사용분 (소득공제율) - 10% 추가 공제 (공제한도) - 100만원 추가	(대상) - 2022년 한시 전년 대비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액 105% 초과 사용분 (소득공제율) - 20% 추가 공제 (공제한도) - 100만원 추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공제금액 조정(조특법 제30조의6)	(공제한도액: 가업영위 기간별) - 10~20년: 400억원 - 20~30년: 600억원 - 30년 이상: 1,000억원	(공제한도액: 가업영위 기간별) - 10~20년: 300억원 - 20~30년: 400억원 - 30년 이상: 600억원
유류세 환급 대상 확대를 위한 시행령 위임(조특법 제111조의2)	(환급대상 확대 및 시행령 위임) -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중 배기량 1,000cc 미만의 자동차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로서 배기량, 최대적재량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 자동차	(환급대상 확대 및 시행령 위임) -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중 배기량 1,000cc 미만의 자동차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1,000cc 미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 자동차
「교육세법」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업자의 새 과세표준 적용 범위(교육세법 제52조제3항)	-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하되, 2023년 이전 임의적용한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교육세를 신고하는 과세기간부터 새 과세표준 적용
「주세법」		
맥주 주세율에 반영되는 가격변동지수 조정(주세법 제8조)	- 직전연도 소비자물가지수의 ±50%(50~150%)	- 직전연도 소비자물가지수의 ±30%(70~130%)

4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

-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에 따라 2023~2027년 동안 64조 4,081억원(연평균 12조 8,816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¹⁴⁾

[표 27]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계): 2023~2027년

(단위: 억원)

	2023	2024	2025	2026	2027	연평균	'23-'27 누적
누적법	-60,281	-144,216	-146,438	-144,760	-148,387	-128,816	-644,081
소득세	-35,688	-51,276	-39,556	-33,574	-34,260	-38,871	-194,353
법인세	-4,062	-61,623	-66,031	-70,196	-72,199	-54,822	-274,112
증권거래세	-8,731	-16,774	-27,108	-27,949	-28,832	-21,879	-109,395
종합부동산세	-8,367	-12,194	-12,194	-12,194	-12,194	-11,429	-57,143
기타	-3,433	-2,348	-1,549	-847	-901	-1,816	-9,079
순액법	-60,281	-83,935	-2,222	1,677	-3,626	-29,677	-148,387
소득세	-35,688	-15,588	11,720	5,982	-686	-6,852	-34,260
법인세	-4,062	-57,561	-4,408	-4,165	-2,003	-14,440	-72,199
증권거래세	-8,731	-8,043	-10,334	-842	-883	-5,766	-28,832
종합부동산세	-8,367	-3,827	0	0	0	-2,439	-12,194
기 타	-3,433	1,085	799	702	-55	-180	-901

- 주: 1. 누적법은 기준연도 대비 연도별 세수변화를 추계한 것이며, 순액법은 각 연도에 전년 대비 증가한 세수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두 방식 모두 단순 일몰연장 법안은 세수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
 2. 세수효과는 개정세법을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추계한 결과임

- 세법개정 주요 항목의 세수효과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 공제 조정(소득세 -13.3조원), 법인세 세율 인하(법인세 -15.7조원), 증권거래세율 인하(증권거래세 -10.9조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등 (종합부동산세 -5.6조원)

14) 국회에서 가결된 개정세법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결과이며, 확정된 2023년 총수입 예산은 부록에서 다시 설명. 세수효과는 기준연도(2022년) 대비 증가한 누적세수를 세수효과로 선정하는 방식인 누적법을 기본으로 사용

[표 28] 주요 항목별 세수효과

(단위: 억원)

세법개정 주요 항목	연평균	'23~'27 누적
(소득세)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26,515	-132,573
(법인세) 법인세율 과세표준구간별 1%p 인하	-31,320	-156,598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율 인하	-21,879	-109,395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등	-11,202	-56,009

-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국회 수정사항으로 인한 세수효과는 정부 세법개정안 대비 5년(2023~2027년) 누적 6조 2,260억원 증가
- 2022년 세법개정안 중 국회에서 수정·확정된 사항에 따른 세목별 세수효과
 - 법인세
 - 법인세율 과세표준구간 유지 및 구간별 세율 1%p 인하: 5년간 4조 4,398억원
 - 국내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조정*: 5년간 -6,334억원
 - * 지분을 20% 이상 30% 미만 구간 기업의 익금불산입률 상향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적용대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축소하고, 적용기한 연장: 5년간 1조 782억원
 - 증권거래세
 - 2024년 증권거래세율 인하: 5년간 -7,903억원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세율 조정: 5년간 2조 2,405억원¹⁵⁾
 - 기타
 -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5년간 -2,160억원
 - 주세의 물가연동 범위 축소*: 5년간 1,092억원
 - * 직전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50% 범위 내에서 ±30% 범위 내로 축소
 - 임산물 중 목재펠릿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5년간 -20억원

15) 농어촌특별세 포함

[표 29] 2022년 세법개정안 대비 국회수정사항의 세수효과 변동내역

(단위: 억원)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법인세	849	10,910	11,559	12,344	13,184	48,846
- 법인세율 과세표준구간 유지 및 구간별 세율 1%p 인하	849	9,798	10,447	11,232	12,072	44,398
- 국내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조정	-	-1,584	-1,584	-1,584	-1,584	-6,334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대상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	-	2,696	2,696	2,696	2,696	10,782
증권거래세	-	-6,557	-1,346	0	0	-7,903
- 증권거래세율 인하	-	-6,557	-1,346	0	0	-7,903
종합부동산세	4,062	4,586	4,586	4,586	4,586	22,405
- 종합부동산세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세율 조정(농특세 포함)	4,062	4,586	4,586	4,586	4,586	22,405
기타	-193	-157	-197	-243	-297	-1,088
-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331	-375	-425	-482	-547	-2,160
- 주세의 물가연동 범위 축소	141	222	233	243	253	1,092
- 임산물 중 목재펠릿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4	-4	-4	-4	-4	-20
합 계	4,718	8,782	14,602	16,687	17,473	62,260

주: 1. 일몰이 연장될 것으로 가정하고 세수효과를 추계
 2. 세수효과 추정이 곤란한 항목은 제외하고 산정

5 부대의견

- 국회는 2022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총 1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

가. 「소득세법」 부대의견: 1건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에 따른 고소득자의 감세 혜택 확대 가능성에 대한 방안 마련 검토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시, 누진과세 체계의 특성상 고소득자의 감세 혜택이 큼에 따라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방안을 마련하도록 부대의견 채택
 -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무주택 근로소득자의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을 고려하여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의 총급여 기준 설정 필요성을 검토한다.’

나. 「부가가치세법」 부대의견: 2건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방안 검토
 - 「관세법」 개정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과세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에 대한 제재 강화에도 불구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부대의견 채택
 - (부대의견) ‘정부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에 따른 다국적기업 등의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 저소득층 청소년의 여성용 생리용품 구입비용 경감을 위한 재정지원 등 검토
 - 생리용품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세제지원 외에 재정지원 측면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생리용품 구입비용 경감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부대의견 채택
 - (부대의견) ‘정부는 저소득층 청소년의 여성용 생리용품 구입비용 경감을 위하여 재정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다. 「종합부동산세법」 부대의견: 1건

- 법인사업자 종부세 부담 완화
 -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처분할 수 없는 법인 등의 불이익을 시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부대의견 채택
 -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한 법인 사업자의 불가피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라. 「관세법」 부대의견: 1건

- 면세점 운영 및 고용 안정성 강화
 - 면세점 운영 및 고용안정을 위한 면세점의 특허갱신 횟수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확대방안을 검토하도록 부대의견 채택
 - (부대의견) ‘정부는 면세점의 고용안정 및 특허 갱신회수의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마. 「국세징수법」 부대의견: 1건

-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 강화 방안 검토
 - 경제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임차인에 대한 재산권 보호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부대의견 채택
 -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임차인이 계약 이후 임대인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던 미납국세를 확인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바. 「조세특례제한법」 부대의견: 소득세 분야 2건, 부가가치세 분야 3건

-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도입될 청년도약계좌의 위험자산 투자에 대한 방안 마련 검토
 - 청년도약계좌 신설 및 동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청년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위험상품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지원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방안을 마련하도록 부대의견 채택

-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청년도약계좌 상품 설계 시 투자 손실 가능성을 축소하기 위해 위험자산 투자비중을 제한하거나, 예·적금 등 안전자산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는 등 상품 설계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마련한다.’

□ 월세 세액공제의 지속적인 확대 방안 마련 검토

- 월세 세액공제의 확대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는 서민 주거안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월세 제도 전반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었고, 이에 정부가 방안을 마련하도록 부대의견 채택
 -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 개인택시 부가가치세 면제로 인한 매입세액불공제 해결 방안 보고

- 원활한 택시 공급을 지원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실질적인 영세율 제도로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그 밖의 문제 해결 방안을 보고하도록 부대의견 채택
 -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개인택시 차량 부가가치세 면제로 인해 발생하는 매입세액불공제 문제 해결 방안을 2023년 정기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한다.’

□ 공공임대주택사업자의 수선유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 검토

- 공공임대주택 시설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선유지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세제지원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사업자의 수선유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부대의견 채택
 - (부대의견)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사업자의 수선유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검토한다.’

□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신설 도입 검토

- 면세점 송객수수료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면세점·여행 업계의 여론 수렴이 필요하며, 근본적으로 매입자 납부제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연구용역 및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도입을 검토하도록 부대의견 채택
 -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송객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탈루 실태와 매입자 납부특례 실효성에 대한 연구용역 및 면세점·여행업계의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

[표 30] 부대의견 채택안건

법률명	안건(제안자)	심사결과	부대의견
소득세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추경호·김영진·조수진·류성걸 의원안, 정부안)	정부안 채택	기획재정부는 무주택 근로소득자의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을 고려하여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의 총급여 기준 설정 필요성을 검토한다.
부가가치세법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정부안)	정부안 채택	정부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에 따른 다국적기업등의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여성용 월경 처리 위생용품 공급에 대한 영세율 및 수입에 대한 면세 적용(장혜영 의원안)	미반영	정부는 저소득층 청소년의 여성용 생리용품 구입비용 경감을 위하여 재정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종합부동산세법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 종전 세율 적용(고용진 의원안)	미반영	기획재정부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한 법인 사업자의 불가피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관세법	면세점 특허권 기간 및 갱신횟수 상향(정부안)	정부안 채택	정부는 면세점의 고용안정 및 특허 갱신횟수의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국세징수법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 제도 개선(박대출 의원안)	의원안 채택	기획재정부는 임차인이 계약 이후 임대인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던 미납국세를 확인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신설(류성걸 의원안)	의원안 채택	기획재정부는 청년도약계좌 상품 설계 시 투자 손실 가능성을 축소하기 위해 위험자산 투자비중을 제한하거나, 예·적금 등 안전자산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는 등 상품 설계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마련한다.
	월세 세액공제를 상향(고용진·서일준·김영진·김태년·조수진·류성걸·전용기 의원안, 정부안)	정부안 채택	기획재정부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 신설(고용진·윤영석 의원안)	미반영	기획재정부는 개인택시 차량 부가가치세 면제로 인해 발생하는 매입세액불공제 문제 해결 방안을 2023년 정기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한다.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 신설(김태년 의원안)	미반영	기획재정부는 송객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탈루 실태와 매입자 납부특례 실효성에 대한 연구용역 및 면세점·여행업계의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
	공공임대주택 또는 영구임대주택 수선유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고용진·박대출 의원안)	미반영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사업자의 수선유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검토한다.

2022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IV

법률별 심의 경과
및 결과

1 국세기본법

가. 총괄

- 「국세기본법」은 조세회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
 - 조세회피 대응 및 과세권 확보를 위한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증여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판결 등으로 재산의 실질귀속자 확인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등 법률안은 정부안대로 개정
 - 다만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를 2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정부안은 위원회 심사를 통해 정부안의 상한액 1억원을 5천만원으로 하향하여 개정
 - 그 외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 및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등도 정부안대로 개정
- 조세회피 관리 강화를 위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및 과태료 강화
 - 상속·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의 특례로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예: 해외거래소 또는 개인간 거래(P2P) 등의 방법)를 추가
 - 판결 등으로 재산의 실질 귀속자 확인 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상향
- 납세자 권익 제고를 위한 경정청구 사유 추가 및 대상 확대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추가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심사·심판 결정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및 ‘경정 또는 결정으로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과다납부된 경우’를 추가
 -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받아 납부한 납세자의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대상 확대(종전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부한 납세자만 경정청구가 가능했음)

나. 주요 논의 사항

(1)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증여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 주요 내용: 상속·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의 특례로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를 추가
 - 개정취지: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증여세 탈세 방지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분부터

[표 31] 가상자산의 상속·증여 부과제척기간 특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 분	현 행	정 부 안	개 정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증여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정부안)	(신설)	(상속·증여세 부과제척기간 특례) - 국내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정부안)

- 세수효과
 - 추정곤란
 -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은 가상자산의 상속증여분 등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 곤란
- 주요 논의 사항
 - 부과제척기간의 특례대상을 추가로 신설하여, 현실적으로 과세관청이 자료확보하기가 어려운 가상자산 거래 등을 통한 탈세를 방지하고 부당한 세수손실을 방지하려는 입법조치로 개정안에 여·야 모두 이견 없이 합의
- 판결 등으로 재산의 실질 귀속자 확인 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 주요 내용: 확정된 판결 등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의 특례로서, 판결 등의 결과로 '재산의 실질 귀속자'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추가
 - 개정취지: 재산의 귀속이 불확실한 경우의 과세권 확보를 도모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이후 판결 등이 확정되는 분부터

[표 32] 부과제척기간 특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분	현행	정부안	개정
판결 등으로 재산의 실질 귀속자 확인 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정부안)	(신설)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 판결 등의 결과로 '재산의 실질 귀속자'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정부안)

- 세수효과
 - 추정곤란
 - 판결 등으로 재산의 실질 귀속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부재로 합리적인 추정 곤란
- 주요 논의 사항
 - 부과제척기간 특례제도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과세권 행사를 통해 부당한 세수손실을 막고 조세정의를 높일 수 있는 입법조치로 개정안에 여·야 모두 이견 없이 합의

(2)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및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
 - 주요 내용: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심사·심판 결정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및 '경정 또는 결정으로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과다납부된 경우'를 추가
 - 개정취지: 경정청구 사유 확대를 통한 납세자 권익 제고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이후 재결정청의 심사심판 결정분, 처분청의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표 33]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 분	현 행	정부안	개 정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정부안)	(신설)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심사·심판 결정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 경정 또는 결정으로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과다납부된 경우	(정부안)

□ 세수효과

○ 추정곤란

- 판결 등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로 인한 경정청구 자료의 부재로 합리적인 추정 곤란

□ 주요 논의 사항

- 소송에 준하는 심사·심판 결정을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규정하여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입법조치로 개정안에 여·야 모두 이견 없이 합의

- 다만, 다른 과세기간의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의 대상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조문 수정

□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 주요 내용: 종전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신고·납부한 납세자만 경정청구가 가능하였으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받아 납부한 납세자의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허용
- 개정취지: 경정청구 사유 확대를 통한 납세자 권익 제고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표 34]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 분	현 행	정부안	개 정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정부안)	- 신고·납부한 납세자	- 신고·납부한 납세자 - 부과·고지받아 납부한 납세자	(정부안)

□ 세수효과

- (2023년) -630억원 (연평균) -227억원 (2023~2027년) -1,134억원

□ 주요 논의 사항

-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 받아 납부한 납세자에게도 경정청구권을 부여하여 납세자간 권리구제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불편을 개선하려는 입법조치로 개정안에 여·야 모두 이견 없이 합의

(3)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상향

□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상향

- 주요내용: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거짓 진술을 하거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2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 개정취지: 탈세방지를 위한 질문조사권 실효성 제고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직무집행 거부 등부터 적용

[표 35]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상향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 분	현 행	정부안	개 정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상향(정부안)	2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5천만원 이하

□ 세수효과

- (2023년) 2억원 (연평균) 2억원 (2023~2027년) 10억원

□ 주요 논의 사항

- 정부안의 과태료 5배 상향은 납세자 권익 측면에서 과도한 측면이 존재하므로 당초 1억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개정하는 것에 여·야 모두 합의

[표 36] 국세기본법 개정 내용

주요 내용	현행	개정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증여세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제26조의2)	(신설)	(상속·증여세 부과제척기간 특례) -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판결 등으로 재산의 실질 귀속자 확인 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제26조의2)	(신설)	(부과제척기간 특례) - 판결 등의 결과로 '재산의 실질 귀속자'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경정청구 사유 추가 및 대상 확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제45조의2)	(신설)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심사·심판 결정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 경정 또는 결정으로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과다납부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제45조의2)	(신설)	- 부과·고지받아 납부한 납세자
기한 및 기간의 합리화		
기한의 특례 규정에 대체공휴일, 일요일 명확화(제5조)	(신고 기한의 특례) - 공휴일의 다음날 - 토요일의 다음날	(신고 기한의 특례) -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다음날 - 토요일 및 일요일의 다음날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처분결과의 미통지시 심사·심판 청구기간 규정 신설(제61조)	(신설)	-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기간인 60일 이내 처분결과 미통지시 처분기간 90일 이내 심사·심판청구 가능
가산세 및 과태료 적용의 합리화		
상속세·증여세에 대한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 합리화(제47조의3)	(가산세 적용제외) - 상속세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 방법의 차이에 따른 경우	(가산세 적용 제외) -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 방법 차이에 따른 경우(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 제외)
부동산 소유권 이전증서에 대한 가산세 적용 제외(제47조의4)	(신설)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
금융투자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의 한시적 완화(제47조의5)	(단서 신설)	- 금융투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2025년 2026년 가산세율 50% 인하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상향(제88조)	- 직무집행 거부 과태료: 2천만원 이하	- 직무집행 거부 과태료: 5천만원 이하

주요 내용	현행	개정
조세심판 운영의 합리화		
조세심판관 제척·회피 기준 완화(제73조)	(조세심판관의 제척과 기피) - 심판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사용인(과거 사용인 포함)	(조세심판관의 제척과 기피) - 심판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사용인(청구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사용인 으로 한정)
조세심판을 거친 행정소송 결과 제출 의무 신설(제81조)	(신설)	- 심판청구를 거쳐 항고소송이 제 기된 사건의 결과를 조세심판원 장에게 제출
기타		
외국법인을 통한 탈세 방지를 위한 제2차 납세의무 보완 (제40조)	(신설)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추가) -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등 강제징수가 제한되는 경우 그 외국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부여
전자송달 신청의 자동철회 간주 규정 상향입법(제10조)	- 전자송달의 철회* * 시행령 규정	- 전자송달의 철회 규정 법률로 상향
재조사 결정 시 원처분 유지 근거 및 사유 명확화(제65조)	(신설)	(원처분 유지 사유) - 청구인의 주장이 재조사 과정에 서 확인한 사실과 달라 당초처분 의 유지가 불가피한 경우 - 청구인의 비협조로 취소·결정 등 을 위한 사실관계 증빙이 불가능 한 경우
이전가격 관련 자료의 국내보관 의무 신설 및 역외거래 장부 보존기간 연장(제85조의3)	- (신설) - 장부 보존기간: 5년	- 이전가격 관련 자료에 대한 보존 의무 신설 - 역외거래 장부 보존기간: 7년
임대인 변경후 공매·경매시 국세징수 규정 신설 및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 적용 예외 신설(제35조)	(신설)	- 확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 해세 배분예정액에 한하여 주택 임차보증금 먼저 배분 - 종전 소유자에게 각 권리보다 앞 서는 국세체납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그 한도 내에서 우선징수

2 소득세(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 분야)

가. 총괄

- 소득세 분야는 민생안정을 위해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노후 소득 대비를 위한 자산형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
 -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하였으며, 월세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상향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연금계좌의 납입한도 확대 및 퇴직소득세의 근속연수공제를 확대하고, 각종 비과세 및 과세특례 저축에 대한 적용기한을 연장
-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의 상향조정 및 총급여 1.2억원 초과 구간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 소득세 하위 2개 구간을 상향 조정(각각 1,200/4,600만원 → 1,400/5,000만원)
 - 총급여 1.2억원 초과 구간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1인당 50만원 → 20만원)
 -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 확대: 가구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 2.4억원 미만
 - 근로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은 단독/홀별이/맞벌이가구 각각 150/260/300만원에서 165/285/330만원으로 확대, 자녀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은 자녀 1인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확대
 -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12%*)에서 15%(17%*)로 인상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 신용카드 공제한도 통합, 문화비 공제항목에 영화관람료 추가, '22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공제 신설, '22년 하반기 대중교통비 사용분 공제율 한시상향(40 → 80%), 동 소득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 자산형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및 연금수령 시 과세방법 조정
 -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연령 및 소득과 무관하게 900만원(연금저축

- 600만원)으로 상향하고,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시 15% 분리과세 허용
- 퇴직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속연수공제액을 확대
- 그 외 과세특례 저축에 대한 적용기한을 연장
 -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에 대한 비과세,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등에 대한 적용기한 연장 등
- 최근 주식시장 및 가상시장 관련 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및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시기 2년 유예 등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
 -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종목당 10억원 이상) 현행 유지
- 그 외 외국인 및 내국인 복귀 우수인력에 대한 소득세 특례 확대, 벤처기업 등 투자 관련 세제지원의 확대
 - (외국인 및 내국인 복귀 우수인력 소득세 특례 확대)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특례 적용 기한 연장, 내국인 복귀 우수인력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벤처기업 등 투자관련 세제지원 확대) 벤처기업 등 직접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 연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특례의 한도액 확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분할납부 대상 확대 등

나. 주요 논의 사항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2008년 이후 15년 동안 고정되어 있던 8,800만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공제액 축소를 위해 총급여 1.2억원 초과 구간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축소
 -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 상향 조정: 1,200 → 1,400만원, 4,600 → 5,000만원
 - 총급여 1.2억원 초과 구간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1인당 50 → 20만원
 - 개정취지: 물가상승 등에 따른 소득세 부담 완화
 - 시행일: 2023.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표 37]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분	현 행		강대식 의원안		고용진 의원안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	과세표준	세율 (%)	과세표준	세율 (%)	과세표준	세율 (%)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6	1,500만원 이하	5
	1,200~4,600만원	15	1,400~5,400만원	15	1,500~5,000만원	13
	4,600~8,800만원	24	5,400만원~1억원	24	5,000~9,500만원	23
	8,800만원~1.5억원	35	1~1.5억원	35	9,500만원~1.5억원	35
	1.5~3억원	38	1.5~3억원	38	1.5~3억원	38
	3~5억원	40	3~5억원	40	3~5억원	40
	5~10억원	42	5~10억원	42	5~10억원	42
	10억원 초과	45	10억원 초과	45	10억원 초과	45
구분	김두관 의원안		이인영 의원안		노웅래 의원안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	과세표준	세율 (%)	과세표준	세율 (%)	과세표준	세율 (%)
	2,500만원 이하	6	2,400만원 이하	6	1,500만원 이하	6
	2,500~6,000만원	15	2,400~6,000만원	15	1,500~6,000만원	15
	6,000만원~1억원	24	6,000~8,800만원	24	6,000만원~1억원	24
	1~1.5억원	35	8,800만원~1.5억원	35	1~1.5억원	35
	1.5~3억원	38	1.5~3억원	38	1.5~3억원	38
	3~5억원	40	3~5억원	40	3~5억원	40
	5~10억원	42	5~10억원	42	5~10억원	42
	10~30억원	45	10억원 초과	45	10억원 초과	45
	30억원 초과	50				
				*물가연동제 도입		
구분	정부안		개 정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	과세표준	세율 (%)	과세표준	세율 (%)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6		
	1,400~5,000만원	15	1,400~5,000만원	15		
	5,000~8,800만원	24	5,000~8,800만원	24		
	8,800만원~1.5억원	35	8,800만원~1.5억원	35		
	1.5~3억원	38	1.5~3억원	38		
	3~5억원	40	3~5억원	40		
	5~10억원	42	5~10억원	42		
10억원 초과	45	10억원 초과	45			

□ 최근 개정 연혁

- 2007년 개정: 과세표준 최저구간(1,000만원 → 1,200만원), 중간구간(4,000만원 → 4,600만원), 최고구간(8,000만원 → 8,800만원)을 상향
 - 동 개정은 2008년부터 시행
- 2008년 이후: 과세표준 기준금액 변경 없이 최고세율 구간만 신설함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의 개수가 2008년 4개에서 2021년 8개로 상승

[표 38]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변화추이: 2008~2022년

(단위: 만원, %)

과세표준 구간 (과세표준 구간 개수)	2008 (4개)	2009 (4개)	2010 (4개)	2012 (5개)	2014 (5개)	2017 (6개)	2018 (7개)	2021~ (8개)
~ 1,200	8	6	6	6	6	6	6	6
1,200 ~ 4,600	17	16	15	15	15	15	15	15
4,600 ~ 8,800	26	25	24	24	24	24	24	24
8,800 ~ 15,000	35	35	35	35	35	35	35	35
15,000 ~ 30,000					38	38	38	38
30,000 ~ 50,000				38			40	40
50,000 ~ 100,000						40	42	42
100,000 ~								45

주: 시행연도 기준

□ 세수효과

- (2023년) -1조 4,713억원 (연평균) -2조 6,515억원 (2023~2027년) -13조 2,573억원

□ 주요 논의 사항

- 물가 상승에 따른 개인의 소득세 부담 증가 가능성을 고려해 과세표준 구간의 상향이 인정되나, 선진국에 비해 GDP 대비 소득세 부담이 작고,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해, 과표 기준금액 상승률이 가장 낮은 정부안대로 통과
- 향후 재정 소요 등을 고려할 때 감세에 대한 대안이 부재한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동시에, 선진국 대비 소득세 부담이 작더라도 빈부의 격차, 양극화 등과 같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 소득세 개편시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신용카드 공제한도 통합, 신규공제 추가 및 일몰연장 등
 - 신용카드 공제한도 통합, 영화관람료 공제 추가, 대중교통비 사용분 공제율 한시 상향, 적용기한 3년 연장, 2022년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
- 개정취지: 제도 단순화 및 영화관람료·대중교통비 부담 경감
- 시행일: (공제한도)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대중교통 사용분) 2023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영화관람료 추가공제)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표 39]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분	현행	전용기 의원안	류성걸 의원안																								
적용기한	2022.12.31.	2022.12.31.	2022.12.31.																								
소득 공제율	- 대중교통: 40% - 도서·공연 등: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 대중교통: 90% - 도서·공연 등 공제항목에 영화관람료* 추가 * '22년 소득분부터 적용	- '22.7.1.~'22.12.31. 대중교통: 80% - 도서·공연 등: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기본공제 한도	<table border="1"> <tr> <th>총급여액</th> <th>공제한도</th> </tr> <tr> <td>7천만원 이하</td> <td>Min(총급여 × 20%, 300만원)</td> </tr> <tr> <td>1.2억원 이하</td> <td>250만원</td> </tr> <tr> <td>1.2억원 초과</td> <td>200만원</td> </tr> </table>	총급여액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Min(총급여 × 20%, 300만원)	1.2억원 이하	25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	<table border="1"> <tr> <th>총급여액</th> <th>공제한도</th> </tr> <tr> <td>7천만원 이하</td> <td>Min(총급여 × 20%, 300만원)</td> </tr> <tr> <td>1.2억원 이하</td> <td>250만원</td> </tr> <tr> <td>1.2억원 초과</td> <td>200만원</td> </tr> </table>	총급여액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Min(총급여 × 20%, 300만원)	1.2억원 이하	25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	<table border="1"> <tr> <th>총급여액</th> <th>공제한도</th> </tr> <tr> <td>7천만원 이하</td> <td>Min(총급여 × 20%, 350만원)</td> </tr> <tr> <td>1.2억원 이하</td> <td>300만원</td> </tr> <tr> <td>1.2억원 초과</td> <td>250만원</td> </tr> </table>	총급여액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Min(총급여 × 20%, 350만원)	1.2억원 이하	300만원	1.2억원 초과	250만원
	총급여액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Min(총급여 × 20%, 300만원)																									
	1.2억원 이하	25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																										
총급여액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Min(총급여 × 20%, 300만원)																										
1.2억원 이하	25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																										
총급여액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Min(총급여 × 20%, 350만원)																										
1.2억원 이하	300만원																										
1.2억원 초과	250만원																										
추가공제 한도	- 전통시장: 100만원 - 대중교통: 100만원 - 도서·공연 등: 100만원	- 전통시장: 100만원 - 대중교통: 100만원 - 도서·공연 등: 100만원	- 전통시장: 100만원 - 대중교통: 100만원 - 도서·공연 등: 100만원																								
구분	배현진 의원안	정부안	개정																								
적용기한	2023.12.31.	2025.12.31.	2025.12.31.																								
소득 공제율	- 대중교통: 40% - 도서·공연 등: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 '22.7.1.~'22.12.31. 대중교통: 80% - 도서·공연 등 공제항목에 영화관람료* 추가 * '23.7.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 '22.7.1.~'22.12.31. 대중교통: 80% - 도서·공연 등 공제항목에 영화관람료* 추가 * '23.7.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구분	배현진 의원안		정부안		개정	
기본공제 한도	총급여액	공제한도	총급여액	공제한도	총급여액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Min(총급여× 20%,300만원)	7천만원 이하	Min(총급여× 20%,300만원)	7천만원 이하	Min(총급여× 20%,300만원)
	1.2억원 이하 1.2억원 초과	250만원 2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
추가공제 한도	- 전통시장: 100만원 - 대중교통: 100만원 - 도서·공연 등: 100만원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 200만원)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 200만원)	
추가공제 신설	(신설)		- 2022년 한시로 전년대비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액의 105% 초과분에 대해 각각 10% 소득공제 적용(100만원 공제한도 부여)		- 2022년 한시로 전년대비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액의 105% 초과분에 대해 각각 20% 소득공제 적용(100만원 공제한도 부여)	

□ 최근 개정 연혁

- 1999년 도입 이후 약 20년 동안 9회 일몰 연장
- 2011년 전통시장 활성화 목적으로 전통시장 사용액의 30% 추가공제 신설
- 2013년 대중교통 이용유도 목적으로 대중교통 사용액의 30% 추가공제 신설
- 2014년 소비심리 개선을 목적으로 전년대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10%p 추가(16.6월 사용분까지만 적용)
- 2017년 문화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도서·공연 사용액의 30% 추가공제 신설
- 2018년 문화생활 지원 목적의 공제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 2019년 문화생활 지원 목적 공제대상에 신문구독료 추가
- 2020~2021년 코로나19 관련 조세지원 대책에 따라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 상향
 - 2020년 3월 사용액에 대해 항목별 공제율(15~40%) 두 배로 상향, 4~7월 사용액에 대해 항목별 소득공제율 일괄 80%를 적용하며, 소득공제 한도는 기존 200~300만원보다 30만원 상향한 230~330만원 적용
 - 2021년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5% 초과분에 대해 10%의 소득공제 추가 적용하고 100만원의 추가공제한도 부여

- 세수효과
 - (2023년) -1,337억원 (연평균) -22,137억원 (2023~2027년) -88,548억원
- 주요 논의 사항
 -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 단순화는 이미 제도의 도입 취지를 달성하였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영화관람 증가보다는 특정 업체에만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소비활성화 및 다수의 근로자들이 받고 있는 세제혜택임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여·야 모두 정부안에 동의하며 합의
 - 다만, 2022년 소비(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액)증가분 대한 추가공제 신설안의 경우 정부안보다 공제율을 상향(10%→20%)하여 합의

(3)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
 - 개정취지: 금융시장의 활성화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표 40]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현 행	정부안	개 정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시행일: 2025년 1월 1일

- 최근 개정 연혁
 - 2020년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
 - 단, 2023년 1월 1일로 시행 예정

[표 41]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체계

	내 용
과세방법	- 분류과세
과세대상	- 금융투자소득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포괄적으로 과세 · 주식등, 채권등, 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양도로 발생하는 이익,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등
과세표준	- 금융투자소득액 - 기본공제 - 금융투자 이월결손금(이월공제 5년 허용)
손익통산	- 금융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과 손실 간 상계 허용
기본공제	- (국내 상장주식 등) 5천만원 - (기타: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 250만원
세율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 25%

□ 세수효과

- (2023년) 없음* (연평균) 13,443억원 (2025~2027년) 40,328억원
* 시행시기 감안 시 2025년부터 세수효과 발생

□ 주요 논의 사항

- 정부는 금융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고 제도 도입에 앞서 과세제도 및 원천징수 시스템 등을 보완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함
- 정부안은 해당 기간 기존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보유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로 축소하고, 증권거래세율을 0.03%p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
- 심사 과정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찬성의 근거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의 영향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투자심리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세 완화의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기
- 이와 달리 금융투자소득세는 손익통산 및 결손금의 이월공제 등을 허용하는 제도로, 금융 과세 제도의 합리화를 목적으로 도입이 이루어진 정책인 만큼 과거 정책과의 일관성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 최근 악화된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하여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정부안대로 통과

BOX.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기준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대신,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요건 중 보유액 및 지분율 기준을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대주주 요건 산정 시 합산대상인 기타주주 범위는 축소(시행령)¹⁶⁾

[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기준 조정안 및 개정 내용

현 행	정부안	개 정
과세대상(대주주) 요건: - 보유액 10억원 또는 지분율 1/2/4% 미만 - 본인 및 기타주주 합산 (최대주주) 6촌혈족, 4촌인척 등 (그 외)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	과세대상(고액주주) 요건: - 보유액 100억원 미만 - 본인	과세대상(대주주) 요건: - 보유액 10억원 또는 지분율 1/2/4% 미만 - 본인, 기타주주 범위는 축소 (최대주주) 4촌혈족, 3촌인척 등 혼외출생자 생부·모 (그 외) 삭제

□ 주요 논의 사항

- 정부안(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및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축소)에 대해,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을 강화해 온 이전 정책과의 일관성 문제 등을 고려해 대주주 보유액 및 지분율 요건은 개정하지 않고, 기타주주 범위를 일부 축소하는 것으로 개정

1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4)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지급액 인상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근로장려금의 재산요건 완화 및 지급액 인상
- 개정취지: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강화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표 42]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지급액 인상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 분		현 행	정일영 의원안	배준영 의원안
재산 요건		2억원 미만 * 1.4억원 이상인 경우 50% 지급	2.8억원 미만 * 1.4억원 이상인 경우 50% 지급	2억원 미만 * 1.4억원 이상인 경우 50% 지급
소득 요건	단독	2,200만원	2,200만원	2,400만원
	홀벌이	3,200만원	3,200만원	3,600만원
	맞벌이	3,800만원	3,800만원	4,320만원
최대 지급액	단독	150만원	150만원	165만원
	홀벌이	260만원	260만원	312만원
	맞벌이	300만원	300만원	330만원
구 분		정부안	개 정	
재산 요건		2.4억원 미만 * 1.7억원 이상인 경우 50% 지급	2.4억원 미만 * 1.7억원 이상인 경우 50% 지급	
소득 요건	단독	2,200만원	2,200만원	
	홀벌이	3,200만원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	3,800만원	
최대 지급액	단독	165만원	165만원	
	홀벌이	285만원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	330만원	

□ 최근 개정 연혁

- 2018년 신청자격 요건 완화, 지급액 인상, 지급시기 변경 등
 - 단독가구 연령 제한(30세 이상) 폐지
 - 소득요건(단독/홀벌이/맞벌이): 1,300/2,100/2,500만원 → 2,000/3,000/3,600만원
 - 재산요건: 1.4억원 미만 → 2억원 미만
 - 최대지급액(단독/홀벌이/맞벌이): 85/200/250만원 → 150/260/300만원
 - 지급시기 변경: 다음연도 1회 → 근로소득만 있는 자 반기별 2회

- 2019년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인상, 홀별이가구 범위 확대
 - 최소지급액: 점증 및 점감구간 3만원 → 점증구간 10만원, 점감구간 3만원
 - 홀별이 가구 판정 요건: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는 가구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2020년 중증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족에 대한 근로장려금 확대 등
 - 홀별이 가구 판정 요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 요건 미적용
- 2021년 근로장려금 소득기준금액 인상
 - 소득요건(단독/홀별이/맞벌이): 2,000/3,000/3,600만원 → 2,200/3,200/3,800만원

□ 세수효과

- (2023년) -8,565억원 (연평균) -8,018억원 (2023~2027년) -40,090억원

□ 주요 논의 사항

- 성과평가가 없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속 지원을 위해 물가상승률 및 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지급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정부안대로 통과
- 우리나라의 소득기준금액이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이미 지급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해온 점 등을 감안하여 전체 복지제도 규모와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기됨

(5) 연금계좌 세액공제 확대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연령 및 소득과 무관하게 9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으로 상향하고,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시 15% 분리과세 선택 허용
 - 종전에는 50세 이상으로서 총급여 1.2억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자에 대하여만 납입한도 900만원(600만원)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확대
- 개정취지: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표 43] 연금계좌세액공제 확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현 행			고용진 의원안			
납입 한도	총급여액 (종합소득 금액)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공제율	총급여액 (종합소득 금액)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공제율
		50세 미만	5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5,500만원 (4,000만원) 이하	700만원 (400만원)	900만원 ¹⁾ (600만원)	15%	5,500만원 (4,000만원) 이하	900만원 (600만원)		15%
	1.2억원 (1억원) 이하							
1.2억원 (1억원) 초과								
주: 1) 2022.12.31.까지 적용								
과세 방법	(1,200만원 이하) 저율·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1,200만원 초과) 종합과세				(1,200만원 이하) 저율·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1,200만원 초과) 종합과세			
		정부안			개 정			
납입 한도	총급여액 (종합소득 금액)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공제율	총급여액 (종합소득 금액)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공제율
		50세 미만	5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5,500만원 (4,500만원) 이하	900만원 (600만원)		15%	5,500만원 (4,500만원) 이하	900만원 (600만원)		15%
	5,500만원 (4,500만원) 초과							
과세 방법	(1,200만원 이하) 저율·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1,200만원 초과) 15%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1,200만원 이하) 저율·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1,200만원 초과) 15%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 최근 개정 연혁

[표 44] 연금계좌세액공제 개정현황

		2000	2006	2010	2014	2015	2017	2020
		소득공제			세액공제			
공제 한도	연금저축 [퇴직연금 합산세]	240만원	300만원	400만원	400만원	400만원 [700만원]	400만원 (총급여액 1.2억원 초과 300만원) [700만원]	총 급여액 1.2억원 이하 50세 이상: 600만원 [900만원]
공제율		소득공제			12%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15%			

주: 개정연도 기준

□ 세수효과

- (2023년) 없음* (연평균) -1,556억원 (2024~2027년) -6,224억원
- * 소득세 신고·납부기간 감안 시 2024년부터 세수효과 발생

□ 주요 논의 사항

- 납입한도 확대와 관련하여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사적연금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정부안의 취지를 수용하여 여·야 합의 후, 정부안대로 통과
- 다만,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자에 대한 분리과세 허용과 관련하여 고소득자에게 세부담 감소효과가 집중된다는 이견 존재

(6) 외국인 및 내국인 복귀 우수인력에 대한 소득세 특례 확대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5년 → 10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확대(5년 → 20년)
 - 내국인 복귀 우수인력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개정취지: 내국인 및 외국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 확대를 통한 경쟁력 제고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 단, 기존에 특례 또는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적용

[표 45] 내국인 및 외국인 우수인력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분	현행	양향자의원안	배준영의원안	정부안	개정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제18조)	(적용기간 및 감면율) 5년, 50% (적용기한) 2023.12.31. (소재·부품·장비 관련) 2022.12.31.)	(적용기간 및 감면율) 10년, 50% (적용기한) 2023.12.31. (소재·부품·장비 관련) 2022.12.31.)	(적용기간 및 감면율) 10년, 50% (적용기한) 2025.12.31.	(적용기간 및 감면율) 10년, 50% (적용기한) 2023.12.31. (소재·부품·장비 관련) 2022.12.31.)	(적용기간 및 감면율) 10년, 50% (적용기한) 2023.12.31. (소재·부품·장비 관련) 2022.12.31.)
구분	현행	정부안		개정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폐지(조특법 제18조의2)	(적용기간) 국내 근무시작일로부터 5년 (특례내용) 19% 단일세율 적용 (적용기한) 2023.12.31.	(적용기간) 삭제 (현재 특례적용 중이거나 이전에 특례 적용받은 경우도 해당) (특례내용) 19% 단일세율 적용 (적용기한) 2023.12.31.		(적용기간) 국내 근무시작일로부터 20년 (특례내용) 19% 단일세율 적용 (적용기한) 2023.12.31.	
구분	현행	김용판의원안	정부안	개정	
내국인 복귀 우수인력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18조의3)	(감면기간 및 감면율) 5년간 50% (적용기한) 2022.12.31.	(감면기간 및 감면율) 5년간 50% (적용기한) 2024.12.31.	(감면기간 및 감면율) 10년간 50% (적용기한) 2025.12.31.	(감면기간 및 감면율) 10년간 50% (적용기한) 2025.12.31.	

주: 개정연도 기준, '조특법'은 조세특례제한법을 의미

□ 최근 개정 연혁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감면율: (~2009년) 100%, (2010년~) 50%, (2018년~) 50%(단, 소재·부품·장비 분야 취업자는 70%, 2019년부터 적용)
- 대상 및 내용: (2015년~) 감면대상을 외국인투자기업 R&D센터에 근무하는 연구원 등으로 축소¹⁷⁾, (2021년~) 경력요건 강화 및 취업기간 확대¹⁸⁾
- 적용기간: (~2009년) 5년, (2010년~) 2년, (2018년~) 5년(소재·부품·장비 분

17) (종전) 특정연구기관·정부출연기관·비영리법인 연구기관의 연구원, 산업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해당 분야 학사 중 3년 이상 종사자,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기술제공자 (2015년 개정) 외국인투자기업 R&D센터에 근무하는 연구원(신설),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기술제공자

18) (기존 요건) 외국인투자기업 R&D센터에 근무하는 연구원 (개정 요건) ① 인력요건 강화: 이공계 등 학사 이상 학위+외국 과학기술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박사 학위 소지자는 2년)한 연구원 ② 취업기관 확대: 국내기업 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야 취업자는 대해서는 적용기간 3년, 2019년부터 적용)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특례
 - 세율: (2003년~) 17%, (2008년~) 15%, (2013년~) 17%, (2016년~) 19%
- 내국인 복귀 우수인력에 대한 소득세 감면
 - 동 제도는 2019.12.31. 신설된 후 별도의 개정 없었음
 - 2022.12.31.까지 요건을 만족하는 내국인에 대해 국내 취업일로부터 5년간 근로 소득세의 50%를 감면

□ 세수효과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 (2023년) 없음* (연평균) -13억원 (2024~2027년) -64억원
- 내국인 복귀 우수인력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 (2023년) 없음* (연평균) -76억원 (2024~2027년) -379억원
 - * 소득세 신고·납부기간 감안 시 2024년부터 세수효과 발생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특례
 - 추정근란(소득세 감면 연장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 중 근무기간이 5년을 초과 하는 인원의 비중과 세액 규모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 곤란)

□ 주요 논의 사항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경우, 해외 주요국의 감면기간(최장 7년)과 내·외국인 조세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개정안(10년으로 확대)의 감면기간이 길다는 의견 제기되었으나 우수인력 유치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정부안대로 통과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특례는 적용기한을 현행 5년에서 확대해 영구화할 예정이었던 정부안을 20년으로 축소하여 통과
 - 동 제도의 유의미하지 않은 인력유입효과, 내·외국인간 조세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의 영구화는 과도한 지원이라는 의견 반영
- 내국인 복귀 우수인력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조세제도만으로 인력유입효과가 제한적임을 고려하여 우수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국내로의 인력 유인 제고라는 취지를 인정하여 정부안대로 통과

[표 46] 소득세 개정 내용

주요 내용	현행	개정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관련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상향 조정 (소득세법 제55조)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 <td>1,200만원 이하</td> <td>6</td> </tr> <tr> <td>1,200~4,600만원</td> <td>15</td> </tr> <tr> <td>4,600~8,800만원</td> <td>24</td> </tr> <tr> <td>8,800만원~1.5억원</td> <td>35</td> </tr> <tr> <td>1.5~3억원</td> <td>38</td> </tr> <tr> <td>3~5억원</td> <td>40</td> </tr> <tr> <td>5~10억원</td> <td>42</td> </tr> <tr> <td>10억원 초과</td> <td>45</td> </tr> </tbody> </table>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만원~1.5억원	35	1.5~3억원	38	3~5억원	40	5~10억원	42	10억원 초과	45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 <td>1,400만원 이하</td> <td>6</td> </tr> <tr> <td>1,400~5,000만원</td> <td>15</td> </tr> <tr> <td>5,000~8,800만원</td> <td>24</td> </tr> <tr> <td>8,800만원~1.5억원</td> <td>35</td> </tr> <tr> <td>1.5~3억원</td> <td>38</td> </tr> <tr> <td>3~5억원</td> <td>40</td> </tr> <tr> <td>5~10억원</td> <td>42</td> </tr> <tr> <td>10억원 초과</td> <td>45</td> </tr> </tbody> </table>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5,000만원	15	5,000~8,800만원	24	8,800만원~1.5억원	35	1.5~3억원	38	3~5억원	40	5~10억원	42	10억원 초과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만원~1.5억원	35																																				
1.5~3억원	38																																				
3~5억원	40																																				
5~10억원	42																																				
10억원 초과	45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5,000만원	15																																				
5,000~8,800만원	24																																				
8,800만원~1.5억원	35																																				
1.5~3억원	38																																				
3~5억원	40																																				
5~10억원	42																																				
10억원 초과	45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소득세법 제59조)	(공제한도) - 총급여 3,300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 3,300~7,000만원: 74~66만원* * Max{74만원 -(3,300만원초과 급여액 × 0.8%), 66만원} - 총급여 7,000만원 초과: 66~50만원* * Max{66만원 -(7,000만원초과 급여액 × 50%), 50만원}	(공제한도) - (현행) - 총급여 1.2억원 초과* * Max{50만원 -(1.2억원초과 급여액 × 50%), 20만원}																																			
서민·소상공인 지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상향 (소득세법 제30조)	(감면한도) - 150만원	(감면한도) - 200만원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한도 상향 (소득세법 제52조제4항)	- 대상: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중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공제한도: 300만원 - 공제율: 40%	- 대상: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중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공제한도: 400만원 - 공제율: 40%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 확대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	(공제대상) -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초중고 및 대학교 등 각급 학교, 평생교육시설, 국외교육기관 및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의 어린이집/학원 및 체육시설	(공제대상) - (현행)																																			

주요 내용	현행	개정																
	등에 지급한 교육비	-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를 공제대상에 추가																
기부금 특별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공제율) - 1천만원 이하분: 15% (단, 2021년 기부분은 20%) - 1천만원 초과분: 30% (단, 2021년 기부분은 20%)	(공제율) - 1천만원 이하분: 15% (단, 2022년 기부분은 20%) - 1천만원 초과분: 30% (단, 2022년 기부분은 35%)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조특법 제95조의2)	(공제율) - 월세액의 10%(12%*) * 총급여액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공제율) - 월세액의 15% (17%*) * 총급여액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기한 연장 (조특법 제96조)	(적용기한) 2022.12.31.	(적용기한) 2025.12.31.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연장 (조특법 제96조의3)	(적용기한) 2022.12.31.	(적용기한) 2023.12.31.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완화 (조특법 제100조의3)	(재산 요건) - 가구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 1.4억원 이상 시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 지급	(재산 요건) - 가구 재산 합계액 2.4억원 미만 * 1.7억원 이상 시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 (조특법 제100조의5 제1항)	(최대지급액) <table border="1"> <thead> <tr> <th>가구</th> <th>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단독</td> <td>150만원</td> </tr> <tr> <td>홀벌이</td> <td>260만원</td> </tr> <tr> <td>맞벌이</td> <td>300만원</td> </tr> </tbody> </table>	가구	지급액	단독	150만원	홀벌이	260만원	맞벌이	300만원	(최대지급액) <table border="1"> <thead> <tr> <th>가구</th> <th>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단독</td> <td>165만원</td> </tr> <tr> <td>홀벌이</td> <td>285만원</td> </tr> <tr> <td>맞벌이</td> <td>330만원</td> </tr> </tbody> </table>	가구	지급액	단독	165만원	홀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
가구	지급액																	
단독	150만원																	
홀벌이	260만원																	
맞벌이	300만원																	
가구	지급액																	
단독	165만원																	
홀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																	
자녀장려금의 지급액 상향 및 재산요건 완화 (조특법 제100조의29)	(재산 요건) - 가구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 1.4억원 이상 시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 지급 (지급액) -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	(재산 요건) - 가구 재산 합계액 2.4억원 미만 * 1.7억원 이상 시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 지급 (지급액) -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 추가 (조특법 제126조의2)	(공제대상)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 관 사용분	(공제대상) - (현행) - 영화상영관 사용분 (2023.7.1.부터 적용)																

주요 내용	현행	개정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대중교통 이용요금 소득공제율 상향 (조특법 제126조의2)	(공제율) - 대중교통 사용분: 40%	(공제율) - 2022.7.1. ~ 12.31. 대중교통 사용분: 8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단순화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126조의2)	(기본공제 한도) <table border="1"> <thead> <tr> <th>총급여액</th> <th>공제한도</th> </tr> </thead> <tbody> <tr> <td>7천만원 이하</td> <td>Min(총급여 × 20%, 300만원)</td> </tr> <tr> <td>1.2억원 이하</td> <td>250만원</td> </tr> <tr> <td>1.2억원 초과</td> <td>200만원</td> </tr> </tbody> </table> (추가공제 한도) -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 (도서신문공연미술관박물관 사용분에 대해 각각 100만원 적용 (적용기한) - 2022.12.31.	총급여액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Min(총급여 × 20%, 300만원)	1.2억원 이하	25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	(기본공제 한도) <table border="1"> <thead> <tr> <th>총급여액</th> <th>공제한도</th> </tr> </thead> <tbody> <tr> <td>7천만원 이하</td> <td>Min(총급여 × 20%, 300만원)</td> </tr> <tr> <td>7천만원 초과</td> <td>250만원</td> </tr> </tbody> </table> (추가공제 한도) -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 (도서신문공연미술관박물관 영화상영관) 사용분 합산액에 대해 300만원 적용(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시 200만원 적용) (적용기한) - 2025.12.31.	총급여액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Min(총급여 × 20%, 3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
총급여액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Min(총급여 × 20%, 300만원)															
1.2억원 이하	25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															
총급여액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Min(총급여 × 20%, 3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															
2022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공제 (조특법 제126조의2)	(신설)	-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및 전통시장 사용분 중 2021년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100만원 추가한도)														

자산형성 지원

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 확대(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	공제액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5년 이하	100만원 × 근속연수
	6~10년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 수-5년)	6~10년	150만원 + 200만원 × (근속연 수-5년)
	11~20년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 수-10년)	11~20년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 수-10년)
	20년 초과	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 수-20년)	20년 초과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 수-20년)

주요 내용	현행	개정																												
연금계좌세액공제 납입한도 확대 등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64조의4)	<p>(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한도)</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총급여 (종합소득 금액)</th> <th colspan="2">연금저축 납입한도</th> <th rowspan="2">세액 공제 율</th> </tr> <tr> <th>50세 미만</th> <th>50세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5,500만원 이하(4,000 만원)</td> <td>700 만원 (400 만원)</td> <td>900 만원 (600 만원)</td> <td>15%</td> </tr> <tr> <td>1.2억원 이하(1억원)</td> <td colspan="2">700만원 (300만원)</td> <td>12%</td> </tr> </tbody> </table>	총급여 (종합소득 금액)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 공제 율	50세 미만	50세 이상	5,500만원 이하(4,000 만원)	700 만원 (400 만원)	900 만원 (600 만원)	15%	1.2억원 이하(1억원)	700만원 (300만원)		12%	<p>(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한도)</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총급여 (종합소득 금액)</th> <th colspan="2">연금저축 납입한도</th> <th rowspan="2">세액 공제 율</th> </tr> <tr> <th>50세 미만</th> <th>50세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5,500만원 이하(4,500 만원)</td> <td colspan="2">900만원 (600만원)</td> <td>15%</td> </tr> <tr> <td>5,500만원 초과(4,500 만원)</td> <td colspan="2"></td> <td>12%</td> </tr> </tbody> </table>	총급여 (종합소득 금액)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 공제 율	50세 미만	50세 이상	5,500만원 이하(4,500 만원)	900만원 (600만원)		15%	5,500만원 초과(4,500 만원)			12%
	총급여 (종합소득 금액)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 공제 율																								
50세 미만		50세 이상																												
5,500만원 이하(4,000 만원)	700 만원 (400 만원)	900 만원 (600 만원)	15%																											
1.2억원 이하(1억원)	700만원 (300만원)		12%																											
총급여 (종합소득 금액)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 공제 율																											
	50세 미만	50세 이상																												
5,500만원 이하(4,500 만원)	900만원 (600만원)		15%																											
5,500만원 초과(4,500 만원)			12%																											
	<p>(연금수령시 과세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00만원 이하: 저율·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 1,200만원 초과: 종합과세 	<p>(연금수령시 과세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00만원 이하: 저율·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 1,200만원 초과: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87조제2항)	(적용기한) 2022.12.31.	(적용기한) 2025.12.3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소득요건 정비 (조특법 제87조제3항)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자																												
농어기목돈마련저축 비과세의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87조의2)	(적용기한) 2022.12.31.	(적용기한) 2025.12.31.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88조의2)	(적용기한) 2022.12.31.	(적용기한) 2025.12.31.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기한 연장 (조특법 제88조의5)	(적용기한) 2022.12.31.	(적용기한) 2025.12.31.																												
조합 등 예탁금 등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89조의3)	(적용기한) 2022.12.31.	(적용기한) 2025.12.31.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및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정비 (조특법 제91조의20,21)	(신설)	(소득 요건) -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 제외																												

주요 내용	현행	개정
청년도약계좌의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 (소득세법 제91조의22)	(신설)	(가입대상 및 요건) - 가입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 총급여액 7,500만원(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가입시한: 2025.12.31.까지 - 납입한도: 연 840만원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 (소득세법 법률 제17757호 부칙 제1조 등)	(과세 시행일) 2023.1.1.	(과세 시행일) 2025.1.1.
적격집합투자기구의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일원화 (소득세법 법률 제17757호 제17조)	(분배금의 소득 구분) - 원천별로 금융투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구분	(분배금의 소득 구분) - 배당소득으로 일원화 - 시행일: 2025.1.1.
금융투자소득세 양도의 정의 추가 (소득세법 법률 제17757호 제87조의2)	(양도의 정의) - 자산의 매도, 교환 등을 통해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 - 부담부증여시 수증자 부담 채무액	(양도의 정의) - (현행) - 채권 등의 상황,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지분증권 소멸 - 시행일: 2025.1.1.
5천만원 기본공제 대상 금융투자소득 추가 (소득세법 제87조의18)	(기본공제 대상) - 국내 상장주식의 장내 양도 - 중소·중견기업 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K-OTC 시장) -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에 발생 소득	(기본공제 대상) - 추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이와 관련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상장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 시행일: 2025.1.1.
금융투자소득세 예정 신고 기한 일원화 (소득세법 법률 제17757호 제87조의21)	(예정신고 기간) -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 받지 않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은 소득(원천징수 제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예정신고 기간) - 지급일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다음 달(2월, 8월) 말일 - 시행일: 2025.1.1.

주요 내용	현행	개정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신고·납부기한 일원화 등 (소득세법 법률 제17757호 제128조, 제148조의2)	(신고·납부기한) - 반기 종료일(일반) 또는 계좌 해지일(중도해지)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신고·납부기한) - 반기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원천징수 시점 명확화) - 원천징수기간 종료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기타주주 범위 축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	(기타주주 범위) - 최대주주: 6촌혈족, 4촌인척 등 - 그 외: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	(기타주주 범위) - 최대주주: 4촌혈족, 3촌인척 등 - 그 외: 적용하지 않음
투자 활성화		
비거주자의 국제 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소득세법 제119조의3 및 법인세법 제93조의3)	(신설)	- 비거주자의 국제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벤처기업 등 직접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16조)	(적용기한) 2022.12.31.	(적용기한) 2025.12.3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특례 한도액 확대 (조특법 제16조의2)	(비과세 한도) - 연간 5천만원	(비과세 한도) - 연간 2억원, 누적한도 5억원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분할납부 대상 확대(조특법 제16조의3)	(적용대상) -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	(적용대상) - (현행) -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 추가
벤처기업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요건 및 사후관리 명확화(조특법 제16조의4)	(적용대상) -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 (적용요건) - 3년간 행사금액 5억원 이하 (특례배제 사유) - 행사 후 1년 경과 전에 처분, 행사금액 5억원 초과	(적용대상) - 행사 시점에 벤처기업 아닌 경우도 포함 (적용요건) - (신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은 전용계좌로만 거래 가능 (특례배제 사유) - (현행) - 전용계좌 요건 미충족시 과세

주요 내용	현행	개정
공모 인프라펀드 투자자 저울 분리과세 특례 (조특법 제27조)	(적용기한) 2022.12.31.	(적용기한) 2025.12.31.
과세체계 합리화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식 합리화 (소득세법 제57조의2 신설)	(신설)	- 펀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 기준을 기존의 세전 가격에서 세후 가격으로 하고, 이에 따른 공제한도 등 규정(소득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인상(소득세법 제59조의2)	(적용대상 자녀 연령) - 7세 이상	(적용대상 자녀 연령) - 8세 이상
비실명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상 (소득세법 제129조제2항제2호)	(원천징수세율) - 42%	(원천징수세율) - 45%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구축		
간이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정비 및 특례 (소득세법 제81조의11제1항제1호, 제3항, 제4항)	(미제출 가산세의 지연제출 인정기간) - 기한 후 3개월 이내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한시적 특례 신설)	(미제출 가산세의 지연제출 인정기간) - 기한 후 1개월 이내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한시적 특례 신설) - 상용근로소득: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미제출 가산세 면제 ('24.1.1.~'24.12.31. 지급분*) *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24.1.1.~'25.12.31. 지급분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시 미제출 가산세 면제 ('24.1.1.~'24.12.31.)

주요 내용	현행	개정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간 가산세 중복부과 배제 (소득세법 제81조의11제5항)	(신설)	(지급명세서 가산세 부과시 간이지급명세서와의 중복 부과 배제)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2023.1.1. 이후 제출분부터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2024.1.1. 이후 제출분부터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기한 단축(소득세법 제143조)	-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분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의제 신설 (소득세법 제164조제7항)	(신설)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된 부분에 대해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것으로 봄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주기 관련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출대상소득 및 주기) - 상용근로소득: 매 반기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매월	(제출대상소득 및 주기) - 상용근로소득: 매월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매월 - (신설) 인적 용역 관련 기타소득: 매월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조특법 제104조의5 신설)	(신설)	- 소득자 수 등을 고려하여 세액 공제를 적용 · 공제한도: 연 300만원 (세무·회계법인 연 600만원), · 적용기한: 2024.1.1.~ 2025.12.31.
양도소득세 감면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 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69조의2)	(적용기한) 2022.12.31.	(적용기한) 2025.12.31.
8년 자영 어업용 토지에 대 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 한 연장 (조특법 제69조의3)	(적용기한) 2022.12.31.	(적용기한) 2025.12.31.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77조의3)	(적용기한) 2022.12.31.	(적용기한) 2025.12.31.

주요 내용	현행	개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97조의3)	(대상) - 2022년 말까지 등록된 민간건설임대주택	(대상) - 2024년 말까지 등록된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97조의9)	(적용기한) 2022.12.31.	(적용기한) 2024.12.31.
농어촌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적용기한 연장 및 소재지 요건 완화 (조특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가액요건) - 취득 당시 주택·토지가액 합계 2억원(한옥 4억원) 이하 (적용기한) - 2022.12.31.	(농어촌주택 가액요건) - 취득 당시 주택·토지가액 합액 3억원(한옥 4억원) 이하 (적용기한) - 2025.12.31. (소재지 요건 완화) - 도시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을 추가(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
기타		
주택 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상향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나목)	- 월세 임대소득 과세 대상: 1주택자 중 고가주택* 보유자 및 2주택 이상 보유자 * 고가주택: 기준시가 9억원 초과	- 월세 임대소득 과세 대상: 1주택자 중 고가주택* 보유자 및 2주택 이상 보유자 * 고가주택: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필요경비 한도별 기부금의 명칭 설정 (소득세법 제34조 등)	- '소득의 100% 한도 필요경비 산입 기부금' - '소득의 30% 한도 필요경비 산입 기부금'	- '특례기부금' - '일반기부금'
접대비 명칭 변경 (소득세법 제35조)	- 접대비	- 기업업무추진비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시기 2년 유예 (소득세법 법률 제17757호 부칙 제5조)	(과세 시행일) 2023.1.1.	(과세 시행일) 2025.1.1.
복권 당첨금 최저과세한 상향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금액 중 복권당첨금의 최저과세한) - 건별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금액 중 복권당첨금의 최저과세한) - 건별 20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 기한 연장 (소득세법 제97조의2)	(이월과세 기간) - 5년 (증여일 양도 기한) - 5년 이내	(이월과세 기간) - 10년 (증여일 양도 기한) - 10년 이내

주요 내용	현행	개정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소득세법 제101조)	(증여일 양도 기한) 5년 이내	(증여일 양도 기한) 10년 이내 - 시행일: 2023.1.1. - 법 시행 전 주식등 양도시 종전 규정에 따름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등 적용절차 보완 (소득세법 제156조의2)	(첨부서류) - 비과세·면제 등 신청서, 거주자 증명서	(첨부서류 추가) - 외국법인 설립 및 사업, 국내원천소득 관련 서류 등 (절차보완 관련 신설) - 세무서장은 요건충족 여부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서류 보완 요청 가능 - 소득지급자 등은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자료제출 요구 가능
매입자 발행계산서 제도 도입(소득세법 제163의3)	(신설)	- 공급자가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의 확인 하에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간 확대 (조특법 제18조)	(감면기간) - 국내에서 최초로 근무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까지	(감면기간) - 국내에서 최초로 근무를 제공한 날부터 10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까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연장(조특법 제18조의2)	(적용기간) -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적용기간) -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내국인 복귀 우수인력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18조의3)	(감면기한 및 감면율) - 취업일부터 5년간 50% (적용기한) - 취업일이 2022.12.31.까지	(감면기한 및 감면율) - 취업일부터 10년간 50% (적용기한) - 취업일이 2025.12.31.까지
벤처기업 주식 매각 후 재투자 시 과세특례 대상 명확화(조특법 제46조의8)	(특례 적용요건) - 매각대상기업의 주주가 2023.12.31. 이전에 해당 기업의 주식 중 일정비율(30%) 이상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50% 이상을 재투자한 경우 (주식양도차익 과세이연 대상) - 매각대상기업 주식양도차익	(특례 적용요건) - (현행) (주식양도차익 과세이연 대상) - 재투자에 사용된 금액

주요 내용	현행	개정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의 자료제출 대상 추가 (조특법 제89조의2)	(제출대상 특례상품) - 비과세종합저축, ISA 등	(제출대상 특례상품 추가) - 개인투자용 국채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제91조의23)	(신설)	- 만기까지 보유시 이자소득 분리과세(적용세율 14%) - 한도: 1인당 매입금액 총 2억원 - 적용기한: 2024.12.31.까지 매입분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조특법 제122조의3제1항)	(공제율) - 난임시술비: 20% - 일반의료비: 15%	(공제율) - 난임시술비: 30% - 일반의료비 15%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20%
현금영수증 가맹점 세액공제 적용기한 신설 (조특법 제126조의3제2항)	(적용기한) 없음	(적용기한) 2025.12.31.

주: '조특법'은 「조세특례제한법」을 의미

3 법인세(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분야)

가. 총괄

- 법인세 분야 개정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 등 전반적인 과세체계를 개편하고, 투자·고용지원 확대, 중소기업 지원 및 상생협력 강화 등 조세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짐
 -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조정’,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연결납세 지분율 요건 완화’ 등은 대부분 정부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법인세율 조정과 관련해서는 여·야 합의안 마련까지 찬성-반대 의견이 대립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등 기업의 투자·고용 지원 관련 개정안은 정부안대로 개정
 - 중소기업 지원 및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개정도 대부분 이견 없이 개정
 - 단, 의원안으로 발의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기한 연장은 논의과정에서 적용대상 기업을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수정되어 개정
- 법인세 과세체계 정비
 - 법인세율은 현 과세표준 구간을 유지하고, 구간별 세율을 1%p씩 하향 조정
 - 기업형태·지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된 국내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지분율 기준으로 단순화하고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
 - 논의과정에서 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률이 감소하지 않도록 지분율 구간을 조정 하였으며, 종전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조치는 1년으로 결정
 - 일반법인 등의 이월결손금 한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까지 확대
 -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익금불산입률 95%)이 도입되었으며, 연결납세를 위한 지분율 요건은 종전 100%에서 90%로 완화
- 기업의 투자 및 고용지원 확대
 -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
 -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기본공제율을 1%p 상향하고, 중견기업의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공제율을 1~2%p 상향
 - 고용과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운용되던 5개의 세액공제(고용증대, 경력단절여성·육아휴직 복귀자, 정규직 전환, 사회보험료)를 통합·단순화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

를 신설하고, 근로소득 증대기업 세액공제와 정규직 전환 근로자 임금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

- 그 외 중소기업 지원 및 상생협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조세 지원 확대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대상 기업을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축소하고 적용기한을 3년 연장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수도권 중기업을 제외하고, 적용기한 3년 연장
 - 알뜰주유소 신설·전환 지원을 위해 2023년까지 알뜰주유소에 대한 우대감면 신설*
 - * (감면율) 소기업: 20%, 중기업: 수도권 외 15%, 수도권 10%
 - 본사·공장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위기지역에 대한 우대 감면을 신설
 - 중간예납의무 면제 금액 기준을 현행 30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미만으로 확대
 - 이 밖에도 교육기관에 기증한 중고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등

나. 주요 논의 사항

(1)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변경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1%p 인하
 - 과세표준 구간은 현행 체계(4단계)를 유지
 - 개정취지: 법인세 부담 경감을 통한 기업의 투자·일자리 창출 지원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표 47]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현행		류성걸 의원안		송언석 의원안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9%	10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8%	10억원 초과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추경호 의원안		구자근 의원안		배준영 의원안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8%	2억원 이하	10%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8%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0%	200억원 초과	22%
정우택 의원안		권명호 의원안		이종배 의원안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5억원 이하	10%	2억원 이하	8%	2억원 이하	9%
5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6%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8%
3,000억원 초과	22%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17.6%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19.8%
		3,000억원 초과	20%	3,000억원 초과	22.5%
윤영석 의원안		정부안		개 정	
(수도권)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5억원 이하	10% (중소·중견)	2억원 이하	9%
2억원 이하	10%	5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1%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4%
3,000억원 초과	25%				
(수도권 외)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5%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12%				
3,000억원 초과	15%				

□ 최근 개정 연혁

- 법인세 과표구간은 2011년 이전까지 2단계였으나, 2012년 3단계, 2018년 4단계로 세분화
- 법인세 최고세율은 1998년 28%에서 2009년 22%까지 감소 후, 2018년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25%로 최고세율 상향 조정

[표 48] 법인세율 개정 연혁

	1998	2002	2005	2008	2009	2010	2012	2018
1억원 이하	16%	15%	13%	11%	11%	10%	10%	10%
1~2억원	28%	27%	25%					
2~200억원								
200~3,000억원								
3,000억원 초과								

□ 세수효과

- (2023년) -3,130억원* (연평균) -3조 1,320억원 (2023~2027년) -15조 6,598억원
* 자기계산 중간예납을 통해 확정신고 이전에 납부하는 세수효과 반영

□ 주요 논의 사항

- 기업의 세부담 완화를 통한 투자 제고 등을 취지로 정부는 법인세율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3%p 하향하는 안을 제출했으며, 다수의 의원안과 병합하여 국회에서 심사가 진행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 여·야 사이에 찬성-반대 의견이 대립하는 가운데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짐
 - 여당은 법인세율 인하로 투자증진을 통한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해외투자 유치에 있어서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야당은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고용 및 경제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최고세율 인하로 재정건전성 악화 및 형평성 저해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
- 법인세율과 관련한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예산안 합의 직전까지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심의 결과 과세표준 구간에 대한 축소 조정 없이 4단계 과표구간의 세율을 1%p씩 인하하는 내용으로 개정

(2)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등

① 국내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조정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제도 단순화 및 익금불산입률 조정
 - 종전 기업형태 및 지분율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지분율 기준으로 단순화하고, 익금불산입률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
- 개정취지: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 단, 2023년까지 배당받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표 49]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현 행	배준영 의원안
(일반법인)	(일반법인)
상장법인	상장법인
지분율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익금불산입률
100%	80% 이상
30% 이상 100% 미만	50% 이상 80% 미만
30% 미만	50% 미만
100%	100%
50%	80%
30%	50%
비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지분율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익금불산입률
100%	80% 이상
50% 이상 100% 미만	50% 이상 80% 미만
50% 미만	50% 미만
100%	100%
50%	80%
30%	50%
(지주회사)	(지주회사)
상장법인	상장법인
지분율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익금불산입률
40% 이상	40% 이상
30% 이상 40% 미만	30% 이상 40% 미만
30% 미만	30% 미만
100%	100%
90%	90%
80%	80%
비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지분율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익금불산입률
80% 이상	80% 이상
50% 이상 80% 미만	50% 이상 80% 미만
50% 미만	50% 미만
100%	100%
90%	90%
80%	80%

정부안		개정	
(모든 법인)		(모든 법인)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50% 이상	100%	50% 이상	100%
30% 이상 50% 미만	80%	20% 이상 50% 미만	80%
30% 미만	30%	20% 미만	30%
* 2026년 배당분까지 종전 방식 선택 가능		* 2023년 배당분까지 종전 방식 선택 가능	

□ 최근 개정 연혁

- 2000년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
 - 2001년부터는 일반법인으로 적용을 확대
- 2007~2009년 지주회사 익금불산입률(%) 단계적 상향
 - ('07) 90/60/30 → ('08) 90/70/30 → ('09) 100/80/30
- 2008년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 비상장 50 → 40, 상장 30 → 20
- 2020년 「공정거래법」과 지분율 요건 통일: '이하 → 미만', '초과 → 이상'

□ 세수효과

- (2023년) 없음* (연평균) -8,298억원 (2024~2027년) -3조 3,193억원
 - * 법인세 신고·납부기간 감안 시 2024년부터 세수효과 발생

□ 주요 논의 사항

- 이종과세 조정을 합리화하고 제도를 단순화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제출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조정안의 취지에 대해 여·야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
- 다만, 일부 지주회사의 경우 익금불산입률이 하락하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었으며, 세제 변화로 인해 과도한 불이익을 받는 회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익금불산입률 30% 적용 구간을 '지분율 20% 미만'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 2023년 배당분까지 종전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 마련

②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도입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도입
 -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익금불산입률 95%) 을 도입
 - *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지분율 10% 이상을 보유한 법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해외자회사는 5%)
- 개정취지: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및 해외유보자금의 국내 송금 제고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표 50]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현 행	정부안	개 정
(신설)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금불산입 대상)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 (해외자회사)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해외자회사는 5% *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인한 배당은 지분율 무관 익금불산입 적용 ○ (배당소득 범위) 이익의 배당금, 잉여금의 분배금, 의제배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CFC 배당으로 간주되는 경우, 혼성금융상품, 간접투자회사 등은 적용 제외 ○ (익금불산입률) 95% ※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현행과 동일하게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정부안)

□ 세수효과

- (2023년) 없음* (연평균) -1,044억원 (2023~2027년) -4,177억원
 - * 법인세 신고·납부기간 감안시 2024년부터 세수효과 발생

□ 주요 논의 사항

-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및 해외 유보소득의 국내 환류를 제고하기 위한 취지를 고려하여,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종전 세액공제 방식에서 익금불산입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정부안대로 개정

- 다만, 동 제도의 도입에 따라 해외자회사를 활용한 일감몰아주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 의견도 일부 제기

(3) 국가전략기술 등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 ①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종전 6%에서 8%로 2%p 상향
 - ② 중견기업의 일반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3%에서 5%로 2%p 상향하고, 중견기업의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시설투자 공제율을 5%에서 6%로 1%p 상향
- 개정취지: 국가전략기술 등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표 51]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현행					김상훈 의원안					한병도 의원안(17807)				
	구분	당기분			증가분	구분	당기분			증가분	구분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대	중견	중소			대	중견	중소	
공제율 (%)	일반	1	3	10	3	일반	1	3	10	3	일반	1	3	10	3
	신성장	3	5	12		신성장	3	5	12		신성장	3	5	12	
	국가 전략기술	6	8	16	4	국가 전략기술	8	8	16	4	국가 전략기술	6	10	20	4
적용 기한	2024.12.31.					2024.12.31.					2024.12.31.				
	양향자 의원안					배준영 의원안					조명희 의원안				
공제율 (%)	일반	1	3	10	3	일반	1	3	10	3	일반	1	3	10	3
	신성장	3	5	12		신성장	15	20	25		신성장	10	15	30	
	국가 전략기술	20	25	30	5	국가 전략기술	20	25	30	4	국가 전략기술	25	30	35	4
적용 기한	2030.12.31.					2024.12.31.					2024.12.31.				

	박성중 의원안	홍석준 의원안(15660)	추경호 의원안																																																																														
공제율 (%)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3">당기분</th> <th rowspan="2">증가분</th> </tr> <tr> <th>대</th> <th>중견</th> <th>중소</th> </tr> </thead> <tbody> <tr> <td>일 반</td> <td>1</td> <td>3</td> <td>10</td> <td rowspan="3">3</td> </tr> <tr> <td>신성장</td> <td>3</td> <td>5</td> <td>12</td> </tr> <tr> <td>국가 전략기술</td> <td>30</td> <td>40</td> <td>50</td> </tr> </tbody> </table>	구 분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일 반	1	3	10	3	신성장	3	5	12	국가 전략기술	30	40	50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3">당기분</th> <th rowspan="2">증가분</th> </tr> <tr> <th>대</th> <th>중견</th> <th>중소</th> </tr> </thead> <tbody> <tr> <td>일 반</td> <td>1</td> <td>3</td> <td>10</td> <td rowspan="3">3</td> </tr> <tr> <td>신성장</td> <td>3</td> <td>5</td> <td>12</td> </tr> <tr> <td>국가 전략기술</td> <td>6</td> <td>8</td> <td>16</td> </tr> <tr> <td>탄소중립</td> <td>10</td> <td>15</td> <td>20</td> <td>3</td> </tr> </tbody> </table>	구 분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일 반	1	3	10	3	신성장	3	5	12	국가 전략기술	6	8	16	탄소중립	10	15	20	3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3">당기분</th> <th rowspan="2">증가분</th> </tr> <tr> <th>대</th> <th>중견</th> <th>중소</th> </tr> </thead> <tbody> <tr> <td>일 반</td> <td>1</td> <td>3</td> <td>10</td> <td rowspan="4">3</td> </tr> <tr> <td>신성장</td> <td>3</td> <td>5</td> <td>12</td> </tr> <tr> <td>온실가스 감축설비</td> <td>3</td> <td>5</td> <td>12</td> </tr> <tr> <td>국가 전략기술</td> <td>6</td> <td>8</td> <td>16</td> </tr> </tbody> </table>	구 분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일 반	1	3	10	3	신성장	3	5	12	온실가스 감축설비	3	5	12	국가 전략기술	6	8	16						
	구 분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일 반	1	3	10	3																																																																													
신성장	3	5	12																																																																														
국가 전략기술	30	40	50																																																																														
구 분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일 반	1	3	10	3																																																																													
신성장	3	5	12																																																																														
국가 전략기술	6	8	16																																																																														
탄소중립	10	15	20	3																																																																													
구 분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일 반	1	3	10	3																																																																													
신성장	3	5	12																																																																														
온실가스 감축설비	3	5	12																																																																														
국가 전략기술	6	8	16																																																																														
적용 기한	2027.12.31.	2024.12.31.	2024.12.31.																																																																														
	한병도 의원안(17597)	양금희 의원안	홍석준 의원안(15001)																																																																														
공제율 (%)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3">당기분</th> <th rowspan="2">증가분</th> </tr> <tr> <th>대</th> <th>중견</th> <th>중소</th> </tr> </thead> <tbody> <tr> <td>일 반</td> <td>1</td> <td>3</td> <td>10</td> <td rowspan="3">3</td> </tr> <tr> <td>신성장</td> <td>3</td> <td>5</td> <td>12</td> </tr> <tr> <td>온실가스 감축시설</td> <td>3</td> <td>6</td> <td>12</td> </tr> <tr> <td>국가 전략기술</td> <td>8</td> <td>8</td> <td>16</td> <td>4</td> </tr> </tbody> </table>	구 분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일 반	1	3	10	3	신성장	3	5	12	온실가스 감축시설	3	6	12	국가 전략기술	8	8	16	4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3">당기분</th> <th rowspan="2">증가분</th> </tr> <tr> <th>대</th> <th>중견</th> <th>중소</th> </tr> </thead> <tbody> <tr> <td>일 반</td> <td>1</td> <td>3</td> <td>10</td> <td rowspan="3">3</td> </tr> <tr> <td>신성장</td> <td>3</td> <td>5</td> <td>12</td> </tr> <tr> <td>국가 전략기술</td> <td>8</td> <td>10</td> <td>20</td> </tr> <tr> <td>녹색기술</td> <td>10</td> <td>15</td> <td>20</td> <td>4</td> </tr> </tbody> </table>	구 분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일 반	1	3	10	3	신성장	3	5	12	국가 전략기술	8	10	20	녹색기술	10	15	20	4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3">당기분</th> <th rowspan="2">증가분</th> </tr> <tr> <th>대</th> <th>중견</th> <th>중소</th> </tr> </thead> <tbody> <tr> <td>일 반</td> <td>1</td> <td>3</td> <td>10</td> <td rowspan="3">3</td> </tr> <tr> <td>신성장</td> <td>3</td> <td>5</td> <td>12</td> </tr> <tr> <td>국가 전략기술</td> <td>6</td> <td>8</td> <td>16</td> </tr> <tr> <td>산업자해 예방시설</td> <td>10</td> <td>20</td> <td>30</td> <td>3</td> </tr> </tbody> </table>	구 분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일 반	1	3	10	3	신성장	3	5	12	국가 전략기술	6	8	16	산업자해 예방시설	10	20	30	3
	구 분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일 반	1	3	10	3																																																																													
신성장	3	5	12																																																																														
온실가스 감축시설	3	6	12																																																																														
국가 전략기술	8	8	16	4																																																																													
구 분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일 반	1	3	10	3																																																																													
신성장	3	5	12																																																																														
국가 전략기술	8	10	20																																																																														
녹색기술	10	15	20	4																																																																													
구 분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일 반	1	3	10	3																																																																													
신성장	3	5	12																																																																														
국가 전략기술	6	8	16																																																																														
산업자해 예방시설	10	20	30	3																																																																													
적용 기한	2024.12.31.	2024.12.31.	2024.12.31.																																																																														
	김주영 의원안	정부안	개 정																																																																														
공제율 (%)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3">당기분</th> <th rowspan="2">증가분</th> </tr> <tr> <th>대</th> <th>중견</th> <th>중소</th> </tr> </thead> <tbody> <tr> <td>일 반</td> <td>1</td> <td>3</td> <td>10</td> <td rowspan="3">3</td> </tr> <tr> <td>신성장</td> <td>3</td> <td>5</td> <td>12</td> </tr> <tr> <td>사업장 증설시설</td> <td>6</td> <td>8</td> <td>15</td> </tr> <tr> <td>국가 전략기술</td> <td>6</td> <td>8</td> <td>16</td> <td>4</td> </tr> </tbody> </table>	구 분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일 반	1	3	10	3	신성장	3	5	12	사업장 증설시설	6	8	15	국가 전략기술	6	8	16	4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3">당기분</th> <th rowspan="2">증가분</th> </tr> <tr> <th>대</th> <th>중견</th> <th>중소</th> </tr> </thead> <tbody> <tr> <td>일 반</td> <td>1</td> <td>5</td> <td>10</td> <td rowspan="3">3</td> </tr> <tr> <td>신성장</td> <td>3</td> <td>6</td> <td>12</td> </tr> <tr> <td>국가 전략기술</td> <td>8</td> <td>8</td> <td>16</td> </tr> </tbody> </table>	구 분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일 반	1	5	10	3	신성장	3	6	12	국가 전략기술	8	8	16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3">당기분</th> <th rowspan="2">증가분</th> </tr> <tr> <th>대</th> <th>중견</th> <th>중소</th> </tr> </thead> <tbody> <tr> <td>일 반</td> <td>1</td> <td>5</td> <td>10</td> <td rowspan="3">3</td> </tr> <tr> <td>신성장</td> <td>3</td> <td>6</td> <td>12</td> </tr> <tr> <td>국가 전략기술</td> <td>8</td> <td>8</td> <td>16</td> </tr> </tbody> </table>	구 분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일 반	1	5	10	3	신성장	3	6	12	국가 전략기술	8	8	16										
	구 분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일 반	1	3	10	3																																																																													
신성장	3	5	12																																																																														
사업장 증설시설	6	8	15																																																																														
국가 전략기술	6	8	16	4																																																																													
구 분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일 반	1	5	10	3																																																																													
신성장	3	6	12																																																																														
국가 전략기술	8	8	16																																																																														
구 분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일 반	1	5	10	3																																																																													
신성장	3	6	12																																																																														
국가 전략기술	8	8	16																																																																														
적용 기한	2024.12.31.	2024.12.31.	2024.12.31.																																																																														

주: 1. 이외에도 국가전략기술에 수소를 추가하고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세액공제의 일몰을 삭제하는 한병도 의원안(17483) 존재

2. 음영은 현행 대비 변동사항을 의미

□ 최근 개정 연혁

- 2020년 세법개정을 통해 종전 개별시설별로 운용되던 투자관련 세액공제 제도를 통합·단순화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도입

- 세액공제 대상자산을 특정시설에서 일반사업용 자산(토지·건물·차량 등은 제외)으로 확대
- 신성장·원천기술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일반시설 대비 기본공제율 2%p 우대
- 2021년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우대공제율 신설
 - (기본공제율) 신성장·원천 대비 3~4%p 우대
 - (추가공제율) 신성장·원천 대비 1%p 우대

□ 세수효과

- (2023년) 없음* (연평균) -3,969억원** (2024~2027년) -9,127억원**
 - * 법인세 신고·납부기간 감안 시 2024년부터 세수효과 발생
 - ** 해당 세수효과는 통합투자세액공제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효과를 고려한 금액임

□ 주요 논의 사항

- 핵심기술 등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다수의 의원안과 정부안을 병합하여 심사 진행
 -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지원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공감하였으나, 그 적용범위와 공제율 수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
 - 또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우대공제율 신설한 지 1년 만에 효과성에 대한 평가 없이 공제율 상향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
- 논의결과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통합투자 세액공제율을 1~2%p 상향하는 정부안으로 의결
 - 참고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 2%p, 중소기업 4%p 상향하는 한병도의원안(17807)은 부수법률안으로 지정되어 함께 논의됨

(4)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고용 관련 4개의 개별 세액공제 조항(고용증대, 경력단절여성·육아휴직 복귀자, 정규직 전환, 사회보험료)을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
- 개정취지: 개별 고용지원 제도의 통합·단순화를 통한 기업 고용확대 지원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
 -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

[표 52]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현행	정부안	개정																																																																					
내용	<p>(고용증대공제) 고용증가인원×1인당공제액</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3">공제액 (단위:만원)</th> </tr> <tr> <th>중소(3년) 수도권</th> <th>중견 지방 (3년)</th> <th>대기업 (2년)</th> </tr> </thead> <tbody> <tr> <td>상시 근로자</td> <td>700</td> <td>700</td> <td>450</td> </tr> <tr> <td>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등</td> <td>1,100</td> <td>1,200</td> <td>800</td> </tr> </tbody> </table> <p>*청년연령: 15~29세</p> <p>(경력단절여성 등 공제) 채용경력단절여성 인건비×공제율</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공제율</th> </tr> <tr> <th>중소</th> <th>중견</th> </tr> </thead> <tbody> <tr> <td>경력단절여성(2년)</td> <td>30%</td> <td>15%</td> </tr> </tbody> </table> <p>육아휴직복귀자 인건비×공제율</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공제율</th> </tr> <tr> <th>중소</th> <th>중견</th> </tr> </thead> <tbody> <tr> <td>육아휴직 복귀자(1년)</td> <td>30%</td> <td>15%</td> </tr> </tbody> </table> <p>(정규직전환공제) 정규직전환인원×공제율</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공제액 (단위:만원)</th> </tr> <tr> <th>중소</th> <th>중견</th> </tr> </thead> <tbody> <tr> <td>정규직 전환자(1년)</td> <td>1,000</td> <td>700</td> </tr> </tbody> </table> <p>(중소기업 사회보험료공제) 고용증가인원×사용자분 사회보험료×공제율</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공제율 (중소)</th> </tr> </thead> <tbody> <tr> <td>상시근로자(2년)</td> <td>50%*</td> </tr> <tr> <td>청년, 경력단절여성(2년)</td> <td>100%</td> </tr> </tbody> </table> <p>*전기통신업, 인쇄물 출판업 등 75%</p>	구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3년) 수도권	중견 지방 (3년)	대기업 (2년)	상시 근로자	700	700	450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등	1,100	1,200	800	구분	공제율		중소	중견	경력단절여성(2년)	30%	15%	구분	공제율		중소	중견	육아휴직 복귀자(1년)	30%	15%	구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자(1년)	1,000	700	구분	공제율 (중소)	상시근로자(2년)	50%*	청년, 경력단절여성(2년)	100%	<p>(기본) 고용증가인원×1인당공제액</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3">공제액 (단위:만원)</th> </tr> <tr> <th>중소(3년) 수도권</th> <th>중견 지방 (3년)</th> <th>대기업 (2년)</th> </tr> </thead> <tbody> <tr> <td>상시 근로자</td> <td>850</td> <td>950</td> <td>450</td> </tr> <tr> <td>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 성 등</td> <td>1,450</td> <td>1,550</td> <td>800</td> </tr> </tbody> </table> <p>*청년연령: 15~34세 **일부 서비스업종 우대 폐지</p> <p>(추가) 정규직전환·육아휴직 복귀자</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공제액 (단위:만원)</th> </tr> <tr> <th>중소</th> <th>중견</th> </tr> </thead> <tbody> <tr> <td>정규직 전환자(1년)</td> <td rowspan="2">1,300</td> <td rowspan="2">900</td> </tr> <tr> <td>육아휴직 복귀자(1년)</td> </tr> </tbody> </table> <p>(특례) 2023~2024년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①통합고용세액공제, ②기존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선택 적용 가능</p>	구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3년) 수도권	중견 지방 (3년)	대기업 (2년)	상시 근로자	850	950	450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 성 등	1,450	1,550	800	구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자(1년)	1,300	900	육아휴직 복귀자(1년)	(정부안)
	구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3년) 수도권		중견 지방 (3년)	대기업 (2년)																																																																					
상시 근로자	700	700	450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등	1,100	1,200	800																																																																					
구분	공제율																																																																							
	중소	중견																																																																						
경력단절여성(2년)	30%	15%																																																																						
구분	공제율																																																																							
	중소	중견																																																																						
육아휴직 복귀자(1년)	30%	15%																																																																						
구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자(1년)	1,000	700																																																																						
구분	공제율 (중소)																																																																							
상시근로자(2년)	50%*																																																																							
청년, 경력단절여성(2년)	100%																																																																							
구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3년) 수도권	중견 지방 (3년)	대기업 (2년)																																																																					
상시 근로자	850	950	450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 성 등	1,450	1,550	800																																																																					
구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자(1년)	1,300	900																																																																						
육아휴직 복귀자(1년)																																																																								
적용 기한	<p>(고용증대) 2024.12.31. (경력단절여성 등) 2022.12.31. (정규직전환) 2022.12.31. (사회보험료) 2024.12.31.</p>	<p>(기본) 2025.12.31. (정규직전환) 2023.12.31.</p>	(정부안)																																																																					

□ 최근 개정 연혁

- 2020년 경력단절 여성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상향 및 고용증대 세액공제 우대적용 대상 확대
 - 경력단절 여성 중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10~20%p 상향
 - 고용증대 세액공제 우대적용 대상(청년·장애인)에 60세 이상 추가
- 2021년 경력단절 여성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및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1인당 세액공제액 상향
 - 경력단절 여성의 퇴직 후 취업기간 요건 1년 완화
 - 청년 등 고용증대 세액공제 1인당 공제액 100만원 상향('22년 한시적용)

□ 세수효과

- (2023년) 없음* (연평균) -2,317억원 (2024~2027년) -9,267억원
- * 법인세 신고·납부기간 감안시 2024년부터 세수효과 발생

□ 주요 논의 사항

- 복잡한 제도를 단순화하여 기업의 세액공제에 대한 활용도를 제고하고, 중소기업 등의 고용 1인당 세액공제액을 상향하여 기업의 고용유인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 안으로 의결
- 고용지원 제도의 통합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하였으나, 임시근로자의 고용 증대에 대한 세액공제 수혜 여부에 대해서는 일부 이견 존재
 - 상시(상용+임시)근로자에 대한 고용증대에 지원함에 따라 기업이 임시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증대하여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상시근로자 추가 요건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5) 지방이전 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 인구감소지역 등 위기지역으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상향
 - 수도권 밖으로 본사·공장을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 개정취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기업의 수도권 외 지방투자 장려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

[표 53] 수도권 밖 공장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현행	윤재갑 의원안	이병훈 의원안
감면율	(기본) - 7년 100% + 3년 50% (지방광역시·대도시 등 이전) - 5년 100% + 2년 50%	(기본) - 7년 100% + 3년 50% (지방광역시·대도시 등 이전) - 5년 100% + 2년 50% (신·재생에너지발전지역 이전) - 10년 100% + 5년 50%	(기본) - 10년 100% + 5년 80% (지방광역시·대도시 등 이전) - 7년 100% + 3년 80%
적용기한	2022.12.31.	2022.12.31.	2021.12.31. ¹⁾
	장철민·배준영·김정호 의원안	정부안	개정
감면율	(기본) - 7년 100% + 3년 50% (지방광역시·대도시 등 이전) - 5년 100% + 2년 50%	(기본, 지방광역시 등 소재 위기지역* 이전) - 7년 100% + 3년 50% (지방광역시·대도시 등 이전) - 5년 100% + 2년 50% (위기지역* 이전) - 10년 100% + 2년 50% *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교통·산업위기지역	(기본, 지방광역시 등 소재 위기지역* 이전) - 7년 100% + 3년 50% (지방광역시·대도시 등 이전) - 5년 100% + 2년 50% (위기지역* 이전) - 10년 100% + 2년 50% *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교통·산업위기지역
적용기한	(장철민 의원안) 2024.12.31. (배준영 의원안) 2025.12.31. (김정호 의원안) 2027.12.31.	2025.12.31.	2025.12.31.

주: 1) 2020.11.18. 발의(의안번호 2105479)

[표 54] 수도권 밖 본사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현행	김두관 의원안	이병훈 의원안
감면율	(기본) - 7년 100% + 3년 50% (지방광역시·대도시 등 이전) - 5년 100% + 2년 50%	(기본) - 7년 50% + 3년 30% (지방광역시·대도시 등 이전) - 5년 50% + 2년 30% (추가 감면) - 상시지방근로자수* × 1,500만원 * 이전 지역 고용 상시근로자	(기본) - 10년 100% + 5년 80% (지방광역시·대도시 등 이전) - 7년 100% + 3년 80%
적용기한	2022.12.31.	(현행)	2021.12.31. ¹⁾
	배준영·김정호·김수흥·김희재 의원안	정부안	개정
감면율	(기본) - 7년 100% + 3년 50% (지방광역시·대도시 등 이전) - 5년 100% + 2년 50%	(기본, 지방광역시 등 소재 위기지역* 이전) - 7년 100% + 3년 50% (지방광역시·대도시 등 이전) - 5년 100% + 2년 50% (위기지역* 이전) - 10년 100% + 2년 50% *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	(기본, 지방광역시 등 소재 위기지역* 이전) - 7년 100% + 3년 50% (지방광역시·대도시 등 이전) - 5년 100% + 2년 50% (위기지역* 이전) - 10년 100% + 2년 50% *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
적용기한	(배준영 의원안) 2025.12.31. (김정호·김수흥·김희재 의원안) 2027.12.31.	2025.12.31.	2025.12.31.

주: 1) 2020.11.18. 발의(의안번호 2105479)

□ 최근 개정 연혁

- 2020년 조문 정비 및 개편
 - 유사조문을 정비하여 공장/본사 이전 각각에 대한 조문으로 개편
 - *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으로 개편
 - *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을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으로 개편
- 2021년 투자금액·본사 근무인원 등 세액감면 요건 신설
 - 사업용자산에 대한 누적 투자액 10억원 이상, 이전 본사 근무인원 20명 이상

□ 세수효과

- 위기지역 등 이전에 대한 감면을 상향: 추정곤란
 - 이전지역별 감면현황 등 관련 자료의 부재로 합리적인 추정 곤란
- 적용기한 연장: (2023년) 없음* (연평균) -1,217억원 (2024~2027년) -4,870억원
 - * 소득세 세수효과가 포함된 금액이며,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납부기간 감안시 2024년부터 세수효과 발생

□ 주요 논의 사항

-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성장촉진지역 등 위기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을 상향의 필요성을 여·야 모두 공감하며 정부안대로 의결
- 다만, 지방이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 일몰 연장이 여러차례 이루어졌음에도 기업의 지방이전이 부진하므로 본질적인 해소방안 검토가 필요

(6)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일반법인·연결법인 등에 적용되는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
 - 현행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로 규정된 일반법인 등에 대한 이월결손금 한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로 확대
- 개정취지: 공제한도 상향을 통해 이월결손금 보유 법인의 세부담을 완화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표 55] 일반법인 등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현행	박홍근 의원안	이상헌 의원안	정부안	개정
일반법인 등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	80% (~2025년 사업연도) 이후 60%	공제한도 폐지	80%	80%
시행일		2022.1.1.	2022.1.1.	2023.1.1.	2023.1.1.

□ 최근 개정 연혁

- 2016년 일반기업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80%) 신설
 -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80% 한도를 적용
- 2019년 일반기업 등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60%로 하향

□ 세수효과

- (2023년) -166억원* (연평균) -1,603억원 (2023~2027년) -8,016억원
 - * 자기계산 중간예납을 통해 확정신고 이전에 납부하는 세수효과 반영

□ 주요 논의 사항

-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대규모 결손이 발생한 기업들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반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까지 상향하도록 정부 안대로 의결
- 다만,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제기

[표 56] 법인세 개정 내용

주요 내용	현행	개정																												
과세체계 정비																														
연결납세 지분율 요건 완화(법인세법 제2조 등)	(연결지배 요건) - 지분율 100%	(연결지배 요건) - 지분율 90%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법인세법 제13조 등)	(일반법인 등 이월결손금 한도) -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	(일반법인 등 이월결손금 한도) -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법인세법 제18조의2)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일반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모든 법인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상장법인</th> </tr> <tr> <th>지분율</th> <th>익금불산입률</th> </tr> </thead> <tbody> <tr> <td>100%</td> <td>100%</td> </tr> <tr> <td>30% ~ 100% 미만</td> <td>50%</td> </tr> <tr> <td>30% 미만</td> <td>30%</td> </tr> <tr> <th colspan="2">비상장법인</th> </tr> <tr> <th>지분율</th> <th>익금불산입률</th> </tr> <tr> <td>100%</td> <td>100%</td> </tr> <tr> <td>50% ~ 100% 미만</td> <td>50%</td> </tr> <tr> <td>50% 미만</td> <td>30%</td> </tr> </tbody> </table>	상장법인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100%	100%	30% ~ 100% 미만	50%	30% 미만	30%	비상장법인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100%	100%	50% ~ 100% 미만	50%	50% 미만	30%	<table border="1"> <thead> <tr> <th>지분율</th> <th>익금불산입률</th> </tr> </thead> <tbody> <tr> <td>50% 이상</td> <td>100%</td> </tr> <tr> <td>20% ~ 50% 미만</td> <td>80%</td> </tr> <tr> <td>20%미만</td> <td>30%</td> </tr> </tbody> </table>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50% 이상	100%	20% ~ 50% 미만	80%	20%미만	30%
	상장법인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100%	100%																													
30% ~ 100% 미만	50%																													
30% 미만	30%																													
비상장법인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100%	100%																													
50% ~ 100% 미만	50%																													
50% 미만	30%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50% 이상	100%																													
20% ~ 50% 미만	80%																													
20%미만	30%																													
	-지주회사	※ 2023년 배당분까지 종전 방식 선택 가능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상장법인</th> </tr> <tr> <th>지분율</th> <th>익금불산입률</th> </tr> </thead> <tbody> <tr> <td>40% ~ 100%</td> <td>100%</td> </tr> <tr> <td>30% ~ 40% 미만</td> <td>90%</td> </tr> <tr> <td>30% 미만</td> <td>80%</td> </tr> <tr> <th colspan="2">비상장법인</th> </tr> <tr> <th>지분율</th> <th>익금불산입률</th> </tr> <tr> <td>80% ~ 100%</td> <td>100%</td> </tr> <tr> <td>50% ~ 80% 미만</td> <td>90%</td> </tr> <tr> <td>50% 미만</td> <td>80%</td> </tr> </tbody> </table>	상장법인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40% ~ 100%	100%	30% ~ 40% 미만	90%	30% 미만	80%	비상장법인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80% ~ 100%	100%	50% ~ 80% 미만	90%	50% 미만	80%									
상장법인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40% ~ 100%	100%																													
30% ~ 40% 미만	90%																													
30% 미만	80%																													
비상장법인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80% ~ 100%	100%																													
50% ~ 80% 미만	90%																													
50% 미만	80%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법인세법 제18조의4 신설)	(해외자회사 배당금 과세방식) - 해외자회사 배당금 과세 후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자회사 배당금 과세방식)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익금불산입률 95%)																												

주요 내용	현행	개정																				
간접투자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산식 변경 (법인세법 제52조의2 신설)	(펀드 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 세전가격 과세 후 공제	(펀드 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 세후가격 과세 후 조정액 공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변경 및 최고세율 인하 (법인세법 제55조)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 <td>2억원 이하</td> <td>10%</td> </tr> <tr> <td>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td> <td>20%</td> </tr> <tr> <td>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td> <td>22%</td> </tr> <tr> <td>3,000억원 초과</td> <td>25%</td> </tr> </tbody> </table>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 <td>2억원 이하</td> <td>9%</td> </tr> <tr> <td>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td> <td>19%</td> </tr> <tr> <td>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td> <td>21%</td> </tr> <tr> <td>3,000억원 초과</td> <td>24%</td> </tr> </tbody> </table>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해외자회사 요건 완화 (법인세법 제57조)	(해외자회사 요건) -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지분율 25% 이상 보유	(해외자회사 요건) -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지분율 10% 이상 보유																				
연결납세법인간 연결소득 배분방법 보완(법인세법 제76조의15 제4항 신설)	(신설)	(연결소득 배분방법 추가) - 결손법인의 결손금으로 인한 세 부담 절감 대가를 해당 결손법인에 지급																				
투자지원 확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제13조)	(적용기한) 2022.12.31.	(적용기한) 2025.12.31.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서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13조의2)	(적용기한) 2022.12.31.	(적용기한) 2025.12.31.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출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13조의3 제1항)	(적용기한) 2022.12.31.	(적용기한) 2025.12.31.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시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제13조의3 제3항)	(공제 대상 인수기업) -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 (적용기한) - 2022.12.31.	(공제 대상 추가) - (현행) -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기업 (적용기한) - 2025.12.31.																				

주요 내용	현행	개정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조특법 제13조의4)	(적용기한) 2022.12.31.	(적용기한) 2025.12.31.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14조)	(적용기한) 2022.12.31.	(적용기한) 2025.12.31.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특법 제15조)	(적용기한) 2022.12.31.	(적용기한) 2025.12.31.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 (조특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율) (단위: %)	(통합투자세액공제율) (단위: %)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3">당기분</th> <th rowspan="2">증가분</th> </tr> <tr> <th>대</th> <th>중견</th> <th>중소</th> </tr> </thead> <tbody> <tr> <td>일 반</td> <td>1</td> <td>3</td> <td>10</td> <td rowspan="3">3</td> </tr> <tr> <td>신성장</td> <td>3</td> <td>5</td> <td>12</td> </tr> <tr> <td>국가 전략기술</td> <td>6</td> <td>8</td> <td>16</td> <td>4</td> </tr> </tbody> </table>	구 분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일 반	1	3	10	3	신성장	3	5	12	국가 전략기술	6	8	16	4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3">당기분</th> <th rowspan="2">증가분</th> </tr> <tr> <th>대</th> <th>중견</th> <th>중소</th> </tr> </thead> <tbody> <tr> <td>일 반</td> <td>1</td> <td>5</td> <td>10</td> <td rowspan="3">3</td> </tr> <tr> <td>신성장</td> <td>3</td> <td>6</td> <td>12</td> </tr> <tr> <td>국가 전략기술</td> <td>8</td> <td>8</td> <td>16</td> <td>4</td> </tr> </tbody> </table>	구 분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일 반	1	5	10	3	신성장	3	6	12	국가 전략기술	8	8	16
구 분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일 반	1	3	10	3																																									
신성장	3	5	12																																										
국가 전략기술	6	8	16		4																																								
구 분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일 반	1	5	10	3																																									
신성장	3	6	12																																										
국가 전략기술	8	8	16		4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에 OTT 추가 (조특법 제25조의6)	(공제대상 영상물) -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 영화 (적용기한) - 2022.12.31.	(공제대상 영상물) - (현행)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적용기한) - 2025.12.31.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조특법 제28조의4 신설)	(신설)	(내용) -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해 신고조정을 통한 가속상각 허용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 위임) (적용기한) - 2023.12.31.																																											
고용지원																																													
근로소득 증대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29조의4 제1항)	(적용기한) 2022.12.31.	(적용기한) 2025.12.31.																																											
정규직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조특법 제29조의4 제3항)	(대상기업) -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존재하는 중소·중견·대기업 (적용기한) - 2022.12.31.	(대상기업) - 대기업을 적용대상에서 제외 (적용기한) - 2025.12.31.																																											

주요 내용	현행	개정																																														
<p>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조특법 제29조의8 신설)</p>	<p>(고용증대공제) - 증가인원×1인당공제액</p> <table border="1" data-bbox="508 348 832 617"> <thead> <tr> <th rowspan="3">구분</th> <th colspan="4">공제액 (단위:만원)</th> </tr> <tr> <th colspan="2">중소(3년)</th> <th>중견 (3년)</th> <th>대기업 (2년)</th> </tr> <tr> <th>수도권</th> <th>지방</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상시 근로자</td> <td>700</td> <td>700</td> <td>450</td> <td>-</td> </tr> <tr> <td>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등</td> <td>1,100</td> <td>1,200</td> <td>800</td> <td>400</td> </tr> </tbody> </table>	구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3년)		중견 (3년)	대기업 (2년)	수도권	지방			상시 근로자	700	700	450	-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등	1,100	1,200	800	400	<p>(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 기본: 고용증가인원×1인당공제액</p> <table border="1" data-bbox="865 333 1196 599"> <thead> <tr> <th rowspan="3">구분</th> <th colspan="4">공제액 (단위:만원)</th> </tr> <tr> <th colspan="2">중소(3년)</th> <th>중견 (3년)</th> <th>대기업 (2년)</th> </tr> <tr> <th>수도권</th> <th>지방</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상시 근로자</td> <td>850</td> <td>950</td> <td>450</td> <td>-</td> </tr> <tr> <td>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여성 등</td> <td>1,450</td> <td>1,550</td> <td>800</td> <td>400</td> </tr> </tbody> </table>	구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3년)		중견 (3년)	대기업 (2년)	수도권	지방			상시 근로자	850	950	450	-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여성 등	1,450	1,550	800	400
	구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3년)		중견 (3년)	대기업 (2년)																																										
		수도권	지방																																													
	상시 근로자	700	700	450	-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등	1,100	1,200	800	400																																											
구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3년)		중견 (3년)	대기업 (2년)																																												
	수도권	지방																																														
상시 근로자	850	950	450	-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여성 등	1,450	1,550	800	400																																												
<p>*청년연령: 15~29세</p> <p>(경력단절여성 등 공제) - 인건비×공제율</p> <table border="1" data-bbox="508 733 822 838">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공제율</th> </tr> <tr> <th>중소</th> <th>중견</th> </tr> </thead> <tbody> <tr> <td>경력단절여성(2년)</td> <td>30%</td> <td>15%</td> </tr> </tbody> </table>	구분	공제율		중소	중견	경력단절여성(2년)	30%	15%	<p>*청년연령: 15~34세 **일부 서비스업종 우대 폐지</p> <p>- 추가: 정규직전환·육아휴직 복귀자</p> <table border="1" data-bbox="865 709 1203 889">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공제액 (단위:만원)</th> </tr> <tr> <th>중소</th> <th>중견</th> </tr> </thead> <tbody> <tr> <td>정규직 전환자(1년)</td> <td rowspan="2">1,300</td> <td rowspan="2">900</td> </tr> <tr> <td>육아휴직 복귀자(1년)</td> </tr> </tbody> </table>	구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자(1년)	1,300	900	육아휴직 복귀자(1년)																														
구분		공제율																																														
	중소	중견																																														
경력단절여성(2년)	30%	15%																																														
구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자(1년)	1,300	900																																														
육아휴직 복귀자(1년)																																																
<p>(육아휴직복귀자) - 인건비×공제율</p> <table border="1" data-bbox="508 925 829 1030">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공제율</th> </tr> <tr> <th>중소</th> <th>중견</th> </tr> </thead> <tbody> <tr> <td>육아휴직 복귀자(1년)</td> <td>30%</td> <td>15%</td> </tr> </tbody> </table>	구분	공제율		중소	중견	육아휴직 복귀자(1년)	30%	15%	<p>※ 2023~2024년 과세연도분에 대해 ①통합고용세액공제, ②중견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선택 적용 가능</p>																																							
구분		공제율																																														
	중소	중견																																														
육아휴직 복귀자(1년)	30%	15%																																														
<p>(정규직전환공제) - 1인당 공제액</p> <table border="1" data-bbox="508 1117 829 1238">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공제액 (단위:만원)</th> </tr> <tr> <th>중소</th> <th>중견</th> </tr> </thead> <tbody> <tr> <td>정규직 전환자(1년)</td> <td>1,000</td> <td>700</td> </tr> </tbody> </table>	구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자(1년)	1,000	700																																								
구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자(1년)	1,000	700																																														
<p>(사회보험료공제) - 증가인원×사용자 보험료×공제율</p> <table border="1" data-bbox="508 1324 829 1446"> <thead> <tr> <th>구분</th> <th>공제율 (중소)</th> </tr> </thead> <tbody> <tr> <td>상시근로자(2년)</td> <td>50%*</td> </tr> <tr> <td>청년, 경력단절여성(2년)</td> <td>100%</td> </tr> </tbody> </table> <p>*전기통신업, 인쇄물 출판업 등 75%</p>	구분	공제율 (중소)	상시근로자(2년)	50%*	청년, 경력단절여성(2년)	100%																																										
구분	공제율 (중소)																																															
상시근로자(2년)	50%*																																															
청년, 경력단절여성(2년)	100%																																															
<p>(적용기한) - 고용증대: 2024.12.31. - 경력단절여성 등: 2022.12.31. - 정규직전환: 2022.12.31. - 사회보험료: 2024.12.31.</p>	<p>(적용기한) - 2025.12.31. - 단, 정규직전환은 2023.12.31.</p>																																															

주요 내용	현행	개정
중소기업 지원·상생협력 강화		
50%한도 기부금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추가 (법인세법 제24조)	(50%한도 기부금 대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무상기증, 국군장병 위문금품, 이재민 구호금품, 학교·병원, 공익법인 등 기부금	(50%한도 기부금 대상) - (현행) -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기부금
중소기업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기준금액 확대(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 중간예납세액 30만원 미만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조특법 제7조)	(대상) - 수도권: 소기업, 중기업(자식기반산업) - 비수도권: 소기업, 중기업 (적용기한) - 2022.12.31.	(대상) - 수도권: 소기업, 중기업 - 비수도권: 소기업, 중기업 (적용기한) - 2025.12.31. (알뜰주유소 특례감면율, ~'23년) - 소기업: 10 → 20% - 중기업(비수도권): 5 → 15% - 중기업(수도권): 0 → 10%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7조의4)	(적용기한) 2022.12.31.	(적용기한) 2025.12.31.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8조의3 제1항)	(적용기한) 2022.12.31.	(적용기한) 2025.12.31.
협력중소기업 자산무상임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8조의3 제2항)	(적용기한) 2022.12.31.	(적용기한) 2025.12.31.
위탁기업의 수탁기업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8조의3 제3항)	(적용기한) 2022.12.31.	(적용기한) 2025.12.31.
중고자산 교육기관 기증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제8조의3 제4항 신설)	(신설)	(대상) - 중고자산의 교육기관 기증 (공제율) - 해당자산 시가의 10% (적용기한) - 2025.12.31.

주요 내용	현행	개정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72조)	(적용기한) 2022.12.31.	(적용기한) 2025.12.31.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제74조)	(적용대상) -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도서관· 박물관·미술관·연금공단 등 (적용기한) - 2022.12.31.	(적용대상) - (현행)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 단체 (적용기한) - 2025.12.31.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제85조의6 제1항)	(적용기한) 2022.12.31.	(적용기한) 2025.12.31.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제85조의6 제2항)	(적용기한) 2022.12.31.	(적용기한) 2025.12.31.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기한 연장 등 (조특법 제100조의32)	(적용대상) - 자기자본 500억초과 일반법인 (적용기한) - 2022.12.31.	(적용대상) - 자기자본 500억초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적용기한) - 2025.12.31.
지역경제 활성화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특례(조특법 제60조)	(적용대상) - 대도시 밖으로 공장 이전 시 (적용기한) - 2022.12.31.	(적용대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등 밖으로 공장 이전 시 (적용기한) - 2025.12.31.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밖 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특례(조특 법 제61조)	(적용기한) 2022.12.31.	(적용기한) 2025.12.31.
지방이전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63조 및 제62조의2)	(감면율) - 기본: 7년 100% + 3년 50% - 지방광역시·대도시 등 : 5년 100% + 2년 50% (적용기한) - 2022.12.31.	(감면율) - 기본, 지방광역시 등 소재 위기지역* : 7년 100% + 3년 50% - 지방광역시·대도시 등 : 5년 100% + 2년 50% - 위기지역* : 10년 100% + 2년 50% *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 (적용기한) - 2025.12.31.

주요 내용	현행	개정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85조의8)	(적용기한) 2022.12.31.	(적용기한) 2025.12.31.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신설(조특법 제121조의33 신설)	(신설)	(대상기업) -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 (감면율) - 3년간 100%, 2년간 50% (적용기한) - 2025.12.31.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협력 강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익금불산입 범위 조정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신설)	(감액배당 익금불산입 한도) -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 사유 명확화(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 사유) - 해산, 고유목적사업 전부 폐지 - 승인 취소 - 고유목적사업 등에 5년 내 미사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 사유) - (현행) -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비영업 대금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 (법인세법 제73조)	(적용세율) - 25%	(적용세율) - 14%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신설(법인세법 제94조의2)	(제출자료) - 기본사항, 국내거래처 현황 등	(제출자료) - (현행) -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등 적용절차 보완(법인세법 제98조의4 및 제98조의6)	(외국법인 조세특례 적용 절차) - 외국법인의 소득지급자는 신청서 제출의무	(외국법인 조세특례 적용 절차) - 신청서와 함께 실질거주자 증명서류 제출의무 추가 - 소득지급자는 미비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 가능 - 신청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세액 징수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의무 부과 신설 (법인세법 제120조의4 신설)	(신설)	(대상) - 가상자산사업자 (제출자료) -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제출기한) - 거래발생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주요 내용	현행	개정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종료사유 명확화(조특법 제12조의2)	(신설)	(감면종료 사유) - 첨단기술기업 지정 및 연구소기업 등록 취소 등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 배분 시 수동적동업자 예외 추가 (조특법 제100조의18 제3항)	(수동적동업자의 예외) - 우리나라와 조세조약 체결국에 설립된 연금금 등	(수동적동업자의 예외)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동적동업자
기타		
기부금 명칭 설정 (법인세법 제24조)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기부금(50%한도)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 기부금(10%한도)	- 특례기부금 - 일반기부금
접대비 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 (법인세법 제25조)	- 접대비	- 기업업무추진비
IFRS17도입 보험회사에 대한 과세특례(법인세법 제32조 및 제42조의3 등)	(신설)	(IFRS17 적용 보험회사 최초 택1) - 회계기준 전환이익 과세특례 : 4년 거치 3년 균등 익금산입 -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산입 : 준비금 적립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적용시기) - 2022년 사업연도부터 적용
부동산임대업 등 사업부분의 물적분할 관련 규정 명확화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시 적격분할 간주 요건) - 인적분할 관련 규정 인용 (제46조 제2항)	(물적분할시 적격분할 간주 요건) - 인적분할 관련 규정 인용 (제46조 제2항 및 제3항)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초과배당액 이월공제 신설 (법인세법 제51조의2)	(신설)	- 초과배당액 5년간 이월공제
외국법인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법인세법 제93조의3 신설)	(신설)	- 외국법인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일반R&D 비용 증가분 계산방법 명확화 (조특법 제10조 제1항)	(일반R&D 증가분) - 4년간 R&D 연평균 발생액	(일반R&D 증가분) - 직전 과세연도 및 4년간 R&D 연평균 발생액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전자상거래로 공급받는 석유제품 공급가액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조특법 제104조의25)	(공제액) - 석유제품 공급가액 × 0.2% (적용기한) - 2022.12.31.	(공제액) - 석유제품 공급가액 × 0.3% (적용기한) - 2025.12.31.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104조의30)	(적용기한) 2022.12.31.	(적용기한) 2025.12.3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이월공제 신설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104조의31)	(이월공제) - (신설) (적용기한) - 2022.12.31.	(이월공제) - 초과배당액 5년간 이월공제 (적용기한) - 2025.12.31.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136조 제3항)	(적용기한) 2022.12.31.	(적용기한) 2025.12.31.

주: '조특법'은 「조세특례제한법」을 의미

4

자산세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자산세 분야)

가. 총 괄

- 자산세제 관련 개정은 가업승계세제 및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에 중점
 - 기업의 투자·고용유인 제고를 위한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 확대 등’,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영농상속공제’ 등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
 - 가업승계세제의 요건을 완화하여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편
 - 또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및 과세표준 구간·세율 조정’,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납부유예 도입’ 등 주택 보유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 이루어짐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상향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등 주택분 납세 의무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진행
 -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폐지 등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찬·반 이견이 있었으나, 다주택자 중과대상을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3주택자부터 적용하는 수정안으로 합의
- 그 외에도 자산세제 합리화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 ‘일감몰아주기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과세 방법 합리화’ 등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체계 합리화
 - 공익법인 지정 감사인이 회계감사의무를 미이행할 시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세법개정

나. 주요 논의 사항

(1) 가업승계세제 확대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등의 적용대상·공제한도 확대 및 사후관리 요건 완화
 - 개정취지: 가업승계세제의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 등의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

투자·고용유인 제고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 또는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표 57] 기업승계세제 확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기업상속공제					
구분	현행	홍석준 의원안	정부안	개정	
적용 대상	- 피상속인: · 10년 이상 계속경영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매출액 4천억원 미만	- 피상속인: · 5년 이상 계속경영	- 피상속인: · 10년 이상 계속경영 - 중견기업 매출액 1조원 미만	- 피상속인: · 10년 이상 계속경영 - 중견기업 매출액 5천억원 미만	
공제 한도	- 기업영위기간별 · 10~20년: 200억원 · 20~30년: 300억원 · 30년 이상: 500억원	- 기업영위기간별 · 5~20년: 200억원 · 20~30년: 300억원 · 30년 이상: 500억원	- 기업영위기간별 · 10~20년: 400억원 · 20~30년: 600억원 · 30년 이상: 1,000억원	- 기업영위기간별 · 10~20년: 300억원 · 20~30년: 400억원 · 30년 이상: 600억원	
사후 관리	- 사후관리 기간 7년 - 고용유지 · 매년 정규직 근로자 수 및 총급여액 80% 이상 · 7년 평균 정규직 근로자수 및 총급여액 100%이상 - 자산유지: 80%	- 사후관리 기간 5년 · 매년 유지요건 삭제 · 5년 평균 정규직 근로자수 및 총급여액 80% 이상 - 자산유지: 50%	- 사후관리 기간 5년 · 매년 유지요건 삭제 · 5년 평균 정규직 근로자수 및 총급여액 90% 이상 - 자산유지: 60%	- 사후관리 기간 5년 · 매년 유지요건 삭제 · 5년 평균 정규직 근로자수 및 총급여액 90% 이상 - 자산유지: 60%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현행	홍석준 의원안	권성동 의원안	정부안	개정
적용 대상	- 증여자: 60세 이상 부모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매출액 4천억원 미만	- 증여자: 60세 이상 부모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매출액 4천억원 미만	- 증여자: 60세 이상 직계존속	- 증여자: 60세 이상 부모 - 중견기업 매출액 1조원 미만	- 증여자: 60세 이상 부모 - 중견기업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증여 재산	- 주식·출자지분	- 주식·출자지분	- 주식·출자지분 - 토지, 건축물	- 주식·출자지분	- 주식·출자지분
과세 특례	- 증여세 과세 가액 10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10~20% 세율 적용	- 증여세 과세 가액 50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10% 세율 적용	- 증여세 과세 가액 50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10% 세율 적용	- 기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1천억원 한도로 10억원 공제 후 10~20% 세율 적용	- 기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 한도로 10억원 공제 후 10~20% 세율 적용
사후 관리	- 사후관리 7년	- 사후관리 7년	- 사후관리 7년	- 사후관리 5년	- 사후관리 5년

가업승계시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유예			
	현행	정부안	개정
상속	(신설)	-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이 기업용 자산을 양도·상속·증여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유예	(정부안)
증여	(신설)	-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이 기업주식을 양도·상속·증여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유예	(정부안)

□ 최근 개정 연혁

- 가업상속공제는 최근 10년간 적용대상·공제한도액 확대와 사후관리 요건 완화를 중심으로 개정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2007년 도입되어 2015년 이후 적용대상 및 공제액이 확대

[표 58] 가업승계세제 개정 연혁

가업상속공제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1년	2013년	2014년	2018년	2022년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만 가능			1,500억원 이하	2천억원 이하	3천억원 미만	4천억원 미만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1억원	30억원	10~15년: 60억원 15~20년: 80억원 20년 이상: 100억원	10~15년 : 100억원 15~20년: 150억원 20년 이상: 300억원	10~15년 : 200억원 15~20년: 300억원 20년 이상: 500억원	10~20년: 200억원 20~30년: 3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		
사후관리 기간	~2007년 5년	2008년 ~ 2019년 10년					2020년 ~ 7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1년	2013년	2014년	2018년	2022년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만 가능			1,500억원 이하	2천억원 이하	3천억원 미만	4천억원 미만	
증여가액	~ 2014년 30억원 한도						2015년 ~ 100억원 한도	
세율	10%						과세표준 30억 이하 : 10% 과세표준 30억 초과 : 30%	
사후관리기간	10년						7년	

- 세수효과
 - 추정근란
 - 추계 기간의 가업승계세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 확대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근란
- 주요 논의 사항
 -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해 경제활성화, 투자·고용유인 효과 제고를 위해 가업승계세제 확대 및 사후관리 요건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정부안과 의원안을 병합 심사
 - 가업승계세제의 요건이 엄격하여 원활한 가업승계의 장애가 되고 있어 요건 완화를 통해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자는 취지
 - 정부안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 및 공제액의 급격한 확대는 가업승계라는 본래의 도입취지에 반하며, 부의 무상이전에 따른 조세회피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며 찬반의견이 대립
 - 여·야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 매출액 4천억원 미만에서 5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한도액은 최대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사후관리 기간은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수정안으로 합의 의결

(2) 일감몰아주기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이익의 사업부문별 과세를 허용
 - 개정취지: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이익을 증여의제이익에서 제외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제의 합리화 도모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이후 적용

[표 59] 일감몰아주기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현 행	추경호·윤후덕 의원안, 정부안	개 정
신설	사업부문별 회계 구분 등 요건 충족시 사업부문 별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및 세후영업이익계산 가능	사업부문별 회계 구분 등 요건 충족시 사업부문 별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및 세후영업이익계산 가능

- 세수효과
 - 추정근란
 - 추계 기간의 일감몰아주기 사업부문별 증여의제 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근란
- 주요 논의 사항
 -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라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이익을 증여의제이익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부안으로 의결
 - 그러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은 전체의 71%가 대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으로 이를 사업부문별로 축소시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는 문제도 제기

(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및 과세표준, 세율 조정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조정 및 세율 인하
 - 개정취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완화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표 60]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현 행	김영진 의원안	서영교 의원안	김성환 의원안
납세 의무자 요건	(신설)	- 일반: 11억원 - 1세대 1주택자: 11억원 - 공동명의 1주택자: 6억원 - 법인: 3억원	- 일반: 11억원 - 1세대 1주택자: 11억원 - 공동명의 1주택자: 5.5억원 - 법인: 3억원	- 일반: 11억원 - 1세대 1주택자: 11억원 - 공동명의 1주택자: 6억원 - 법인: 없음
기본 공제금액	(일반) 6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원 (법인) 없음	(일반) 6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원 (법인) 없음	(일반) 6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원 (법인) 없음	(일반) 6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원 (법인) 없음

	박성준 의원안	정부안	개 정
납세 의무자 요건	-	-	- 납세의무자 요건 현행 유지
기본 공제금액	(일반) 6억원 (1세대 1주택자) 15억원 (법인) 없음	(일반)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 (법인) 없음	(일반)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 (법인) 없음

[표 6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세율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현 행	김성환 의원안	정부안	개 정
과세표준 및 세율	(개인, 2주택 이하)	(개인, 2주택 이하)	(개인)	(개인, 2주택 이하)
	과세표준	과세표준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세율	세율	세율
	3억원 이하	3억원 이하	3억원 이하	3억원 이하
	0.6%	0.6%	0.5%	0.5%
	6억원 이하	6억원 이하	6억원 이하	6억원 이하
	0.8%	0.8%	0.7%	0.7%
	12억원 이하	12억원 이하	12억원 이하	12억원 이하
	1.2%	1.2%	1.0%	1.0%
	5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25억원 이하	25억원 이하
1.6%	1.6%	1.3%	1.3%	
94억원 이하	94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2.2%	2.2%	1.5%	1.5%	
94억원 초과	9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94억원 이하	
3.0%	3.0%	2.0%	2.0%	
		94억원 초과	94억원 초과	
		2.7%	2.7%	
		*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개인, 3주택 이상 ¹⁾)	(개인, 3주택 이상 ¹⁾)	(개인, 3주택 이상)	
과세표준	과세표준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세율	세율	세율	
3억원 이하	3억원 이하	3억원 이하	3억원 이하	
1.2%	0.6%	0.5%	0.5%	
6억원 이하	6억원 이하	6억원 이하	6억원 이하	
1.6%	0.8%	0.7%	0.7%	
12억원 이하	12억원 이하	12억원 이하	12억원 이하	
2.2%	2.2%	1.0%	1.0%	
5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25억원 이하	25억원 이하	
3.6%	3.6%	2.0%	2.0%	
94억원 이하	94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5.0%	5.0%	3.0%	3.0%	
94억원 초과	9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94억원 이하	
6.0%	6.0%	4.0%	4.0%	
		94억원 초과	94억원 초과	
		5.0%	5.0%	
	(법인, 2주택 이하)	(법인, 2주택 이하)	(법인, 2주택 이하)	
3.0%	3.0%	2.7%	2.7%	
(법인, 3주택 이상 ¹⁾)	(법인, 3주택 이상 ¹⁾)	*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법인, 3주택 이상)	
6.0%	6.0%		5.0%	

주: 1)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를 포함

□ 최근 개정 연혁

- 2018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도입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포함한 3주택 이상 보유 다주택자에게 기본세율 (0.5~2.7%) 대비 0.1~0.5%p 높은 중과세율(0.6~3.2%) 적용
- 2020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금액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금액은 2008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 다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금액의 경우 2005년 개정 이후 6억원 유지
- 2020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 (개인, 2주택 이하) 0.5~2.7% → 0.6~3.0%
 - (개인, 3주택 이상) 0.6~3.2% → 1.2~6.0%
 - (법인, 2주택 이하) 0.5~2.7% → 3.0% (단일세율)
 - (법인, 3주택 이상) 0.6~3.2% → 6.0% (단일세율)

□ 세수효과

- (2023년) -7,737억원 (연평균) -1조 1,202억원 (2023~2027년) -5조 6,009억원

□ 주요 논의 사항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완화를 위해 발의된 다수의 의원안과 정부안을 병합하여 심사
- 주택 공시가격 상승을 고려할 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하였으나, 세부담 완화 정도에 대한 이견도 존재
- 기획재정위원회 심사기간 도과후 여·야 합의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전체에 대한 기본공제금액을 상향하고 세율을 인하하되, 중과대상인 다주택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중과세율을 완화하는 수정안으로 의결
 - 중과대상인 다주택자의 범위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 보유자에서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3주택 이상 보유자로 축소
 - 과세표준 12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며, 세율은 현행(2.2~6.0%) 대비 0.2~1.0%p 낮게 설정(2.0~5.0%)

(4) 증권거래세율 인하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증권거래세율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시행령)¹⁹⁾
 - 2023년: 코스피 0.05%, 코스닥 0.20%
 - 2024년: 코스피 0.03%, 코스닥 0.18%
 - 2025년 이후: 코스피 0, 코스닥 0.15%

19)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표 62] 증권거래세율 인하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단위: %)

구분	현행		정부안		개정		
	2022년	2023년 이후	2023~2024년	2025년 이후	2023년	2024년	2025년 이후
코스피	0.08	0	0.05	0	0.05	0.03	0
코스닥	0.23	0.15	0.20	0.15	0.20	0.18	0.15

□ 최근 개정 연혁

- 2019년 코스피 및 코스닥 세율을 0.5%p 인하하고, 2020년 그 외 세목의 세율을 0.5%p 인하
- 2020년 개정으로 2021~2022년 기간 한시적으로 코스피 0.08%, 코스닥 0.23% 수준으로 세율을 적용하고, 이후 코스피 0, 코스닥 0.15%으로 변경

[표 63] 증권거래세율 변화 추이

(단위: %)

구분	2013.8.29.~ 2019.6.2.	2019.6.3.~ 2020.3.31.	2020.4.1.~ 2020.12.31.	2021.1.1.~
코스피 ¹⁾	0.15	0.10	0.10	0.08
코스닥	0.30	0.25	0.25	0.23
코넥스	0.30	0.10	0.10	0.10
그 외	0.50	0.50	0.45	0.43

주: 1) 코스피 주권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0.15%)를 과세하고 있음

2) K-OTC 주권의 세율은 0.5%에서 2017년 4월 1일부터 0.3%로 변경

□ 세수효과

- (2023년) -8,731억원 (연평균) -21,879억원 (2023~2027년) -109,395억원

□ 주요 논의 사항

- 최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및 투자심리 악화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코스피 및 코스닥 주권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을 2023년 0.03%p, 2024년 추가로 0.02%p 인하하는 내용의 수정안에 대하여 합의
 - 정부안은 2023~2024년 2년간 증권거래세율을 0.03%p 인하하는 동시에,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고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임

- 증권거래세율 인하안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안과 함께 논의되었으며, 증권거래세율 인하 수준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 제기
 -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효과는 대주주에 한하여 과세하는 양도소득세보다 모든 주권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되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것이 보다 직접적이므로, 증권거래세율 인하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
 - 증권거래세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및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도 과세되므로 과세체계 합리화 및 세원 확보 측면에서 과도한 세율 인하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

[표 64] 자산세제 개정 내용

주요 내용	현행	개정
기업승계지원		
기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 확대 등 (상증법 제18조)	(적용대상) - 중견기업 매출액 4천억원 미만 (공제한도) - 기업영위 기간별 공제한도 · 10~20년: 200억원 · 20~30년: 300억원 · 30년 이상: 500억원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 7년 - 고용유지 · 매년 정규직 근로자 수 및 총급여액 80% 이상 · 7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 및 총급여액 100% 이상 - 자산유지: 80%	(적용대상) - 중견기업 매출액 5천억원 미만 (공제한도) - 기업영위 기간별 공제한도 · 10~20년: 300억원 · 20~30년: 400억원 · 30년 이상: 600억원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 5년 - 고용유지 · 매년 유지 요건 폐지 · 7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 및 총급여액 90% 이상 - 자산유지: 60%
영농상속공제 (상증법 제18조의3)	(공제한도) - 20억원 (영농상속공제 배제 사유) - (신설)	(공제한도) - 30억원 (영농상속공제 배제 사유)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탈세·회계부정으로 징역형·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배제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조특법 제71조)	(적용기한) 2022.12.31.	(적용기한) 2025.12.31.

주요 내용	현행	개정
가업상속 연부연납 (상증법 제71조)	(연부연납 기간) - 가업상속재산 비율 · 50% 미만: 10년 또는 3년 거치 후 7년 · 50% 이상: 20년 또는 5년 거치 후 15년	(연부연납 기간) - 가업상속재산 비율과 상관없이 20년 또는 10년 거치 후 10년
가업승계시 납부유예 (상증법 제72조의2, 조특법 제30조의7)	(신설)	- 가업승계세제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의 가업용 자산을 양도·상속·증여 시점까지 상속세(증여세) 납부유예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상증법 제63조)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적용제외) -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주식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적용제외) -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 주식
창업자금 등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및 창업 인정범의 확대(조특법 제30조의5)	(창업자금 적용 한도) - 증여세 과세가격 30억원 한도 · 10명 이상 신규 고용시 50억원 (창업 제외 대상) - 신설	(창업자금 적용 한도) - 증여세 과세가격 50억원 한도 · 10명 이상 신규 고용시 100억원 (창업 제외 대상) -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종사업 영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법 제30조의6)	(적용대상) - 중견기업 매출액 4천억원 미만 (과세특례) - 증여세 과세금액 10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10~20% 세율 적용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 7년	(적용대상) - 중견기업 매출액 5천억원 미만 (과세특례) -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10억원 공제 후 10~20% 세율 적용 · 10~20년: 300억원 · 20~30년: 400억원 · 30년 이상: 600억원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 5년
재산과세 합리화 및 조세회피 방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범위 조정(상증법 제45조의3)	(과세범위) - 기업별 과세	(과세범위) -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상증법 제12조, 제74조)	(과세범위) - 국가지정문화재 비과세	(과세범위) - 국가지정문화재 과세로 전환하고 유상 양도시까지 징수유예 - 징수유예시 납세담보 제공(면제허용), 납세담보 면제자 신고 의무 부과

주요 내용	현행	개정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 확대 (상증법 제20조)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 공제 대상) - 태아 제외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 공제 대상) - 태아 포함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오류 등 시정요구 기관 합리화(상증법 제50조의3)	(공시 및 시정 요구기관) - 국세청장	(공시 및 시정 요구기관) - 국세청장 -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공익법인 지정 감사인 회계감사의무 미이행 가산세(상증법 제78조)	(신설)	- 공익법인 지정 감사인 회계감사의무 미이행 가산세 · (사업연도 수입금액+출연받은 재산가액)×0.07
재산과세 세부담 완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및 과세표준 구간, 서울 조정(종부세법 제7조, 제8조, 제9조)	(기본공제금액) - 일반: 6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원 - 법인: 없음 (서울) - 개인: (2주택 이하) 0.6~3.0% (3주택 이상*) 1.2~6.0% - 법인: (2주택 이하) 3.0% (3주택 이상*) 6.0%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포함	(기본공제금액) - 일반: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 - 법인: (현행) (서울) - 개인: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5~5.0% - 법인: (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0%
일시적2주택·상속주택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납부유예 도입(종부세법 제8조, 제9조, 제17조, 제20조의2)	(신설)	- 일시적2주택·상속주택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납부유예 도입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조정(종부세법 제10조, 제15조)	(세부담 상한) - 주택: (2주택 이하) 150% (3주택 이상) 300% - 토지: 150%	(세부담 상한) - 주택: 150% - 토지: (현행)
기타		
증권거래세율 인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2022년 → 2023년 이후 - 코스피: 0.08 → 0% - 코스닥: 0.23 → 0.15%	2022년→2023년→2024년 - 코스피: 0.08→0.05→0.03% - 코스닥: 0.23→0.20→0.18%

주: '상증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부세법'은 「종합부동산세법」, '조특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의미

5 소비세제(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비세 분야 등)

가. 총괄

- 소비세제 관련 개정은 업종별 영세사업자 지원 및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제·감면제도 적용기한 연장 및 신설, 그 밖에 조세제도 정비에 중점
 - 부가가치세 영세율·면제, 개별소비세 감면 등 각종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거나 삭제하고, 도입 취지를 달성한 개별소비세 면제 종료 등 제도 정비 병행
 -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상향 및 계약상이물품 등의 환급요건 완화 등
- 소비세제 관련 주요 공제·감면 등 조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삭제 등
 -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연장, 농어업용 기자재 공급에 대한 영세율 및 수입에 대한 면제, 시내·마을버스용 전기버스 및 수소버스에 대한 면제 등 적용기한 3년 연장
 - 농민·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농민·임업인 지원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의 취지로 발의된 의원안을 반영하여 적용기한 3년 연장
 - 다자녀가구 구입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및 실내 도서열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신설
- 그 밖에 납세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탁주와 맥주의 세율 계산 시 가격변동지수 반영 등 조세제도 정비사항
 - 세관장이 과세표준·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결정·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원칙적 발급, 예외적 미발급
 - 탁주와 맥주의 세율 계산식에 직전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 대신 가격변동지수 반영
 -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국내에 의무 적용되는 2023년 이전에 임의 적용한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개정 제도의 시행 이후 교육세를 신고하는 과세기간부터 새로운 과세표준 적용
 - 기업의 세부담 경감 등을 위한 관세 적용환율 변경,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 횟수 확대 등 관세제도 정비

나. 주요 논의 사항

(1)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세관장이 과세표준·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과세표준·세액이 결정·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원칙적으로 발급하되, 예외적인 경우 미발급하도록 함
 - (현행) 단순 착오·경과실 등 외 원칙적 미발급(수입자 입증)
 - (개정) 관세형벌, 부당한 과소신고, 중대한 잘못 외 원칙적 발급
- 개정취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이후 결정·경정하거나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표 65]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현행	정부안	개정
발급 사유	세관장이 결정·경정하는 경우 또는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입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관세품목분류협의회 등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②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 ③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세관장이 결정·경정하는 경우 또는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입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등), 제270조의2(가격조작죄), 제276조(허위신고죄)를 위반하여 고발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② 부당한 방법으로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③ 수입자가 이미 통지받은 바 있는 오류를 반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정부안)

□ 최근 개정 연혁

- 2013년 7월 탈루부가세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제도 도입
 - 품목분류 변경,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단순 착오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 원칙적으로 미발급
- 2017년 예외적 발급 사유 확대: 수입자의 단순 착오 → 수입자의 단순 착오 또는 경과실
- 2020년 및 2021년 ‘원칙적 발급, 예외적 미발급’으로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미반영

□ 세수효과

- 추정곤란
 - 법 시행 이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및 금액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 곤란

□ 주요 논의 사항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및 자료제출 비협조에 대한 세관당국의 대응수단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2021년 「관세법」 개정으로 다국적기업이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자료 미제출·거짓 제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미이행할 경우 추가 과태료(최대 2억원)를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하였으나, 추가 과태료의 적정 수준 및 그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2) 간이과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간이과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하여 건당 200원(연 1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 신설(적용기한: 2024.12.31.)
- 개정취지: 간이과세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유인 제공
- 시행일: 2023년 7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표 66] 간이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 세액공제 신설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분	현행	정부안	개정
간이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신설)	- 공제액: 건당 200원 (연 100만원 한도) - 적용기한: 2024.12.31.	(정부안)

□ 최근 개정 연혁

- 2021년 일반과세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대상: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 건당 200원, 공제한도 연간 100만원
 - 적용기한: 2024.12.31.

□ 세수효과

- (2023년) -3억원 (연평균) -3억원 (2023~2024년) -6억원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실적은 2021년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되, 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 인원은 최근 개인사업자 인원의 증감률을 반영한 수준을 전제하여 추정

□ 주요 논의 사항

- 간이과세자 범위 확대에 따라 일부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되었으므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도 세액공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하여 정부안대로 의결
- 다만, 적용기한을 일반과세자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2024.12.31.)과 동일하게 할 경우 특례 적용기간이 일반과세자보다 1년 짧다는 점에 대한 이견 존재

(3) 다자녀가구 구입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다자녀가구가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 면제(300만원 한도)
- 개정취지: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이후 판매분부터 적용

[표 67] 다자녀가구 구입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분	현행	정부안	개정
면세 승용 자동차범위	(추가)	(다자녀가구 구입 차량) - (대상)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 - (한도) 300만원	(정부안)

□ 세수효과

- (2023년) -663억원 (연평균) -663억원 (2023~2027년) -3,317억원

□ 주요 논의 사항

- 다자녀 가구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다자녀 가구가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 면제 필요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하며 정부안대로 의결
- 3자녀 이상 가구 비중(7.4%)이 미미한 실정을 감안하여, 실질적 효과가 작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2자녀 이상 가구부터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
 - 다만, 탄소중립의 관점에서 차량구입에 대한 지원을 제외한 다른 방면에서의 세 제지원 필요성도 논의

(4) 맥주 등의 주세 세율 계산식에 가격변동지수 반영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맥주 및 탁주의 주세 세율 계산식에 가격변동지수(직전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70~130% 범위) 반영
- 개정취지: 종가세가 적용되는 주류와의 과세형평성 제고
- 시행일: 2023년 4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표 68] 맥주 등의 주세 세율 계산식에 대한 가격변동지수 반영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현 행	정부안	개 정
- 세율 계산식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세율 $\times(1+\text{직전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세율 $\times(1+\text{가격변동지수}^*)$ * 직전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 의 50~150%의 한도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세율 $\times(1+\text{가격변동지수}^*)$ * 직전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 의 70~130%의 한도

□ 최근 개정 연혁

- 2019년 맥주·탁주에 대한 주세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동시에, 세율은 직전연도 말일 기준세율에 통계청장이 발표하는 직전연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개정

□ 세수효과

- (2023년) -212억원 (연평균) -328억원 (2023~2027년) -1,638억원

□ 주요 논의 사항

- 정부안의 가격변동지수 범위는 직전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50%(50~150%) 였으나, 시행령에 위임할 수 있는 세율 조정 범위의 합리적 수준 등을 감안하여 ±30%(70~130%)의 수정안으로 의결
- 다만, 실질적인 세율 조정을 시행령에 위임하기보다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기

(5) 관세 부과시의 과세환율 변경²⁰⁾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관세 부과시 과세환율을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재정환율로 변경
- 개정취지: 원자재 및 제품 수입 가격 상승에 따른 기업 부담 경감
- 시행일: 공포(2022.9.15.) 후 첫 번째 일요일부터 시행

[표 69] 관세 부과 시 과세환율 변경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현 행	정성호·류성걸 의원안	개 정
과세환율	외국환매도율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세수효과

- (2023년) -879억원 (연평균) -924억원 (2023~2027년) -4,622억원

□ 주요 논의 사항

- 최근 원자재·제품 수입 가격 상승에 따른 기업의 부담 경감을 고려하여 과세환율 인하 필요성을 감안하여 과세환율을 기준환율·재정환율로 변경하는 의원안에 합의
- 다만,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기준환율은 특수한 경우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외국환거래법」을 인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개정하는 것으로 결정

20) 2022년 정기국회 이전에 의결된 「관세법」 개정안(기획재정부위원장 대안, 의안번호: 2117264, 발의일자: '22.9.6., 의결일자: '22.9.7.)

(6)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업자의 과세표준 정비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관련 보험료에서 공제되는 항목을 변경하고 수익금액의 귀속시기를 별도 규정
 - 보험료 공제항목: (기존)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 (개정) 보험계약의 만기·해지 및 보험사고 등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하여 적립되는 금액
 - 수익금액 귀속시기: 기존에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만 준용하였으나 「소득세법」 제39조를 추가적으로 준용하는 한편, 예외적으로 미경과 보험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의 귀속시기에 대해서는 동 보험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규정
- 개정취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수익·비용에 대한 인식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되는 교육세 과세표준 정비
 -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따라 보험회사 손금산입 적용대상에서 책임준비금은 제외하는 대신, 해약환급준비금을 신설하는 등으로 과세체계를 변경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전제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하되, 2023년 이전에 임의 적용한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개정 제도의 시행 이후 교육세를 신고하는 과세기간부터 새 과세표준을 적용

[표 70]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업자의 과세표준 정비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구분	현행	조해진 의원안	정부안	개정
비용인정 항목	-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	- 비상위험준비금과 재보험료	- 해약환급금준비금과 재보험료	- 해약환급금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과 재보험료
보험업자 수익금액 귀속시기	- 보험료 수입은 현금주의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 - (추가)	- 보험료 수입은 현금주의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 - 새로운 IFRS17 도입에 대응하여 보험료 수입의 귀속 시기를 발생주의 허용	- 보험료 수입은 현금주의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 - 새로운 IFRS17 도입에 대응하여 보험료 수입의 귀속 시기를 발생주의 허용	- 보험료 수입은 현금주의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 - 새로운 IFRS17 도입에 대응하여 보험료 수입의 귀속 시기를 발생주의 허용
새기준 조기적용 보험업자	(부칙 추가)	- 새로운 IFRS17 의무적용 이전에 조기에 적용한 보험업자의 경우에도 교육세를 신고하는 과세기간부터 새 과세표준 적용	-	- 새로운 IFRS17 의무적용 이전에 조기에 적용한 보험업자의 경우에도 교육세를 신고하는 과세기간부터 새 과세표준 적용

□ 주요 논의 사항

- 정부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하는 내용이었으나,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국내에 의무 적용되는 2023년 이전에 임의 적용한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개정 제도의 시행 이후 교육세를 신고하는 과세기간부터 새로운 과세표준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의원안과 함께 심사되어 수정 반영

[표 71] 소비과세 분야 개정 내용

주요 내용	현행	개정
조세제도 정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부가세법 제35조)	- 세관장이 결정·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결정·경정을 예측하고 미리 수정하는 경우 원칙적 미발급, 예외적 발급	- 원칙적 발급, 예외적 미발급
간이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부가세법 제63조제4항)	(신설)	- 간이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 공제액: 건당 200원 (연 100만원 한도) · 적용기한: 2024.12.31.
판매 또는 결제 대행·중개 자료제출 관련 시정명령 및 과태료 신설 (부가세법 제75조 및 제76조)	(신설)	- 판매 또는 결제 대행·중개 관련 자료 미제출 및 거짓제출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신설
탁주와 맥주의 세율 계산식에 가격변동지수 반영 (주세법 제8조)	(세율 계산식) - 직전연도 12.31. 기준세율 × (1+직전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	(세율 계산식) - 직전연도 12.31. 기준세율 × (1+가격변동지수*) * 직전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70~130%의 한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업자의 과세표준 정비 (교육세법 제5조제3항 및 제7조)	(보험료 공제항목) -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수익금액 귀속시기) - 현금주의	(보험료 공제항목) - 해약환급금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과 재보험료 (수익금액 귀속시기) - 국제회계기준(IFRS17) 적용 시 발생주의 허용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종료 (조특법 제111조의6)	(적용기한) 2022.12.31.	(적용기한) 종료
업종별 사업자 지원 및 소비자 부담 완화		
실내 도서열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세법 제26조제1항)	(면제대상) - 도서(도서대여 용역 포함)	(면제대상) - (현행) - 실내 도서열람 용역 포함

주요 내용	현행	개정
다자녀가구 구입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신설 (개소세법 제18조제1항제3호)	(신설)	- 다자녀가구 구입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 면제한도: 300만원
농어업용 기자재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연장 (조특법 제105조제1항)	(적용기한) 2022.12.31.	(적용기한) 2025.12.31.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등 면제 연장 (조특법 106조제1항제1호 및 제111조제1항)	(적용기한) 2022.12.31.	(적용기한) 2025.12.31.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조특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	(적용기한) 2022.12.31.	(적용기한) 2025.12.31.
온실가스 배출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조특법 제106조제1항제5호)	(적용기한) 2022.12.31.	(적용기한) 2025.12.31.
행복기숙사의 시설관리운영권 및 기숙사비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조특법 제106조제1항제8호의3)	(적용기한) 2022.12.31.	(적용기한) 2025.12.31.
시내·마을버스용 전기버스 및 수소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조특법 제106조제1항제9호의2)	(적용기한) 2022.12.31.	(적용기한) 2025.12.31.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조특법 제106조제1항제9호의3)	(적용기한) 2022.12.31.	(적용기한) 2025.12.31.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삭제 (조특법 제106조제1항제11호)	(적용기한) 2022.12.31.	(적용기한) 삭제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난방용 또는 농·임업용으로 공급하는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조특법 제106조제1항제12호)	(적용기한) 2022.12.31.	(적용기한) 2025.12.31.

주요 내용	현행	개정
농어업용 기자재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조특법 제106조제2항)	(적용기한) 2022.12.31.	(적용기한) 2025.12.31.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연장 (조특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	(적용기한) 2022.12.31.	(적용기한) 2025.12.31.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연장 (조특법 제107조의2)	(적용기한) 2022.12.31.	(적용기한) 2025.12.31.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연장 (조특법 제107조의3)	(적용기한) 2022.12.31.	(적용기한) 2025.12.31.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연장 (조특법 제108조제1항)	(적용기한) 2022.12.31.	(적용기한) 2025.12.31.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조특법 제109조)	(적용기한) 2022.12.31.	(적용기한) 2025.12.31.
유류세 환급 대상 확대를 위한 시행령 위임 규정 신설 (조특법 제111조의2)	(적용대상) - 승용차 및 승합차	(적용대상) - 화물차까지 확대* * 시행령 위임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연장 (조특법 제111조의5)	(적용기한) 2022.12.31.	(적용기한) 2025.12.31.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연장 (조특법 제126조의3제1항)	(적용기한) 2022.12.31.	(적용기한) 2025.12.31.
해저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기자재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조특법 제140조)	(적용기한) 2022.12.31.	(적용기한) 2025.12.31.
관세 관련		
기한의 특례 규정예 대체공휴일, 일요일 명확화 (관세법 제8조)	(신고, 신청 특례기한) -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은 그 다음날	(신고, 신청 특례기한) -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 근로자의 날은 그 다음날

주요 내용	현행	개정
<p>공시송달 대상 및 방법 구체화 (관세법 제11조)</p>	<p>(공시송달 대상) -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가 불분명한 경우</p> <p>(공시송달 방법) - 세관의 게시판 또는 적당한 장소</p>	<p>(공시송달 대상) - (현행) -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 납세의무자가 송달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p> <p>(공시송달 방법) - (현행) - 관세청 또는 세관의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적절한 장소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 관보 또는 일간신문 - 해당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자자체의 게시판이나 그 밖에 적절한 장소</p>
<p>특수관계 거래 시 증명자료 제출의 실효성 제고 (관세법 제37조의4, 제277조)</p>	<p>(세관장의 자료제출 요구) - 과세자료, 증명자료</p> <p>(수입물품의 신고가격 불인정 자료제출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기한 내 과세자료 및 증명자료 미제출 시</p> <p>(시정요구 대상) - 과세자료 미제출·거짓제출 시</p> <p>(과태료 부과 대상) - 과세자료 미제출·거짓제출 시: 1억원 이하 - 시정요구* 미이행 시: 2억원 이하 * 과세자료 미제출·거짓제출 시 시정요구 가능</p>	<p>(세관장의 자료제출 요구) - 과세자료, 증명자료(전산화 자료 등을 포함)</p> <p>(수입물품의 신고가격 불인정 자료제출 행위) - (현행) - 과세자료 및 증명자료 거짓제출 시</p> <p>(시정요구 대상) - 과세자료 및 증명자료의 미제출·거짓제출 시</p> <p>(과태료 부과 대상) - 과세자료 및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시: 1억원 이하 - 시정요구* 미이행 시: 2억원 이하 * 과세자료 및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시 시정요구 가능</p>
<p>경정청구 대상에 세액신고만 한 경우까지 포함 (관세법 제38조의3)</p>	<p>(경정청구 대상) -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 후 세액을 납부한 이후에만 경정청구 가능</p>	<p>(경정청구 대상) -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 후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도 경정청구 가능</p>
<p>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상향 (관세법 제96조제2항)</p>	<p>(관세경감액 한도) - 15만원</p>	<p>(관세경감액 한도) - 20만원</p>

주요 내용	현행	개정
계약상이물품 등 환급요건 완화 (관세법 제106조, 제106조의2)	(계약상이물품 환급 요건) - 외국에서 수입된 물품의 경우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한 경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환급 요건) -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수출신고가격 200만원(기획재정부령) 이하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한 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등	(계약상이물품 환급 요건) - 외국에서 수입된 물품의 경우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한 경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환급 요건) -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 (관세청장이 지정 하는 장소)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 (현행)
기업 등 납세의무자 동의 기반 과세정보 확대 및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관세법 제116조, 제277조의3)	(과세정보 제공가능 사유) - 국가기관이 관세에 관한 쟁송 등을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등	(과세정보 제공가능 사유) - (현행) -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은행 등이 수출입기업 지원 업무 및 급부·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한 자격의 조사·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 공공기관, 은행 등이 무역거래자의 거래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과세정보 보호조치 의무 부여) - 의무 위반 시 2천만원 이하 벌금
납세자보호위원회와 관세심사위원회 통합 운영 (관세법 제118조의4, 제124조)	(신설)	- 세관 및 관세청 소속 관세심사위원회를 세관 및 관세청 소속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 횟수 조정 (관세법 제176조의2)	- 특허기간: 5년 - 갱신횟수: 대기업 1회, 중소·중견 2회	- 특허기간: 10년 - 갱신횟수: 대기업 1회 → 2회

주요 내용	현행	개정
<p>국세 및 관세 등 체납자의 수입물품 압류 후 매각 근거 및 국고귀속 절차 마련 (관세법 제208조)</p>	<p>(매각 대상 수입물품) - 살아있는 동식물 -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 - 창고나 다른 물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게되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p> <p>(국고귀속 절차) - 화주 등에게 반출 통고 후 미반출 시 국고귀속</p>	<p>(매각 대상 수입물품) - (현행)</p> <p>- 국세, 관세 및 지방세의 강제징수 및 체납처분을 위해 세관장이 압류한 외국물품 (국고귀속 절차) - (현행)</p> <p>- 체납자에게 유찰물품 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1개월 내 관세 및 체납세액 총액으로 납부토록 통지 후 미이행시 국고귀속</p>
<p>한국원산지정보원 설립·출연 법적 근거 마련 (관세법 제233조의2)</p>	<p>(신설)</p>	<p>- 한국원산지정보원 설립·출연 법적 근거 마련</p>
<p>지식재산권 침해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 통관우체국 물품 추가 (관세법 제235조)</p>	<p>(지식재산권 침해 시 권리권자에게 통보하는 물품) - 수출입신고 물품 - 환적 또는 복합환적 신고물품 - 보세구역 반입신고 물품 - 보세운송신고 물품 - 일시양육신고 물품</p>	<p>(지식재산권 침해 시 권리권자에게 통보하는 물품 추가) - (현행)</p> <p>-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p>
<p>전자상거래물품 전용 통관절차 운영 근거 마련 등 (관세법 제2조, 제254조)</p>	<p>(신설)</p>	<p>- 국경 간 전자상거래 물품 정의 명확화 - 국경 간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거래정보 요청 근거 신설 - 국경 간 전자상거래물품 통관내역 안내 근거 마련</p>
<p>관세 회피 목적 타인 명의 사용 행위 처벌조항 신설 (관세법 제275조의3)</p>	<p>(처벌규정) - 관세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명의 대여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p>	<p>(처벌규정) - (현행)</p> <p>- 관세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p>

주요 내용	현행	개정
관세무역데이터 분석센터 설치 근거 신설 (관세법 제322조)	(신설)	- 관세무역데이터 분석센터 설치 근거 신설 등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의 제한 (관세법 제326조의2 신설)	(신설)	-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의 제한 요구 신설
국제규범 이행 및 수출입통관 편의를 위한 관세율표 개정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 혈액형 분류용 시약: 제3006호 - 연산 축전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수명이 끝난 연산 축전지의 기본 관세율: 8%	- 혈액형 분류용 시약: 제3822호 - 연산 축전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수명이 끝난 연산 축전지의 기본 관세율 폐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신청 기간 연장 (관세환급특별법 제14조)	(관세 환급신청 기간) - 수출신고 수리된 날부터 2년	(관세 환급신청 기간) - 수출신고 수리된 날부터 5년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금지사유 폐지 (관세환급특별법 제21조제4항)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금지) - ① 과세전통지, ② 관세조사 통지, ③ 관세법에 대한 조사 등을 시작한 경우	(삭제)

주: '부가세법'은 「부가가치세법」, '개소세법'은 「개별소비세법」, '조특법'은 「조세특례제한법」, '관세환급특별법'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의미

6 기타 세제(국제조세, 국제징수법 등)

가. 총괄

- (국제조세 분야) OECD/G20 모델규정에 따른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과세권 행사 문제 등을 고려하여 정부안대로 개정
 - 또한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 합리화’,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신설’ 등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정부안 및 의원안이 채택
- (국제징수 분야) 압류재산 공매 시 활용 가능한 행정정보 확대 등 국제징수 효율성과 합리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
- (기타 분야) 이 외에도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신설 및 통고처분 벌금상당액의 납부방법 규정 등 조세범 처벌절차를 명확화

나. 주요 논의 사항

(1)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글로벌 최저한세의 적용대상 및 과세체계
 - 적용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 상 매출액이 7.5억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그룹
 - 과세체계는 다국적기업그룹에 소속된 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을 산출한 후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금액을 추가세액으로 산출
 - 개정취지: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의 모델규정에 따라 글로벌 최저한세를 국내에 도입하여 2024년부터 과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중점 논의사항
 - 글로벌 최저한세제도를 입법화하지 않을 경우 동 세제에 대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는 문제 등을 감안하여 정부 개정안에 여·야 모두 이견 없이 합의
 - 글로벌 최저한세와 관련하여 동일한 내용의 규칙이 모든 국가에 일관되게 도입·시행되도록 함으로써 국가 간 세원이동을 통한 조세회피 가능성을 방지하고, 최저한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

- 만약 불일치하게 입법할 경우 해당 국가는 글로벌 최저한세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다른 국가가 대신 과세권을 행사하게 되므로 우리나라의 과세권 보호를 위해 개정 필요
-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의 모델규정을 입법화하는 조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후 시행령으로 구체적인 과세방안 마련

(2) 압류재산 공매 시 활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 확대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공매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를 「전자정부법」에 따른 공동이용에 근거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 개정취지: 공매절차의 효율화

□ 중점 논의사항

-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함으로써 부부공유의 동산·유가증권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파악하려는 입법조치로 정부 개정안에 여·야 모두 이견 없이 합의

[표 72] 기타 국세 개정 내용

주요 내용	현행	개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거래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범위 확대(제16조)	(국제거래 자료 제출의무) - 일정 거래금액 이하의 경우 다음의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면제 · 요약손익계산서 ·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국제거래 자료 제출의무) -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 면제 추가 · 요약손익계산서 ·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 국제거래명세서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 합리화(제28조, 제29조)	(금융·보험업에 대한 수동소득 예외) - (신설)	(금융·보험업에 대한 수동소득 예외) - 금융업·보험업에 속하는 특정외국법인이 해당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 및 채권의 매각손익
	(해외지주회사 특례 요건) - 사업연도 말 현재 자회사 주식을 보유	(해외지주회사 특례 요건) - 사업연도 말 현재 자회사 주식을 보유 요건 삭제

주요 내용	현행	개정
<p>혼성금융상품거래 자료제출의무 및 불이행 과태료 신설(제25조, 제88조)</p>	<p>(혼성금융상품거래 자료제출의무) - 혼성금융상품 거래를 하는 내국법인 확정신고시 이자비용명세서 제출(시행령)</p>	<p>(혼성금융상품거래 자료제출의무) - 혼성금융상품거래 자료제출의무 상향입법 - 혼성금융상품거래 자료제출 미이행 시 3천만원 과태료 부과</p>
<p>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신설(제34조의2)</p>	<p>(신설)</p>	<p>(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 - 해외단체를 통해 투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해외단체의 도관기업으로 볼 수 있음</p>
<p>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자료제출의무자 명확화(제58조)</p>	<p>(신설)</p>	<p>(해외현지법인 자료제출의무) - 해외현지법인 지분을 양도하거나 청산하여 해외직접투자자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연도까지 자료 제출</p>
<p>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제60조~제87조)</p>	<p>(신설)</p>	<p>(적용대상) - 연결매출액 7.5억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 (납세의무자) - 국내 구성기업 (글로벌최저한세 추가세액 계산) - 국가별로 구성기업 실효세율 계산 후 추가세액 산출 · 추가세액= 추가세액비율× 초과이익+당기추가세액 가산액-적격소재지추가세액 (소득산입규칙 및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 - 소득산입규칙: 최종모기업이 저세율구성기업의 추가세액 배분액 우선적 납부 - 소득산입보완규칙: 자회사 소재지국의 저세율 모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을 과세 (최소적용의 특례) - 특정국가의 추가세액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실효세율 미계산 · 특정국가: 평균 매출액 1천만 유로 미만·평균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결손이 1백만 유로 미만인 국가</p>

주요 내용	현행	개정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부과금액 산정방법 정비(제90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및 과소신고한 경우 해당 금액의 20% 이하 과태료 부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및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 대상 계좌별로 해당 금액의 20% 이하 과태료 부과
「국세징수법」		
압류재산 직접매각시 통지의무 신설(제66조)	(신설)	- 압류한 상장주식 및 가상자산의 직접 매각 시 매각 전 그 사실을 채납자 등에게 통지
압류재산 공매시 활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 확대(제66조의2)	(신설)	- 공매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부법」에 따라 공동이용 할 수 있음
공매 매각결정일일 연장(제72조)	- 매각결정일은 개찰일로부터 3일 이내로 정함	- 매각결정일은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함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 (제109조제2항)	(신설)	- 임차보증금이 일정규모 이상인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없이 미납국세 등 열람 가능
금융투자소득 관련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사용 근거 규정 마련 (제111조)	(신설)	- 금융투자소득 관련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사용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
「조세범 처벌절차법」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확대(제5조)	(신설)	- 조세범칙처분 없이 조세범칙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 그 종결에 관한 사항 규정
압수·수색영장의 사후발급 사유 합리화(제9조)	- 압수·수색영장 ·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 압수·수색영장 ·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통고처분 벌금상당액의 납부방법 규정(제15조)	(신설)	-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납부방법을 「국세징수법」상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방법 준용
통고처분의 공소시효 관련 효력 합리화(제16조)	- 공소시효의 중단 · 통고처분 시 공소시효 진행 중단	- 공소시효의 정지 · 통고처분 시 공소시효 진행 정지

2022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부 록
- 확정된 2023년 총수입
예산 및 변동 내용

1 2023년 총수입

- 2023년 총수입 예산은 정부안(625.9조원) 대비 2,580억원이 감액된 625.7조원으로 확정, 2022년 추경예산(609.1조원) 대비 16.6조원(2.7%)이 증가한 수준
 - 2023년 국세수입 예산은 400.5조원으로, 2022년 추경예산(396.6조원) 대비 3.8조원(1.0%) 증가
 - 임금 상승, 소비 증가 등으로 소득세, 부가가치세 증가가 예상되나, 금리 상승에 따른 자산시장 둔화로 자산관련 세수 감소가 예상되어 추경예산 대비 3.8조원(1.0%) 증가
 - 2023년 세외수입 예산은 25.0조원, 2022년 추경예산(28.3조원) 대비 3.4조원(-12.0%) 감소
 - 국제금리 상승으로 인한 한은잉여금 감소의 영향으로 추경예산 대비 3.4조원(-12.0%) 감소
 - 2023년 기금수입 예산은 200.3조원, 2022년 추경예산(184.1조원) 대비 16.2조원(8.8%) 증가
 - 가입자 소득증가에 따른 사회보장기여금 증가(5.4조원, 6.8%)와 자산운용수입 증가에 따른 재산수입 증가(4.4조원, 14.9%)등으로 추경예산 대비 16.2조원(8.8%) 증가

[표 73] 확정된 2023년 총수입 예산

(단위: 조원, %)

	2021 실적	2022		2023 확정 예산	추경 대비	
		본예산	추경			(%)
총수입	570.5	553.6	609.1	625.7	16.6	2.7
국세수입	344.1	343.4	396.6	400.5	3.8	1.0
세외수입	29.4	26.1	28.3	25.0	-3.4	-12.0
기금수입	171.0	184.1	184.1	200.3	16.2	8.8
- 사회보장기여금	77.0	80.7	80.7	86.1	5.4	6.8

주: 추경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2 정부안 대비 변동 내용

가. 총수입

- 2023년 총수입은 625조 6,751억원으로 당초 정부안(625조 9,331억원)에서 2,580억원 감액
 - 국세수입은 400조 4,570억원으로 당초 정부안과 동일
 - 세외수입은 24조 9,519억원으로 당초 정부안에 비해 2,513억원 감액
 - 국토교통부 출자수입(-2,175억원) 및 국방부 토지매각대(-343억원) 등을 감액
 - 기금수입은 200조 2,662억원으로 당초 예산안에 비해 67억원 감액
 -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이자수입(-57억원) 등을 감액

[표 74] 2023년 총수입 변동 내용

(단위: 억원, %)

세 목	2022		2023			증 감	
	본예산	추경	정부안	증감	확정 예산	추경 대비	%
총수입	5,535,503	6,090,872	6,259,331	-2,580	6,256,751	165,879	2.7
국세수입	3,433,839	3,966,498	4,004,570	-	4,004,570	38,072	1.0
세외수입	260,725	283,435	252,032	-2,513	249,519	-33,916	-12.0
기금수입	1,840,939	1,840,939	2,002,729	-67	2,002,662	161,723	8.8

주: 추정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나. 국세수입

□ 2023년 국세수입은 400조 4,570억원으로 증감없이 정부안으로 확정

[표 75] 2023년 국세수입 변동 내용

(단위: 억원, %)

세 목	2022		2023			증 감	
	본예산	추경	정부안	증감	확정 예산	추경 대비	%
총국세	3,433,839	3,966,498	4,004,570	-	4,004,570	38,072	1.0
일반회계	3,329,663	3,862,322	3,902,539	-	3,902,539	40,217	1.0
○ 내국세	2,961,270	3,519,217	3,579,676	-	3,579,676	60,459	1.7
1. 소득세	1,058,017	1,278,459	1,318,632	-	1,318,632	40,173	3.1
2. 법인세	749,380	1,040,662	1,049,969	-	1,049,969	9,307	0.9
3. 상증세	131,260	159,036	171,274	-	171,274	12,238	7.7
4. 부가가치세	774,786	793,233	832,035	-	832,035	38,802	4.9
5. 개별소비세	101,418	101,418	101,943	-	101,943	525	0.5
6. 증권거래세	75,380	75,380	49,739	-	49,739	-25,641	-34.0
7. 인지세	9,480	9,480	8,158	-	8,158	-1,322	-13.9
8. 과년도수입	61,549	61,549	47,926	-	47,926	-13,623	-22.1
○ 교통세	153,805	109,022	111,471	-	111,471	2,449	2.2
○ 관세	87,351	100,613	107,237	-	107,237	6,624	6.6
○ 교육세	53,409	47,266	47,022	-	47,022	-244	-0.5
○ 종합부동산세	73,828	86,204	57,133	-	57,133	-29,071	-33.7
특별회계	104,176	104,176	102,031	-	102,031	-2,145	-2.1
○ 주세	37,374	37,374	32,151	-	32,151	-5,223	-14.0
○ 농특세	66,802	66,802	69,880	-	69,880	3,078	4.6

주: 추경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다. 세외수입

- 2023년 세외수입은 24조 9,519억원으로 정부안(25조 2,032억원)에 비해 2,513억원 감액
 -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근의 예결산 추이를 반영하여 재산수입 등을 감액
 - 국토교통부의 출자수입(-2,175억원) 및 국방부 토지매각대(-343억원) 등을 감액

[표 76] 2023년 세외수입 변동 내용

(단위: 억원, %)

세 목	2022		2023			증 감	
	본예산	추경	정부안	증감	확정 예산	추경 대비	%
세외수입	260,725	283,435	252,032	-2,513	249,519	-33,916	-12.0

주: 추경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라. 기금수입

- 2023년 기금수입은 200조 2,662억원으로 정부안(200조 2,729억원)에 비해 67억원 감액
 -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근의 예결산 추이 등을 반영하여 67억원 감액
 -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57억원)과 보훈기금(-10억원) 감액

[표 77] 2023년 기금수입 변동 내용

(단위: 억원, %)

세 목	2022		2023			증 감	
	본예산	추경	정부안	증감	확정 예산	추경 대비	%
기금수입	1,840,939	1,840,939	2,002,729	-67	2,002,662	161,723	8.8

주: 추경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2022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발간일 2023년 1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
편 집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2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경성문화사(tel 02·886·2999)

내용에 관한 문의로는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2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02·6788·4834)

ISBN 979-11-6799-111-9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3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532-001994-10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